

朝鮮王朝의 行政史研究

金雲泰

目 次

序

第一章 朝鮮王朝行政의 環境的 狀況

第一節 朝鮮王朝의 社會經濟的 基礎

- (一) 土地制度
- (二) 商工業發達의 不振
- (三) 財政制度
- (四) 社會身分的 構造

第二節 朝鮮王朝의 政治文化

- (一) 儒教文化
- (二) 朝鮮朝儒教의 政治思想
- (三) 慕華思想과 事大秩序

第二章 朝鮮王朝의 統治體制

第一節 統治構造와 그 機能

- (一) 中央官制의 再編成
- (1) 太祖初의 官制

- (2) 官制改革
 - (3) 議政府의 變遷
- (二) 經國大典의 中央統治機構

- (1) 議政府
 - (2) 六曹
 - (3) 六曹屬衙門
 - (4) 承政院
 - (5) 司憲府
 - (6) 司諫院
 - (7) 弘文館
 - (8) 司法機關
 - (9) 司司法行政
 - (10) 中央의 軍事組織
 - (11) 權設職
- (三) 地方行政組織(初期)(다음號계속)

朝鮮王朝時代를 韓國史의 時代區劃에 있어 如何히 規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韓國史觀에
關한 問題라 하겠으나 筆者의 見解로서는 新羅王朝의 崩壞에 뛰어온 高麗王朝의 建立을 古代國家로
부터 中世國家로 形成되는 過程으로 보고 또 高麗王朝가 没落하여 李氏朝鮮
王朝가 成立되고 英正祖(1725~1800) 時代의 中興政策과 新氣運이 擡頭했던 時期를 中世國家의
發展過程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그리고 中世國家展開에 있어 朝鮮王朝의 成立으
로 그니터 壬辰倭亂에 이르는 時期를 朝鮮王朝官人國家의 發展期로 보는 同時에 壬亂以後
英正朝寺代까지의 史的展開를 官人國家의 變質過程으로 보고 끝으로 大院君의 登場에서 大韓
帝國의 終幕을 이루는 時期를 中世國家體制의 崩壞過程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概念上의 또는 研究對象의 問題로서 朝鮮王朝時代는 中世封建社會이니 단층 社會
體系와 構造와 機能이 未分化狀態에 머물러 있었던 關係로 行政과 그 隣接分野 特司 行政과
政治과 密着하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朝鮮王朝의 行政의 史的展開를 考察
하는 데 있어서도 그 環境的要因을 生態論的으로 觀察하고 특히 그 政治面의 史的展開도 아
울러 有機的인 考察을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第一章 朝鮮王朝行政의 環境的 狀況

第一節 朝鮮王朝의 社會經濟的 基礎

(一) 土地制度

朝鮮王朝 封建社會의 支配的 生產樣式은 農業이며 그 富의 基本形態는 土地이었음으로 따라서 朝鮮王朝의 統治體制는 土地經濟의 基礎위에 서 있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朝鮮王朝의 經濟的 基礎는 高麗王朝의 이른바 公田制度에 立脚한 田柴科體制⁽¹⁾가 崩壞되면서 麗末에 斷行된 세로운 田制改革을 背景으로하여 비로소 構築된 것이었다. 即 高麗王朝의 土地制度는 公田制度에 立脚한 田柴科體制이 었으나 中葉以後의 麗朝 權臣 豪族들의 土地兼併과 掠奪占據로 因하여 丑制의 紊亂과 破綻을 免치 못하였던 것이며 이와같은 公田의 私田化傾向은 高麗王朝의 封建的 支配體制의 崩壞를 促進시켰던 것이다⁽²⁾. 마침내 麗末에는 權臣 勢族들의 猛烈한 反對에도 不拘하고 여의 갈래의 田制改革運動이 展開되었다. 그중에서도 實力派 李成桂을 中心으로한 新進勢力의 積極的 改革運動과 끈덕진 上疏攻勢가 奏効하여 實質的으로 漸次 實施段階에 들어갔다⁽³⁾. 그리고 田制改革을 위한 法制화와 整理作業은 恽讓王 3年(1391年) 李成桂가 三軍都摠制使가 되어 政權과 兵權을 함께 掌握함에 이르러 그해 5月에 都評議使司의 上書와 그 裁可라는 形式에 의하여 完成되었다.

그리고 翌年 4月에는 最後의 政敵이었던 鄭夢周를 撃殺하고 科田法 公布後 14個月만인 同

(1) 姜晉哲, 高麗前期의 土地制度, 韓國土地制度史上: 韓國文化史大系Ⅱ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1965 pp. 1235-1239.

(2) 鄭道傳은 高麗中葉以後로 土地國有의 原則이 무너진 原因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土地制 가 무너지면서 부터 豪強한 者가 兼併을 하게 되어 富者는 그土地가 阡陌을 連하게 되는가 하면 貧者는 그 雉의 땅도 없어 富人の 土地를 借耕하게 되고 (貧者無立雉之地借耕富人之田) 一年 내내 勤苦를 하여도 所食이 도리어 不足하게 되었으나 富者는 安坐하여 耕作을 하지 않고 「傭佃之人」을 둘러 그 太半의 收入을 벼겨 되었다. 그러나 國家에서는 이것을 坐視할 뿐 그리를 取하지 못하여 民益苦國益貧이 되어갔다. 또한 民의 耕地는 自墾·自占을 容許하여 官이 干涉하지 않았으므로 力多勢強한 者는 自墾·自占을 많이 하게 되고, 無力한 者는 또 有力한 者로 부터 借耕을 하여 그 所出의 半倣을 나누게 되니 (借之耕分其所出之半) 이것은 耕作者는 一에 收食者는 二라, 富者富, 貧者貧으로 自立을 할 수 없게까지 되니 마침내 遊手末業으로 轉落하고 심하면 盜賊이 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經國典賦典經理) 이와같은 鄭道傳의 主張은 高麗의 勤舊勢力에 對抗하는 新興勢力を 代辯하는 그의 誇張된 表現이 것들어 있지만當時의 土地制度의 亂派相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3) 李成桂가 回事하자 (1388) 同年 六月에는 禮王을 廢하고 7歲의 어린 王子 昌을 세웠다. 그러나 昌王이 李成桂一派의 田制改革運動(昌王即位年 八月에는 각 道의 量田을 시작하고— 우선 四道부터— 翌 昌王元年 九月에는 宗室 文武班 前卿各品에서 新田制에 의한 科田을 받을 資格 있는 者를 選定하는 등 田制改革을 實質的으로 推進하였음)에 消極的인 態度를 取하자 昌王을 辛晦의 孫이라는 口實로 이를 還한 王位에서 물어내고 (1389年 11月) 定昌君 瑞를 迎立하였다. 이렇듯 廢王까지 하면서 田制改革을 推進한 李成桂一派의 政治的 意圖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高麗史列傳 辛昌)

7月。는 李成桂가 新朝鮮王朝의 國王으로 推戴되는 同時에 卽位한 것이다. 이로서 李太祖는 前期¹부터 實施된 田制改革에 의한 科田法을 그의 新王朝의 土地制度의 基本으로 삼은 것 이었다.

上述한 科田法은 土地國有의 原則에 依據하여 土地制度를 再整備한 것으로서 이는 私田化된 田地를 回收하여 再分配함으로서 論功行賞에 의한 새로운 土地支配關係를 再編成하고 統治體²의 土地經濟的 基礎를 強化하는 同時に 新生國家의 財政을 安定시키고 收租率을 大幅輕減³하여 國庫와 耕者사이에 介在하는 中間 摧取와 收奪을 排除하고자 한 것이다⁴。結局 이 科田法도 集權의 封建體制下에서의 土地支配關係를 再編成한 것에 不過하므로 根本動機가 社會革命의 또는 社會政策의 土地革命이 아니었음을勿論하고 麗朝의 그것과 本質의 差異가 없는 것이 었으며 다만 官人們을 中心으로한 土地所有關係와 官人的 地主的 性格을 背景으로 한支配關係의 形成 및 農莊制의 成長等이 나타나 있는 點에서는 麗朝의 그것과는 다른 特殊한 것이라 하겠다.

科田法에 關하여 이 田制改革을 推進한 當路者의 一人인 鄭道傳이 그의 「朝鮮經國典」에서 叙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官(國家)이 土地를 所有하여 이것을 民에게 支給하였으니 民의 耕地는 모두 支給된 土地요 天下의 民은 모두 土地의 支給을 받은 者요 또는 國家의 土地를 耕作하는 者이었다. 그런故로 貧富強弱의 差는 그다지 蔚하지 않았고 그 土地의 所出in 租는 모두 國家로 들어와 國家도 또한 富하였다.」⁵ 고하여 高麗前期의 田賦科制度가 土地國有를 大原則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高麗前期의 土地國有의 原則이 中葉以後로 무너지는 過程을 말하고 結論的으로 「殿下(李太祖)께서는 卽位前부터 이 弊端을 친히 보시고慨然히 私田改革을 당신의 任務로 생각하시니 國內의 모든 土地를 國有로하고 民口數에 따라 土地를 紿與하여 古者の 正大한 土地制度로 돌아가려 하신 것이다」라하여 李太祖가 「國內의 모든 土地를 國有」(盡取境內之田屬之公家)로하여 이를 再分配하려는 抱負를 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古자의 正大한 土地制度로 돌아간다.」(復古者田制之正)고 하는 이상 위에서 본바와 같이 우선 國家가 土地의 回收支給의 權能을 계속 保有하여 土地의 私有가 容認되지 않아야 하며 國庫의 가장 重要한 收入源인 公田이 確保되어야 하며 「什一」(10%)의 公租率이 維持되어야 하며 이제까지 亂麻와 같았던 私田은 合法的 그리고 合理的으로 再分配되어야 한다고 본것이다. 이와같은 田制改革의 目標가 어느程度 立法過程에서 達成되고 또 行政過程에서 規現되었는지는 큰 疑問이었다. 왜냐하면 土地改革 直後부터 土地의 私有化가 進化되고 農莊의 擴大를 通한 地主의 富豪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 千寬宇 韓國土地制度史下, 韓國文化史大系Ⅱ, 前揭書 pp. 1387~1396.

(.) 朝鮮經國典賦典經理

여기서 科田法의 土地分給規定과 그 實施過程을 概略하여 보건데 우선 土地分給規定에 나타난 各種 土地의 類別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特殊한 個人的 收租地로 科田 軍田 功臣田等이 있으니 이것은 典型적인 私田이다. ② 軍資寺田 이는 軍資用의 公田이다. ③ 王室의 直屬收租地로서 陵寢田 倉庫田 宮司田 内需田等 ④ 地方官府 및 그 官·吏의 收租地로서 外官職田(衙祿田), 乞須田 外役田 學校田 ⑤ 公共機關의 收租地로서 寺院田 神祠田等 以上의 各種土地類別을 綜合하여 보면 科田 軍田 功臣田은 特殊한 個個人의 收租地(私田)이며 軍資寺田을 포함한 京畿各司의 位田은 國家收租地(公田)이며 王室의 私有土地와 地方官府의 土地 및 寺社의 土地는 官府乃至準官府의 收租地로서 官田 또는 半公半私田에 該當한다.

科田法의 土地改革의 主要目標가 되어 있는 部分은 特殊한 個個人의 收租地(私田一民田)과 하겠으며 그중 ①科田은 서울에 居住하는 時(現任) 散(散官, 待機中の 官僚) 文武官人에게 品階에 따라 150 結에서 10 結에 이르는 18 等級의 土地를 각각 分與한 것이며 官人은 그 職務의 賠酬로 薪俸을 받는 이외에 또 士大夫라는 身分上의 特典으로 科田을 받은 것이다. 이 科田의 分給은 高麗의 私田이 外方에 設置되었던 것과는 反對로 京畿에 集中되었다는 데 큰 特徵이 있었으며 그것은 朝鮮王朝創建事業에 寄與한 官人群을 集權的 官人支配體制에 吸收再編하는데 있어 그들의 物質的 生活을 保障하기 위하여 不可缺의 것이었다. 그리고 科田은 官人們이 國稅로부터 收租權을 委讓받은 私田인바 이를 耕作하는데 있어서는 佃客(借耕者=小作人)으로 하여금 耕作케 하는 경우(借耕地)와 卒丁(田主의 私奴婢)으로 하여금 耕作케 하는 경우(自耕地)가 있었고 科田所有者(田主)와 佃客과의 關係를 法的으로 規制하므로 서(田主가 佃客의 耕作地를 任意로 빼았을때의 處罰規定을 만드는 등) 官人の 土地兼併과 土豪化傾向을 抑制하고 集權的 官人支配體制의 安定을 圖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科田의 制度는 施行過程에서 各種矛盾이 드러났다. 가령 漸次科田의 世襲化 新規任官者の 增大, 功臣田 別賜田의 增給과 京畿集中等으로 京畿의 耕地는 그 4分之 3以上이 私田화하기 까지 하였다. 마침내 世祖 12年(1466)에는 다시 田制를 改革하여 所謂 職田法을 公布하여 分給對象者를 現職官人에게 限하여 그 範圍를 縮少하고 給田量도 減少し 私田을 制限하기 까지 한바 있었지만 이 職田法으로도 土地의 私有化를 라지 못하였다. 특히 이러한 私有化傾向 또는 農莊의 擴大過程은 中央官人과의 直接的關係없이 進行되어 地方의 政治勢力의 物質的基礎가 되었으며 이것을 背景으로 하여 擡頭한 地方의 政治勢力이 바로 地方의 士林: 儒林들을 中心으로 形成된 勢力인 것이다.

② 功臣田은 國家의 功臣에게 授給하는 土地로서 建國初에는 李成桂등 45人의 回軍功臣에게 단 限定하여 分給되었으나 漸次 增大되어⁽⁶⁾ 土地私有化와 農莊擴大를 助長하여 結局 官

(6) 功臣田의 擴大傾向을 보면 다음과 같다. 成宗 2年(1471)까지의 다음 8種의 功臣(372人)에게 支給된 功臣田의 總結數는 約 3萬 8千餘結에 達하였다고 한다.

恭讓 2年(1390) 回軍功臣(李成桂等 45人)

人國家의 安定을 크게 動搖케 하였다.

이는 科田이외에 添給되고 子孫相傳을 原則으로하는 世襲地로서 免稅의 特典이 부여된 私田이며 畿內에 折給되었고 科田보다 더 私有性이 強하였기 때문에 功臣田의 擴大再生產은 分給問題를 들러놓고 政治問題化되어 執權官人層의 驟軌을 助成하고 政變土禍로까지 擴大되었다. 이렇듯 朝鮮王朝의 政治鬪爭은 그 구구한 名分論의 展開에도 不拘하고 그背後에는 土地私有化問題가 엉켜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③ 軍田은 王室의 藩屏인 六道의 閑良官人에게 그地方의 土地를 本田의 多少에 따라 10
結 또는 5結식 分與한 收租地이다. 그러나 閑良이 赴京하여 三軍總制府의 宿衙에 參加하였을 경우에는 別途로 京畿의 科田이 支給되었다. 閑良은 麗末 閑人의 後身으로 특히 生活根據를 地方에 둔 特殊階層이었으며 文武前卿品官(前職文武官) 및 그와 同等한 身分의 所有者이다⁽⁷⁾. 軍田은 慎讓王 3年 正月 三軍都摠制度가 創設되고 서울居住의 閑良이 이에 編入되었을 때 支給된 것으로서 그후에 新給도 없었고 또 回收도 없었으므로 軍田은 自然世襲化되고 이로 말미암아 閑良은 地方의 土地所有者로서 安定勢力を 이루워 集權的 官人體制下에 關する 地方의 王室藩屏으로서의 政治的 基盤을 이루웠다.

다음 國家收租地(公田)에는 軍資位田을 包含한 京中各司位田이 있는데 ① 軍資位田은 軍資의 確保를 위하여 制定된 土地이며 一般農民의 私的 占有地로서 軍資寺가 管理收租하는 公田이다.

軍資寺田에는 兩界耕田(平安, 成鏡兩界의 土地로서 軍需에 充當된 것) 新開墾田(各道의 新墾地로 充當) 打量餘剩田(量田이 不可能했던 海濱, 海島의 土地 및 測量의 錯誤로 남은

太祖元年(1392) 開國功臣(芳毅等 39人)

太祖7年(1398) 定社功臣(芳遠等 18人)

太宗元年(1401) 佐命功臣(李行等 38人)

端宗元年(1453) 靖難功臣(首陽大君等 37人)

世祖元年(1455) 佐翼功臣(柱陽大君等 41人)

世祖13年(1467) 故僚功臣(賓翰文等 41人)

世祖14年(1468) 申叔舟等 33人

成宗2年(1471) 申叔舟等 75人

이와같이 功臣田은 王權의 運命에 關聯된 大事件에 勳功을 세운 功臣에게 授給된 것이며 指名된 功臣에게만 支給되고 重大한 犯罪와 後嗣가 없을 경우에만 國家가 回收하도록 規定되었다. 또 小功에 의하여 隨時로 支給된 別賜田이 別途로 있었고 이리하여同一人에게 數次에 걸쳐 功臣田이 授給되는 경우도 있었다.

(7) 閑良이란 朝鮮中葉以後로는 흔히 仕官前의 武人の 뜻으로 使用되었고 특히 最近에는 豪遊客俠客과 같은 뜻으로 쓰이나 麗末鮮初에는 文武前卿品官(前職文武官) 및 그와 同等한 身分으로서 地方에 生活根據을 둔 有力者를 말한다. 특히 麗末鮮初의 「前卿者」라 함은 退官者만이 아니고 添設職(軍士에게 그 功을 褒賞하기 위하여 設置한 定員外의 官職)에 있는 者까지를 包含하여 呼稱되었다는 有力한 說이 있다. (濱中昇·麗末鮮初의 閑良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會報 第12號 1966 參考)

(千寬宇~韓國土地制度史下 韓國文化史大系Ⅱ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5 pp. 1411~1412 千
寬宇 麗末鮮初의 閑良 李丙熙博士記念論叢 1956)

土地로 充當된 것)等이 있었다.當時 資資位田으로 指定된 耕地面積은 祿俸을 위한 廣興倉位田 보다 二倍나 되었다고 하니 軍資確保를 위한 苦心의 一端을 엿볼수 있다⁽⁸⁾.

軍需諸田은 軍糧을 確保하기 위한 廣大한 面積의 土地임으로 田制改革의 主要目標가 된 것이며 農民의 私的 占有地의 田租로서 軍資軍需를 充當하는 公田이었다. 그러나 이는 主로 外方各道에 偏在하고 있는 外軍資位田이 있기 때문에 國家管理가 소홀하여 公田의 口實을 다못하고 私田化의 傾向을 나타내여 軍需를 充足시키지 못하였다.

② 京中各司位田은 軍資位田과 같이 一般農民의 私的 占有地로서 京中各司가 直接管理收租하는 無稅의 公田이다. 中央政府의 歲出의 大部分은 이 公田에서 收租되는 田租로서 充當되었다. 그러나 이 公田도 漸次 私田化하여 國家財政에 큰 打擊을 주었다. 다음 官府 및 準官府의 收租地에 之王室土地나 地方官府 土地나 公共機關土地나 별다른 結數를 指定하지 않고 다만 더러 다른 土地를 侵奪하거나 다른 土地에게 侵奪을 당했거나 한것이 있으며 이를 原規定대로의 結數로 復舊하도록 한다(因舊損益)고만 하였으니 이 改革의 큰 重點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王室의 直屬收租地 중 陵寢田은 王室의 陵園 및 墓位土로서 각각 80 結을 넘지 못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며⁽⁹⁾ 倉庫田 宮司田은 王室의 非公式財源이 되는 私有地이다. 그리고 内需田은 王室의 日用 米布 및 雜物 奴婢를 管理하는 内需司(王室財政의 管理機關)⁽¹⁰⁾에 配屬된 免稅의 特典이 있는 土地이다.

上述한 王室에 直屬收租地를 包含한 其他 各種 官房田은 王室을 비롯한 王家의 農莊으로서 擴大一路에 있었다.

다음 地方官府 및 그 官・吏의 收租地인 外官職田(衙祿田)은 外官의 祿俸을 위한 것이고 公須田은 地方官府의 需要를 위한 것이며 이 衙祿田과 公須田은 廉田이라고도 呼稱하는 바이로서 不足한 經費를 補充하기 위하여 別途로 官屯田이 있었다. 屯田은 元來 衛戍中の 軍卒이 耕作하며 穀糧을 充足시킬 目的으로 생긴 土地이었으나 漸次 地方官府의 經費不足을 補充하는 目的으로 變質한 것이다. 이것이 地方官의 浪費를 助長하여 各種의 弊端이 發生하였으므로 鮮初에 이를 廢止하였으나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고 世宗 6年에는 官屯田을 公認함에 이르렀다.

鄉校田은 地方官府의 土地로서 學校運營을 위하여 分給된 것이며 成均館田과 四學田과 더불어 學校田이라고 불리어진 官田이었다.

外役田 雜色位田은 驛院 津水站 等의 有役人과 州縣・鄉吏에게 支給된 土地로서 有稅收

(8) 「國家定田制」之初 軍資屬田 倍於祿俸之田」太宗實錄卷 太宗 3年 6月 王子 趙浚上書에 의하면 祿俸田은 約 1萬結에 達했다고 하니 軍資位田은 約 20 萬結에 達한셈이 된다.

(9) 陵은 王 王妃의 墓所 園은 世子 世子嬪 世孫 世子誕生嬪 王의 生母의 墓所 墓는 陵 園以外에 國家가 特定한 玉族의 墓所(大典通編 吏典 京官職) 萬機要覽 當時(純祖 初) 陵 園 墓位田의 總結類는 2,018 結이 있다고 한다. (80 結의 規定은 正祖 元年 1777)

(10) 經國大典 三稿院版 昭和 9年 pp. 31-32, 史典京官職 正五品衙門

租地이 斗. 朝鮮朝의 한 弊端으로서 흔히 指摘되는 鄉吏 또는 衛前등의 不正은 이들에게 祿田·給田 등 生活保障이 없는데에 起因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 公共機關의 土地로서 寺院田과 神祠田은 朝鮮王朝의 建國理念인 抑佛崇儒政策으로 그 擴張가 抑制되어 減縮 또는 消滅되어 버린 것이다.

以上 分給土地의 類別과 그 施行過程에 關하여 論하였으나 注目할 點은 이와같은 受田 紿田의 對象者는 身分에 따라 法的으로 限定되었다는 事實이다. 즉 公私賤 工商賣卜盲人 巫覩 倡仁僧尼 등 身分에게는 一代는 勿論 子孫에게도 受田을 不許한 것이다⁽¹¹⁾. 一般的으로 良人에게 조차 收租地를 分給하지 아니하였으니 賤人에게 그 惠澤이 있을수 없었다. 이와같이 全人口의 絶對多數를 차지하는 良人 賤人이 收租地의 分給對象에서 除外되었으나 다만 그들에게 耕作權만은 認定함으로서 官人的 土地支配下에 收奪의 對象으로 固定시키고 아울러 그들 特殊層의 跋扈를 根絕시키고자 한 것이며 여기서 朝鮮王朝의 集權的 封建體制下의 土地支配關係와 그 性格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言及한바와 같이 科田法에 의한 田制는 그 實施過程에서 여러가지 自己矛盾을 露呈하여 自然崩壞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即 土地 私有化와 世襲化 및 土地賣買가 實質上 公認하게 이르는가 하면 收租率 10分之 1을 法制化하였음에도 不拘하고 並作半收制가 復活되는弊害가 많았으며 이로서 土地가 少數者에게 雜併되고 無田者數가 激增되고 아울러 公租와 公役의 過重에 시달린 良인이 自進 佃客化하는 이른바 「投托」의 現象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並作은 個人的 田地를 借耕하는 것을 말하며 佃戶는 他人의 田地를 耕作하여 租는 田主에 바치고 常調를 官에 바쳐 獨立의 生計를 維持하고 있는 貧農出身으로서⁽¹²⁾ 元來 身分은 良인이었으나 並作半收의 一般화와 土地集中으로 良人은 점차 終身役事하는 賤人이 되었다.

이로서 良人은 奴婢와는多少 性質을 달리하는 外居奴婢⁽¹³⁾와같은 身分으로 轉落하였다.

(11) 高麗史 倉貨志 田制 被科田。

(12) 耕人之田 編程其主 常調於官 即佃戶也 (高麗史 世家 忠烈王 24年 7月 乙酉)

(13) 奴婢라 하면 奴主에 隸屬되어 衣食도 거기서 依支하는 대신 労力を 無償提供하는 것이 原則이나 奴婢의 數가 奴主의 需要에서 過剩되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別居自活하여 獨立한 戶를 形成케 하기도 하는 것이니 이것이 「外居奴婢」다 外居奴婢는 身分의 隸屬關係는 奴婢와 같으나 日常生活에 있어서는 一般良人과 大差가 없다. 奴主의 自耕에 만 使役되는 奴婢와는 달리 奴主의 田地를 並作하거나 他人의 田地를 並作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奴主가 必要할 때에 隨時로 身役을 提供하는 外에 公賤는 司贍寺에 私賤는 奴主에 所定의 身布量 每年 貢納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佃戶의 性格을 가진 外居奴婢는 점차 增加하여 廣範한 人口層을 形成한 끝하여 初期의 統計는 여기에 提示하기 어려우나 17世紀末 大邱地方의 例로 보면 全人口의 7.4%가 兩班 49.5%가 常民(良人) 43.1%가 奴婢인데 그 奴婢의 28.7%가 主家에 從屬된 奴婢로 나머지 71.3%가 獨立後의 奴婢였던 것으로 推算된다.

千寬宇「韓國土地制度」下前揭書 pp. 1436—1437.

四方博「李朝人口에 關한 身分階級의 觀察」朝鮮經濟의 研究第三。

四方博「李朝人口에 關한 研究」朝鮮社會經濟史研究。

이러한 傾向은 仁田에 까지 波及되어 급기여는 土地支配關係가 地主 佃戶의 關係로 移行됨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科田法의 崩壞와 大土地私有化進展에 따라 形成된 것이 곧 農莊이다. 그리고 農莊은 國家의 仁田, 開墾寺刹에의 寄附, 農民의 投托 官人の 贈賄 獨占 買得 墓位田의 擴大高利貸등을 契機로하여 더욱 擴大되었다. 農莊의 擴大는 奴婢勞動을 必要로 하였고 따라서 權勢家는 「壓良爲賤」이라는 不法行為도 不辭하였다. 이와 아울러 權勢家の 農莊을 耕作하는 私奴婢戶는 不法的이나마 公役의 免除가 保障되어 있었기 때문에 公役의 重壓에 견디지 못하고 私賤으로 自身 轉落하여 土地와 함께 權勢家の 保護下에 들어가는 이른바 投托의 現象이 일어났다. 良人的 強制的인 賤人化가 「壓良爲賤」이고 自進의 賤人化가 곧 投托인 것이다. 이러한 良民의 流民化 및 投托行為로 權勢家の 土地兼併은 더욱 增大하여 荒蕪地의 開墾과 더불어 農莊肥大를 促進하였다. 그리고 農莊에 吸收된 私賤은 田主의 勢力を 背景으로 鄉民을 威壓하고 심지어는 官權에 對抗할만큼 實權을 行使하였을 뿐 아니라 奴婢의 使役 또는 이를 所有する만큼 強豪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鄉村의 威壓을 주는 特殊存在로서 「伴侶」이라는 農莊管理者가 있었다. 伴侶은 現地의 良民富農層에서 나와 國家의 公認을 받은 國役免除券이 있으며 農莊의 私賤보다도 그 權勢가 매우 컸다.

農莊의 擴大는 官人の 地方的 成長과 地主의 生長을 말하는 것이므로 地方分權的 封建體制의 萌芽가 爽을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農莊의 擴大가 王朝를 背景으로 하고 王權을 利用하고 그것。 依存하면서 이루워 졌기 때문에 官人の 地方的 地主의 成長이 制約되고 그 限界性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農莊의 二重的인 性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前代以來의 古代的性格을 游存하여 農莊所有者가 首都 서울에 居住하는 王室 王族 大官등 王朝의 中樞的 權力者이고 또 그들의 農莊이 一地域에 集中되어 있지 않고 各地에 分散되어 있었기 때문에 王朝에 對抗할만한 地方的勢力이 成長할 수 없었다. 그리고 農莊의 經營을 管理하는 奴婢(王室 直屬 農莊은 公賤 王族 大官의 農莊은 私賤 伴侶)에게 一任하고 直接 經營하지 아니한 이른바 不在地의 性格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點에서도 그 古代的性格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로 農莊의 耕作者가 賤人을 中心으로 構成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賤人的 實態는 奴隸的 賤人으로 부터 外居奴婢 및 良人이 壓良受賤 投托등으로 賤人化한 賤人에 이르기 까지 多樣하였다. 賤人中에서도 自身이 奴婢를 所有하고 自營하는 賤人이 있었다는 것은 賤人的 成長을 뜻하는 것임을 한편에 있어서는 良人이 賤人이 됨으로서 生存을 피하지 아니하면 안되었다는 점에서 古代의in 關係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朝鮮朝의 農莊은 大體로 高麗朝의 農莊과 別差가 없으나 特有한 現象으로서는 農莊耕作者의 農奴의 性格과 農莊主의 在地의 性格이 顯著해졌다는 點을 들을 수 있겠다. 即 農莊을 耕作하는 者가 賤人으로서 奴隸의 性格도 지니고 있었지만 어느程度 自

主性는 가지 賤人도 있었고 또 良民出身의 佃戶가 並作(借耕)人으로서 成長하기도 하여 農奴的 性格을 具備하였던 것이다며 또 한편 農莊所有者中에서도 農莊에 別莊 居宅 또는 書院을 마련하여 農莊에서 生活하는 傾向이 나타났고 前職大官이나 退官 또는 失脚한 官人이 農莊에 生活根據를 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와같이 田主와 農莊과의 紐帶가 強化되고 官人農莊主의 在地的性格이 顯著하게 나타났다⁽¹⁴⁾.

前述한바와 같은 特徵은 朝鮮朝의 農莊이 前期보다 進步한 새로운 一面이라 하겠으며 이 점이 또한 黨爭의 根源이 되기도 한 것이다. 무릇當時의 田主나 그一族은 主로 官人 또는 官人後備軍이었고 農莊의 經營보다도 官人으로 出世하는 것을 最大的 念願으로 생각하였다. 그렇듯 農莊을 經營하는 努力보다도 官人이 되는 쪽이 農莊擴大에 有利한 環境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點이 朝鮮朝의 農莊이 前期보다 進步性을 띠면서도 前代以來의 制約를 脫皮하지 못한 限界點이 된 것이라 하겠다.

(二) 商工業發達의 不振

朝鮮王朝가 土地經濟에 土臺를 둔 自給自足의 農業社會로서 商工業의 發達을 期待할 수 없었으며 특히 科田法 新土地制度에 立脚한 集權的 儒教官人 支配體制의 諸制約으로 말미암아 商工業의 發達은 窒息狀態에 놓여 있었다.

朝鮮王朝에 있어서의 商工業의 不振의 主要한 原因은 儒教思想에 立脚한 兩班層의 勞動忌避와 生產階級의 賤待 또는 商工業의 賤業視에서 찾아 볼수 있겠으나 또한當時의 經濟構造의 侧面에서 그根本의 原因을 찾아볼수 있지 아는가 생각된다. 여기서 朝鮮王朝의 工業構造를 簡單히 分析해 보건대當時의 工業은 農村의 副業의 手工業과 官匠手工業이 主軸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¹⁵⁾.

前述는 農業과의 直接的 統合下에 展開된 一般手工業으로서 여기에는 農村手工業 寺院의 僧侶手工業 및 白丁手工業等이 있었으며 그중 農村手工業은 農民의 副業의 手工業勞動으로 充分되어 織布等을 生產한 것이며 國家의 貢物政策도 이 織布生產部門에 集約되었던 것으로 이루어보아 支配層을 爲한 衣生活의 自給自足의 體制確立에 크게 寄與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生產部門이 交換關係의 擴大와 分業의 促進으로 商品生產化되지 못한 關係로 工業의 發展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寺院手工業은 寺院內의 需要보다 一般民需를 相對로 商品生產이 展開된 點에 特徵이 있다. 朝鮮王朝에 특히 寺田이 全部 沒收된 顯宗4年(1663)을 轉機로하여 寺院의 經濟的 没落에直面하자 그들自身의 自活策으로 金屬工業 木工業 石工業을 비롯하여 製紙業 製麵業 織鞋業 酵母業 扇子製作業 등 多方面의 商品生產이 僧侶의 手工業勞動에 의하여 促進되었다고 믿

(14) 旗田巍, 朝鮮史 岩波書店 1952. pp. 123—4

(15) 趙璣濬, 韓國經濟史 日新社 1965. pp. 209ff.

어진다.

白丁手工業은 量的으로 가장 적은 附屬的인 特殊生產機構이다. 白丁은 屠殺 製革 柳器등을 生產하는 特殊生產業者이었다. 그리고 寺院手工業 白丁手工業等은 그 地域의 또는 構成의 特殊性으로 말미암아 獨自的 發展을 하지 못하였다⁽¹⁶⁾.

다음 官匠手工業 또는 工匠手工業은 官府需要를 目的으로 하는 官營手工業으로서 經國大典에 의하면 京工匠(中央과 外工匠(地方)으로 區分하고 各官衙에 工匠人을 專屬시키 中央및 地方官衙의 諸般需要에 充當시키기 위하여 官營生產機構를 設置하고 있다⁽¹⁷⁾. 工匠은 官奴婢를 中心으로 構成되어 그 生產은 이들의 僉役勞動에 依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工匠은 工奴的 身分으로서 勞動力を 摘取당했을 뿐만 아니라 各種의 納稅까지 負擔하였고 또 製品이 粗惡하거나 規格에 맞지 아니하면 處罰되었다. 이와같은 工匠의 僉役勞動과 收奪에 基礎를 둔 官營手工業體制는 經濟外의 收奪의 限界性과 監督費의 加重 및 生產技術의 未發達로 因한 生產價의 過度上昇等 自己矛盾으로 말미암아 봉괴 過程을 밟게 되었다. 收奪에 지친 工匠들은 結局 生產意欲과 技術習得의 意慾마저 잃게 되었고 官의 不斷한 干涉과 收奪로 生計維持가 困難히 자자 工匠으로부터 逃避하고 公役으로부터 忌避 또는 反抗하는 傾向이 나타났다. 이러한 事象들은 王朝初期에 確立된 土地經濟의 基礎가 崩壞된 壬亂以後에 나타났으며 이에 追車를 加한 것이 對中貿易이었다. 即 朝鮮보다 技術水準이 높은 中國手工業製品(例컨데 高級 衣料品 등)등이 中國에서 大量으로 輸入됨으로서 國內手工業은 萎縮不振하였다⁽¹⁸⁾.

이와같이 工匠手工業이 解體過程을 밟고 있을때 한편에 있어서는 僉役勞動으로부터 離脫된 匠人이 漸次 獨立 自營手工業者로 擡頭하여 새로운 工業生產體制가 形成되기 시작 하였다. 그 時期는 壬辰以後 英祖代에 이르는 朝鮮朝中期에 해당하였다.

前述한바와 같이 土地經濟에 制約된 自給自足의 農業構造와 그리고 工業의 未發達은 同時に 產業의 沈滯과 貨幣經濟의 未發展을 招來하였다. 商業이 社會的으로 賤視되고 生產力이 萎縮되고 交通의 不便으로 商去來가 한산하고 苛酷한 商稅의 賦課과 都市의 御用商人 및 地方의 市場商人(負褓商, 客主, 旅闈)에 대한 特權賦與等은 商業의 發展을 阻害하고 不振케 하는 要因이 되었다.

朝鮮朝의 代表的 國內商業組織은 ① 서울의 市廛(常設店舗)과 그 後身인 六矣廛(宣祖以後) 開城 平壤 水原等 地方都市의 常設店舗等 都市商業機關과 ② 客主와 旅闈 ③ 行商인 補負商 ④ 官府의 權力を 背景으로 貢物의 代納을 擔當한 「貢人」等이 있다. 即 ①의 商業機關은 官府의 物品用達 및 貴族層을 비롯한 首都住民의 經濟的 需要를 充足시키는 御用의 商

(16) 劉教聖, 韓國商工業史, 韓國文化史大系Ⅱ, 前揭書 pp. 1091ff.

(17) 經國大典 二典 工匠 前揭書 pp. 532ff.

(18) 金漢周, 李朝時代手工業研究, 李朝社會經濟史所收 1946.

業行爲를 目的으로 하고 있었다. 太祖即位直後에 京市署⁽¹⁹⁾를 設置하여 京內商人을 管理하였고 其後 市廛(常設店舗)와 八百餘間의 左右行廊이 建造完成되었다. 市廛은 宣祖以後 六矣廛으로 改編되고⁽²⁰⁾ 國役負擔과 特權附與로 弊端이 커으며 특히 官人 權勢家의 苛酷한 經濟的 經渾外의 收奪은 商業의 不振과 아울러 商業의 畸形的인 變質을 가져오게 하였다.

地方商業은 主로 地方市場(場市 또는 鄉市)를 中心으로 營爲되었다. 地方都市에는 貨物의 都散賣 貨物保管의 倉庫業 委託販賣業 貨物의 運送業 其他 金融業등을 兼한 商業機關으로써 客主 旅閣이 있었다⁽²¹⁾. 客主(客商主人의 뜻)는 地方에서 來集하는 客商을 위하여 居中周旋 物品賣買를 成立시키는 諸業務를 營爲하였으며 委託販賣 貸付 預金 手形發行과 때로는 旅宿業을 兼한 者도 있었다. 그리고 旅閣은 沿岸各浦에 存在하며 穀物 魚鹽 海貝類등의 委託販賣 또는 買入을 業으로 삼고 대개 큰倉庫를 保有하고 있었다. 旅閣은 旅館業도 兼하였던 것으로 그들은 官憲과 權力家의 勢力を 利用하여 自己의 去來地方에서 오는 顧客을 거의 強制的으로 來泊케 하여 規定된 手數料를 받았다. 그러나 地方商業의 代表的 存在는 褱負商으로서 이는 商業集散地 또는 直接 生產者로 부터 購入한 日用雜貨를 地方鄉市 또는 山間僻地에 이르기 까지 巡歷行商하는 商人이었다⁽²²⁾. 이들 褱負商은 組織的으로 團結하였으며 그리고 官權과 組託함으로써⁽²³⁾ 全國的으로 商權을 掌握하고 末期에는 政治勢力에 利用되기도 하였다.

다음 貢人의 發生原因은 主로 貢物을 收納하는 擔當官吏의 惡意의인 「點退」「防納」의 弊와 有關한 것이다. 李朝初期에 있어 防納이란 貢物上納의 一種의 代行으로서 官民間에 存在하면서 不當利得을 取하였던 것이다. 即 地方各郡에서 納入하는 貢物을 百姓을 代身하여 代納하고 利子를 합쳐 百姓에게서 받는 것을 防納이라 하였던 것이다. 防納者들은 主로 權門勢家나 富商大家 그리고 元惡吏胥등이 있다⁽²⁴⁾. 그러나 大同法 實施以後에는 貢人은 官司로

(19) 京市署는 前期의 制度를 踏襲한 것으로서 京內商人 및 市廛의 管理, 度量衡器의 取締, 物價의 抑制等一般市場의 行政事務를 管掌한 官署이다.

(20) 市廛에 關해서는 萬機要覽 財用篇各廛 및 劉教聖 韓國商工業史 pp. 1107ff. 韓國文化史大系Ⅱ 前揭書 參考 行廊은 公廊이라고도 하며 主로 市廛으로 쓰여졌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公衙로도 쓰여졌다. 六矣廛의 發生時期에 關해서는 確實하지 않으나 大同法 實施以後 仁宗代前後로 推定하는 見解(李朝서울 六矣廛研究 歷史學報 8)와 宣祖以後로 보는 見解(文獻備考에는 倭亂中 明軍과 訓練都監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見解 따라서 宣祖以後로 본다. 韓國史近世前期編 震檀學會 1962 p. 479. 註 8 參考)

(21) 劉教聖 韓國商工業史 pp. 1121ff. 韓國文化史大系Ⅱ 前揭書.

(22) 柳子厚 朝鮮條 貢負商

(23) 李成桂의 創業에 直接, 間接으로 忠誠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 代價로 建國初에 貢負商을 創設하여 國家의 保護下에 育成하였다. 이들은 國家大事나 國難危機에는 隨時로 奉公盡忠으로 報國하였으며 貢負商組合의 特徵이 封建의 奉公盡忠의 觀念으로써 官府에 奉仕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劉教聖 韓國商工業史前揭論文 pp. 1123—1128.

(24) 李朝初期에 있어 防納의 弊害는 非常深刻했던 것으로 傳해지고 있으며 아울러 貢人資本과 貢人의 商業活動은 李朝商業史上 重要한 影響을 끼쳤다고 추측이 된다. 일찍이 中宗時 趙光祖는 指摘하기를 各邑의 土產이 不均한데 모두 防納이니 一升防納에 一斗徵하여 一匹을 納하면 三匹을 徵收하는 弊端이 極甚함을 말하고 貢案의 改定을 推進한바 있다. 而宣祖三年(1570)에는 當時胥吏들에 의한 防納弊는 元貢의 什百倍를 民으로부터 私收하여 民間이 大困하였기 때문에 正供都監을 設置하여 防納禁止에 힘썼다. 而宣祖 7年(1574)에 李栗谷도 다음과 같이 防納의 極甚한 弊

부터 大同米⁽²⁴⁾ 貢物의 代價를 받고 그것으로 現物을 調達하여 그 差額을 利得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貢人은 初期 防納者와는 根本의으로 性格이 相異한 官府御用의인 用達商人으로서 公的인 認定을 받게되고 그 位置도 市廛이나 行商못지 않게 重要한 存在가 되었다.

한편 國際貿易關係에 있어서一般的으로 通商은 奢侈 浪費의 根源에 不過하므로 消極의이고 退廢의이었으며 交易은 明清 그리고 日本이 있으나 中國에 대해서는 朝貢貿易과 使臣隨行員에 의한 弘貿易과 기타 請求에 의한 交易이 행해 졌으며 日本에 대해서는 通信使와 倭館貿易이었다

以上 論述한 바와 같이 商業의 不振萎縮은 貨幣의流通을 低調케 하였으며 初期에는 注紙楮貨를 使用하였으나 楮貨價值의 下落으로 世宗 5年(1423)부터 銅錢「朝鮮通寶」를 鑄造하여 楮貨와 併用케 하였다. 그러나 銅錢은 兵器用銅의 不足으로 世宗 27年(1445) 楮貨本位로 曹時 다시 一元化되었다가 곧 在來의 流通手段인 米, 麻布, 級布, 眉毛, 綿布의 生產激增을契機로 이들 商品의 貨幣役割을 代行하게 됨으로서 楮貨는 自然 消滅되고 따라서 交換手段도 物物交換의 原始的段階를 脱皮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朝鮮王朝 初期의 商業도 京鄉을 莫論하고 生產力의 貧弱 官權 權勢家의支配와 干涉 및 苛酷한 收奪下에서 獨自의in 새로운 發展을 하지 못하고 不振狀態를 免치 못했던 것이다.

(三) 財政制度

朝鮮王朝의 財政은 「量其入 以爲出」 또는 「量入制出」이란 原則에 土台를 둔것으로서 그것은 所謂「量出制入」이라는 近代의in 財政觀念과 對照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時代의 財政制度를 明確히 把握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國家歲入의 基幹을 이룬것이 賦稅이므로 稅制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朝鮮王朝의 稅制는 唐代에 確立된 租庸調의 制度를 原則上 踏襲한 것 이었다⁽²⁵⁾.

稅는 土地에 대한 課稅로서 租와 稅로 大別된다. 私田法에 의하면 租는 公田의 耕作者가 國庫에 上納하는 地代 또는 私田의 耕作者가 田主에게 바치는 地代이며 稅는 私田所有者가 國家에 上納하는 地稅이다. 그리고 租稅額은 租는 水田 1結에 精米 30斗 旱田 1結에 雜穀 30斗이고 稅는 水田 1結에 白米 2斗 旱田 1結에 黃豆 2斗로 定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租稅의 區別은 聽田法이후 租稅를 官府에서 直接收租하였기 때문에 租稅 또는 稅라고 通稱되었다. 그리고 그 稅率을 定하기 위하여 踏驗損實法⁽²⁶⁾을 採擇하였다. 이 制度는 每年 豐凶

害를 主張하였던 것이다. 즉 貢物賦課의 矛盾으로百姓이 서술에 까지 와서 納入할 貢物購買를 해야 하므로 民費百倍의 苛斂誅求量 免치 못하였다. 이런 弊端때문에 ①捨家離農이增加하여 田野가 荒廢했으며 ②往年에 百人所納의 貢物을 前年に 十人이 다시 今年에는 한사람이 貢辨하는 實情이 있다. 劉教聖 朝鮮商工業史 韓國文化史大系Ⅱ 前揭書 p. 1134. 參考

(25) 「有田則有租, 有身則有役, 有戶則有貢物」(世宗實錄卷世宗 8年 4月辛卯)이라하여 租庸調를 각己田租, 身役, 戶의 貢物로 区分하는 것이 通例이나 그 名稱은 混用된 것으로서 租를 稅租稅, 貢, 役 그리고 積을 稅, 稅役, 賦, 貢賦, 布 王 調를 貢 貢賦等으로도 불리어졌다.

(26) 이 法은 景讓 3年 5月(1391)에 制定된 것이다. 實地踏查는 公田의 경우 當該地方의 守令이 審

을 調査하여 收穫의 增減에 따라 稅率을 定함으로서 農民의 負擔의 公正을 期하고자 한 것 인데 實際 運營에 있어서, 調査官의 弄奸 誅求와 田主의 苛酷한 踏驗等 弊端이 많았다. 한편 稅法의 基本이 되는 結負法도 衡前等의 中間的인 虛偽弄奸으로 摧取와 挾雜이 介入할 餘地 가 많아 不合理한 制度이었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民弊도 적지 않았다. 이리하여 稅法과 稅制 特히 稅率과 量田(土地의 實績을 把握하는것)改革에 關해서 여러차례의 研究와 實驗이 行はれて 있으나⁽²⁷⁾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다. 가령 量田은 20年에 한번씩 하기로 原則이定해져 있었으나 그대로 實施되지 못하였으며 定期의인 量田이 없고 土地의 管理나 稅法의 運營의 缺陷이 있어 隱結의 現象이 나타나 不正과 脫稅行爲가 慢行되어 國家財政에 큰 打擊을 주었다.

徵收된 田稅는 秋收後 各地에서 서울로 輸送되고 翌年 6月까지에는 上納을 完了하게 되어 있는日.⁽²⁸⁾ 그동안에 所要되는 徵收의 手數料 荷役 및 運送料 落粒 雀鼠등에 의한 自然消耗를 補充하는 各種의 附加稅가 있었다. 이 附加稅도 田稅와 아울러 租稅者의 負擔이 있으며 그 種類에는 耗米 船價 該用紙 入江倉價 入京倉價 役人價 등이 있었다⁽²⁹⁾. 이 附加稅의 負擔은 渾次 加重되는 傾向에 있었으나 이외에도 租稅의 變形으로서 米穀代身에 그一部를 布, 油, 錢 등으로 代納하는 田結貢物, 田稅布貨, 田貢等이 있었다.

다-는 役은 中央 地方을 막론하고 國民에 대하여 그 勞動力を 直接으로 使役하는 것으로서 公共施設의 修築營繕, 公物의 運搬 其他 여러가지 雜役을 擔當하는 것이다. 이 雜役을 僉役 또는 僉賦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役은 中央地方의 一時의인 僉役에 그치지 않고 役의

檢하여 監司에게 報告하면 監查가 委官(主로 地方의 閑良品官으로 任命)을 보내어 再審하고 監司, 首領官이 三次로 親審한다. 科田등 私田의 경우는 田主가 各自 任意로 審檢한다. 損實(平作以下の 農作일 때 租稅를 減額하는것)은 農作의 狀況을 十分(十等級)으로 하여 損(凶作)一分에 減(減租)一分로 하며 損八分이면 租를 免한다. (高麗史食貨志 I 踏襲損實, 恭讓王 3年 5月 都評議使司). 그러나 踏驗損實法에 많은 弊端이 나타나자 世宗代에 이르러 再檢討가 이루워졌으며 마침내 世宗 12년에는 新稅法인 貢法이 試案으로서 提起된 바 있었다. 그후 世宗 18年(1436)에는 貢法評定所를 두어 損實法에 代案을 研究해 한 結果 全國各道를 土地의 肥瘠에 따라 三等으로 나누고 (慶尙·全羅·忠淸=上道·京畿·江原·黃海=中道, 平安·咸鏡=下道)이 三等道의 各州郡을 다시 上中下 等으로 나누고 이 九等級의 土地를 각각 上中下田으로 나눔으로서 27種의 田地에 따라 각각 稅率를 달리하는 案을 作成하여 世宗 20年부터 部分의으로 試驗實施한바 있었다. (20年에 慶尙·全羅一部에 그리고 23년까지 下三道 全域에 實施되었다).

(27) 例전대 世宗 25年(1443)에 試圖된 田分六等은 土地의 肥沃度에 따라 田地를 6等分으로 區分한 方法이며 年分九等은 每年的 豐凶을 上上, 上中, 中上, 中中, 中下, 下上, 下中, 下下의 9等級으로 區分하여 각각 稅率를 定한바로서 每結最高 20斗, 最下 4斗가 割當되었다. 한편 量田方法으로서 土地를 正田, 績田, 降等田, 降等田, 降績田, 加耕田, 火田等으로 區分하였다.

(28) 經國大典 戶典 稅貢 中樞院版 前揭書 p. 198.

(29) ① 諸用紙는 貢稅를 収納하는 諸司에 대하여 手數料를 納入하는 紙類(稅米一斗에 五張 10斗에 2卷). ② 船價는 稅一斗에 遠近에 따라 6合내지 1升 7合. ③ 入江倉價는 江倉에 下船入倉하는 人夫費 5勺. ④ 入京倉價는 京倉에 入倉하는 人夫費 2合. ⑤ 役入價는 倉庫吏에게 주는 手數料 3勺(以上 成宗實錄成宗 2年 9月癸酉).

가장 基本이 되는 國役이 있었다. 國役은 恒久的인 終身 世襲役으로서 그身分에 따라 良役(軍役과 그保), 賤役(身良役賤公賤 및 그保)의 別이 있고 그 内容도 軍丁, 吏校, 奴婢 등 多樣하였다. 國役의 基幹이라고 할수 있는 軍役에 있어서도 戰鬪用의 軍兵만이 아니라 巡視, 捕盜隨率, 勞動等 職務를 떤것도 많았다. 이와같이 役과 身分은 不可分의 關係로서 役은 身分을 또 身分은 役을 相互規定하는 것이었다. 役의 物納으로서 保 또는 奉足이 있었던바(軍役의 경우) 明宗(1546-1567) 以前에는 保 또는 奉足을 主役의 費用을 負擔하는데만 許容되었던 것이 그 以後에는 主役義務者까지도 軍布를 代納하여 主役의 免除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最少의 要員을 除外하고 軍役을 人的이 아닌 財의인 資源으로 삼아 收入의 增加를 꾀하려한 官府의 意圖가 있었던 것이다.

賤役에 있어서는 主役奴婢를 위하여 奉足을 定해 주고 外居奴婢는 奴婢貢을 奴主에게 받침으로서 獨立戶를 營爲할 수 있었다. 一般的으로 賤人은 男女가 公私의 賤役을 良人 男子는 公役인 良役을 擔當하고 兩班만이 原則적으로 役, 廉의 義務가 없었다. 國家財政이 國民의 勞動力에 依存하고 있었으므로 役의 對象이 되는 人口의 把握이 매우 繫要한 課題이었다. 朝鮮王朝의 戶籍는 이력한 動機에서 調查整備되었기 때문에 口(人口)의 調查보다는 丁(役의 擔當者)의 調査이 置重되었다. 戶籍은 每 3年마다 調査整備하기로 하고 入籍時에 그 膽本을 作成出給하였다. 이외에 戶籍을 根據로 하여 該當者를 抄出作成한 軍籍이 있었다. 이것은 6年에 한번씩 戶籍整理하기로 規定되어 있었다⁽³⁰⁾. 그리고 役・廉등의 負擔者의 動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戶籍・軍籍 以外에 近隣의 共同責任制인 五家作統法과 號牌라는 身分證明書制가 一時있었다⁽³¹⁾.

貢物은 戶를 對象으로 賦課하여 土產物을 上納하는 唐制의 調에 該當한 것이다. 麗末에는 雜貢과 戶布가 合課되어 弊端이 많았으므로 建國에는 雜貢만을 徵收하고 貢賦評定都監을 두어 田稅와 아울러 貢物의 再整備를 하고 太宗代에 이르러 制度化되었다. 貢物은 各州縣單位로 그 地方의 土產物과 田結의 廣狹을 基準으로 하고 또 中央政府의 需要를 策定하여 그 額數을 定하고 그 額을 各民戶에 配定하였다. 各戶에서 徵收된 貢物은 州縣別로 中央에 上納하고 上納된 貢物의 收納은 專擔하는 中央官署가 없었기 때문에 中央各司에서 各己 所要의 貢物을 收納하였다. 그리고 貢物은 中央各司뿐만 아니라 監營, 兵營, 水營등에서도 그 管下의 各州縣으로 부터 徵收되었고 各州縣도 그 自體 所要의 各種現物을 民戶로 부터 徵收하였다. 此種의 貢物賦課에 있어서는 田結數에 그 基準을 두기는 하였으나 實地로는 地方官의 意志로 決定되었던 것이다. 특히 貢物配定의 行政的 業務는 鄉吏의 權能이었고 또 貢物의

(30) 經國大典, 丙典, 成籍 中樞院版前揭書 p. 454.

(31) 經國大典 戶典, 戶籍, 前揭書 p. 167.

(32) 李相伯, 韓國史 近世前期篇 乙酉文化社 p. 442. 世宗實錄의 貢物品目參考.

種類가 雖多하였기 때문에⁽³²⁾ 配定의 公正을 期할 수 없었다. 貢物의 種類에 따라 民丁을動員하되 그 徵役으로서 調辯하는 경우도 있고 現物의 代價로 米穀 布木등을 賦課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別貢, 進上, 進獻등 形式으로 上納되는 貢物이 있었다.

貢物는 元來 配定과 徵收 過程이 不合理하여 民戶의 負擔이 加重되어 있었을뿐 더러 不產貢物의 上納등 民弊가 많았다. 土產物이 아닌 貢物이나 農家에서 生產하기 어려운 加工品등은 現物을 購入하여 上納하지 아니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介在하여 不當利得을 노리는 商人과 吏屬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곧 代納이며 여기에는 또 代納의 中間利得을 위하여 不法手段으로 上納을 막는 行爲가 慢行되었으니 이것이 곧 防納이라고 한 것이다. 무릇 代納은 原則上 不法行爲지만⁽³³⁾ 점차 默認되고 심지어는 權門勢家의 庇護下에서 代納을 強要하는 경우 조차 있었다. 그리고 貢物은 收納때에 그 規格을 檢查하여 不合格品은 點退되어 다시 上納되었으나 防納은 이 點退와 點退의 威脅과 關聯되는 것이다⁽³⁴⁾ 이리하여 貢物은 여러 단계의 弄奸과 中間謀利를 거쳐 京司에 上納되는 것이 있으므로 民間의 負擔은 加重되었을 뿐이었다⁽³⁵⁾.

以上에서 우리는 稅制에 關해서 論하였다. 다음 中央 및 地方의 財政制度에 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朝鮮王朝의 財政은 그 收入面에 있어서 혹은 각 國家機關에 分給된 土地로서 각各 收入源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身分에 따라 終身 臨時의 役을 負擔케 하여 所要의 勞動力を 洋當하기도 하고 혹은 稅와 貢物 그리고 役의一部인 物納등의 貢納에 依存하는 등 매우 無秩序한 것이었으며 또 經費面에 있어서도 國庫와 王室(또는 府中과 宮中)의 區別이分明치 않고 막현히 收入을 計算하여 支出을 規制할 것이 強調되었을 뿐⁽⁴⁰⁾ 一定한 歲出, 歲入의 象定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近代의 財政概念으로서 다루기 어려운 實情이었다⁽⁴¹⁾ 다만 그 輪廓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朝鮮經國典에 의하면 歲入의 주요한 財源은 ① 賦稅 ② 鹽·鐵斗 山場水梁 ③ 工商稅와 船稅等이 있고 歲出의 주요한 費用은 ① 上供, ② 國用, ③ 祿奉, ④ 軍資, ⑤ 義倉(賑貨), ⑥ 醫療等이 있었다⁽⁴²⁾. 財源의 基本은 賦稅로서 이로서 大部分充當되고 一部는 鹽·鐵, 林, 漁, 商, 工等特殊產業에서 生產 貢納되는 現物稅로도

(33) 祖宗朝 防納之禁甚嚴 凡百貢物 只使百姓 直納于官 百司之官 亦奉上意, 不爲胥吏所瞞 無刀證阻隔之患, 番溪隨錄 田制後錄下古典刊行會, 東國文化社 pp. 88ff.

(34) 韓國史 近世前期前揭書 p. 440.

(35) 同 上

(40) 即「量其入, 以爲出」朝鮮經國典·治典 錢穀

(41) 「凡經費用橫看及貢案」이라하여 歲出表인 「橫看」(橫으로 列記한 支出一覽表)과 歲入表인 「貢案」(租庸調의 모든 收入 一覽表)을 使用하였다고 한다. 經國大典卷之二, 戶典, 經費 經國大典中樞院版 前揭書 p. 167. 그리고 橫看과 貢案이 世祖代에 整備確立되었다고 하고 宣祖以後 大同法이 施行된 뒤에는 「大同事目」을 英祖 25年以後는 戶曹判書 朴文秀가 作成한 「度支定例」를 參用하였다고 한다. (經大典, 大典通編 戶典 經費 法制處編 法制 資料 第8輯 1963 p. 148.

(42) 朝鮮經國典 賦稅 摘序 韓國史 近世前期編 前揭書 pp. 446—447.

充當되었다⁽⁴³⁾. 이외의 財源으로서 船舶에 賦課하는 船稅가 있었고 後期에는 莓稅가 중요한 財源이 되었다.

다음에 經費支出面에서 ① 上供은 宮中의 御需로서 宮中의 一切의 日用品에 이르기 까지 關係各司에서 珍物을 每日進排한다. ② 國用은 祭祀, 賓客등 中央官府의 經常費와 備荒에 쓰이는 것이며 (豐儲倉에서 掌理) ③ 祿俸은 文武兩班官人에게 支給되는 것으로서 慶興倉에서 管掌하며 ④ 軍資는 軍事行動에 對備하여 糧穀을 備蓄하는 것으로서 軍資寺가 管掌하였고 ⑤ 義倉은 耘糴 即 穀價調節을 目的으로 한 制度로서 初期에는 常平倉을 두어 實施하였으나 뒤에 없어지고 罂穀의 制가 이에 代置되었다⁽⁴⁴⁾. 그리고 ⑥ 醫療는 民衆醫療를 위하여 實費治療를 擔當한 것으로서 惠民署, 活人署등이 設置되었으나 後期에는 거의 有名無實하였다 것이다⁽⁴⁵⁾. 이외에 中央官府의 運營經費는 主로 公田에서 收益되는 公租로서 充當되었다.

稅穀 및 貢物은 各種 倉庫에 備置하여 그 出納節次와 管理는 매우 嚴格하였다. 出納은 戸曹의 關(公文書)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諸司가 承政院을 거쳐 王命을 받은 뒤 그 承傳帖印으로서 受領하되 그 出納에는 司憲府 監察이 臨檢하고⁽⁴⁶⁾ 그 出納의 數量은 年4回季朔에 會計啓聞하기로 되어 있었다⁽⁴⁷⁾.

그리고 錢穀를 管掌하는 各司의 倉庫는 每月初에 戸曹郎官과 司憲府監察이 共同으로 現狀을 調査報告하^는 으며⁽⁴⁸⁾ 京外의 官吏가 交代할 때에는 그 所管物資를 調査하여 損失이 없어야만 責任解除의 證明(解由라함)이 發給되어 다른 實職에 轉補될 수 있고⁽⁴⁹⁾ 錢穀衙門과 守令의 경우는 이 節次가 한층 嚴重하여 그 交代後에 監司가 定한 差員과 新官과 함께 共同立會(眼同)下에 珍物과 帳簿의 對照(反庫)를 받아야 하였다.

한편 地方財政에 關하여 살펴보건데 地方官衙의 財政은 國家로 부터 分給된 土地를 基本財源으로 삼고 있다. 地方의 各 行政機關 軍事機關 및 交通機關등은 ① 運營費에 充當하는 必須田 ② 祿俸 ③ 吏 其他 有役人の 報酬에 充當하는 外役田, 雜色住田 ④ 驛馬를 위한 馬分田등 特殊施設에 주는 土地등이 있다. 이외에 地方經費를 补充하는 官屯田이 있다. 이 나같은 地方財政의 財源은 大同法實施 이후에는 크게 變貌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後述하기로 한다.

(43) 韓國史 近世前期編 前揭書 pp. 447—451.

(44) 還穀은 還穀이라고도 하는바 每年 3月부터 7月까지 사이에 官穀을 풀어 貧民에게 賑貸하여 이를 耘糴하고 秋收후인 10月부터 歲前까지에 이를 回收하는 것을 糴이라 하여 이 制度는 救荒 賑恤 및 軍資와도 密接한 關聯이 있었다. (藩溪隨錄 田制 後錄上 經國大典 前揭書 p. 192 文獻備考 市糴注 4 韓國史 近世前期篇 前揭書 pp. 462ff).

(45) 文獻備考 韓國文化史 1964 職官考十 惠民署 pp. 608—609 活人署 p. 610.

(46) 經國大典 15典 支供 前揭書 p. 193.

(47) 經國大典 15典 會計 前揭書 p. 192.

(48) 繢大典 倉11 1965 法制處 p. 81.

(49) 經國大典 15典 解由 中樞院版 p. 14 同. 解由牒呈式 p. 323 大典 通編 吏典 解由 p. 127.

地方財政의 支出面을 보면 外官에게는 原則的으로 祿科가 없고 監司·兵使·水使는 家族을 同伴하지 않은 경우에만 守令·僉使·萬戶는 家族을 同伴하지 않은 경우의 극히一部에만 祿이 있고 都事, 兩界虞候, 評事만이 祿을 받았다. 따라서 衛祿公須田 등의 所出은 그用途에 있어 公私의 別이 分明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外官은 그 收入이 豐富하다는 觀念이 盛行하여 紀綱이 解弛해짐에 따라 屬僚 또는 民間에 대한 收奪이 甚하게 되었던 것이다. 外方의 吏胥·僕隸에 이르러서는 아무 報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民弊가 또한 尤甚하였다. 外官의 支出은 그 内容을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公用, 公解所需, 이외에 使客 혹은 監, 兵使巡行의 支供, 赴京使臣의 求請, 中國使臣의 支持 新舊官의 遷送等은 그 出費와 民役이 커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四) 社會身分的 構造

朝鮮王朝의 集權的 封建政治體制에 있어서 身分社會構造는 政治 行政 經濟 社會 文化등 모든 分野의 構造와 機能을 底礎하는 基準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身分關係 如何에 따라 政治的 行政的 役割에 限度가 있고 社會的威信에 差等이 있고 經濟的役割과 職業 및 待遇가 다르고 納稅와 軍役 其他 國家의 義務에도 厚薄이 있고 刑罰에도 差別이 있었을 뿐더러 住居 衣食 婚姻 居住地등 日常社會生活에 있어서도 身分에 따르는 一定한 規格과 規定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朝鮮王朝는 一種의 封建的 身分社會로서 社會體系가 거의 分化되지 않은 典型的인 前近代的 特質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朝鮮王朝社會의 身分階級은 그 區別이 多樣하고 分類가 模糊한 경우가 많으나 大體로 兩班 良人 賤人과 中胥等으로 大別하는 것이 常例가 되어 있다. 무릇 朝鮮朝의 身分制度는 麗朝의 그것과 構造上 本質的 差異가 없는 것이었다.勿論 朝鮮朝의 身分秩序의 形成過程에 있어서는 麗末의 身分秩序가多少 解弛되어 良賤의 混淆現象이 있었고 不平官人群을 中心으로 擡頭한 李成桂一派의 新進官人群을 中樞로 하여 身分秩序가 再編成되기는 하였으나 本來 王朝의 建國이란 政治改革이 易姓革命에 끝이고 社會構造를 根本的으로 變革시킨 社會革命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如何間에 朝鮮朝의 集權的 統治體制가 正統化됨에 따라 身分制度도 固定되여 간 것이며 더욱이 朱子學의 身分觀念과 儒教倫理에 立脚한 家父長的 家族制度는 身分制度를 加一層 硬化시키는 役割을 한 것이다.

(1) 兩班은 最上級의 社會階級으로서 土農工商의 首位를 차지하는 士族이며 文武(東西)의 現·前職뿐만 아니라 官人에 任用될 資格이 있는 身分을 通稱한다. 即 所謂 士大夫라는 特殊階層이 뜻하는 이들은 農工商에 從事하지 않고 學問(儒學)을 專業으로 하고 文武科試에 應試하여 官職에 올라 立身出世할수 있는 特權을 亨有하였던 것이다⁽⁵¹⁾. 이들은 政治權力を 掌

(50) 李相佑 韓國史 近世前期篇前揭書 pp. 470~472 P. 471註8 參考.

(51) 高麗初期에 벌써 文班 武班 雜業으로 百官을 나누고, 文·武兩班의 呼稱이 생겼으나 檢鮮이후로

握하는 支配階級인 同時에 名教와 禮法을 謹守하여 社會를 精神的으로 指導하는 知識層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士大夫중에서도 建國事業에 參與한 功臣과 大職 및 王族戚臣등은 官人的 支配體制의 核心的 存在로서 貴族化하였는가 하면 士大夫보다 지체는 낮으나 地方의 土班(土豪)으로서 勢力を 保有하고 行勢한 階層도 있었으며 한편 本人의 能力에 따라 文武官이 되지 못하는 軍役에 編入되는 경우도 있고 地方에 永住함에 따라 政治權力에서 疏外되어 社會的地位를 維持하지 못하고 士類에서 脱落되는 경우도 있어 士大夫階層의 身分分解作用이 한편에서 行되기도 한 것이다⁽⁵²⁾.

그리고 같은 士大夫身分이라도 文班은 武班보다도 重視하였다. 文官은 官職에 制限이 없고 重要한 官職을 獨占했을 뿐만 아니라 軍事職까지도 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하여 武官은 官職에 制限이 있었고 大部分의 경우 文官底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한 兩班의 下位에는 身分上 良·賤의 出身도 많이 있어 世宗代에는 東班 6品과 西班 4品을 同格으로 보는 경우까지 있었다⁽⁵³⁾. 이와같은 崇文輕武의 差別待遇는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도 起因한 것이다. 即 兩班의 庶孽子孫이나 再嫁失行의 婦女子 子孫에게는 文科나 生員進士科에 應試할 資格을 박탈한 反面에 乡吏, 良人에게 武科試에 應試할 수 있는 資格을 주었고 또 良·賤의 身分으로서 軍職이나 官行諸役에 長期勤務하였거나 功勞가 있으면 流品外에서 品官으로 昇進되는 길도 있었으며 이에 兩班의 散職, 影職과 雜職등을 얻어 良賤의 身分을 벼서나는 경우도 있었다⁽⁵⁴⁾. 이리하여 兩班階級은 諸般特權을 享有하여 非生產的 生活을 營爲하는 士大夫階

점차 特殊한 階層의 意味를 갖게 된 것이다. 즉 文·武各九品의 品官 및 그 前卿단이 아니라 여기에 任川資格있는 身分을 通稱하며 여기에는 品官의 家族으로서 本人은 官職이 없는 未仕의 文人인 幼生, 學生, 校生, 院生, 등, 未仕의 武人인 出身 閑良등, 그 年少者인 童蒙등도 포함된다. (四方集, 李朝人口에 關한 身分階級의 觀察 朝鮮經濟의 研究第三 京城帝國大學法學會 1938.

(52) 田中總太郎氏는 兩班을 分類하되 그 家門의 지체에 따라 儒林, 官族, 勳族, 鄉班(土班)등으로 区分하고 있다. 儒林은 學識德望이 높은 儒者の 子孫을 指稱한 것으로 一流의 兩班으로 보고 있으며 官族은 大官을 歷任한 家門을 그리고 勳族(勳閥)은 王室國家에 勳功을 세운 家門 및 그 子孫即 忠臣의 後裔들을 各己指稱하며 鄉班은 兩班의 子孫이 地方에 定着하여 代代로 그地方에 永住하고 事業에 從事하는 사람들로서 自稱 鄉班이라 하였고 地方에서는 鄉班이라 부르고 京中兩班은 이를 土班이라 불렀다. (田中總太郎「朝鮮の社會階級」朝鮮 1924年 3月號 參考) 鄉班에 대하여 鮎具房之進氏는 朝鮮에는 從前 鄉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元來 兩班이었으나 오랜 동안 農耕하여 仕官하지 않고 鄉土에만 居住하였기 때문에 兩班으로부터 常人待遇를 받았다고 한다. 鮎具房之進, 雜致第8輯)

(53) 世宗實錄 世宗 32年.

別立 一衛 称勳精衛 請以東班六品以上, 西班四品以上, 文武科出身, 生員進士, 有蔭子孫等, 屈本衛(睿宗實錄 元年 正月 庚辰).

(54) 韓國史, 近世前期篇 前揭書 pp. 309—310.

散職은 現職을 떠나면서 品階를 얻은 兩班의 品階이다.

影職은 職印만 있고 職事가 없는 兩班의 品階이다.

(經國大典 吏典 京衙前 錄事前揭書 p. 142)

雜職은 實職과 区別되는 雜職에 從事하는 品階이다.

(經國大典 吏典 雜職 前揭書 pp. 102ff).

層으로서 그人口數는 增加一路에 있었다. 그것은 世襲에 의한 自然增加와 壬亂以後에 激增한 良賤의 士大夫化(軍功 其他 功勞로 因한)에 의한 增加뿐만 아니라⁽⁵⁵⁾ 兩班身分을 品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士大夫階級의 數的 增加傾向은 限定된 官職을 둘러 쌓고 그들 相互間에 對立抗爭을 助長하게 이룬 것이다.

(2) 中人은 兩班과 平民과의 中間에 位置하는 身分으로서 語學 醫學 天文 曆算 律學 繪畫 音樂 藝民 등 特殊技術을 修學하여 家業과 職官⁽⁵⁶⁾을 世襲 專占한 特殊身分이다. 中人이라는 名稱는 이들의 居住地가 대개 서울 中村(長橋 小標橋 附近)에 集結되어 있었기 때문에 流用된 것이라고 보는 傾向이 많고 한편 兩班과 平民과의 中間에 位置한데서 由來된 것이라고 보는 者도 있다. 如何間에 中人身分은 麗朝는 勿論 中國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朝鮮朝에서 引用된 것으로서 當時의 그身分階層의 形成과 構造의 特質로 미루워 보아 兩班의 外壁으로서 構築되어 士大夫階級을 위한 防波堤役割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即士大夫階級이 常人등 身分으로 부터의 越權侵害를 未然에 防止하고 儒教의 正統을 固守하며 身分觀念을 根植培養함으로서 그들의 特權을 固守하고자 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朝鮮朝에 있어서 嫡庶의 差別을 嚴格하게 法制화하고⁽⁵⁷⁾ 賤待하는 동시에 庶孽을 中人과 같은 身分으로 固定하고 中·庶(中人·庶孽)라는 略稱이 使用되었으나 이것도 庶孽의 勢力擴頭[對備하고 이들로 하여금 良賤의 擴頭에 對備한 兩班의 外壁으로 삼고자 하는데理由가 有 있다고 볼 수 있겠다.

中·庶와 아울러 中人身分으로서 吏校 즉 吏胥와 軍校가 있었다. 이들은 中·庶보다는 지체가 좀 멀어지나中外官衙에서 末端 司法·行政 事務에 從事하는 文武下級官吏이다. 吏胥에는 京衙前과 外衙前이 있고 京衙前(錄事와 書吏가 있음)은 麗朝에서는 士人, 良家子弟로

(55) 文獻備考 職官考 16. 古典刊行會 1964. 東國文化社.

p. 667. 「李昭光曰, 平時通政以上官甚少正二品以上 不過十餘員僅備實職而已 自十許年來爵賞 多歧至於超越階級者有之正從一品幾五十員 從二品以上 二百餘員通政則 不啻倍之軍功 納粟醫驛宦官雜類亦有官至一二品者……」

文獻備考 職官考 16 前揭書 pp. 670—671 「申欽曰 我朝取人之路 有三 曰文科 曰武科 曰蔭職…辰辰以後 國家被兵播越 急於討賊 寸功毫績 皆以爵賞廩之由是 文武 兩途俱濶矣 至於干今日 朝著益加 故希恩覲賞者 畏有紀極 大者上變策勳 小者乘時驟躋……」

(56) 職官은 譯官 寫字官 圖畫署 財政官 觀象監員 司法官一檢律等의 實務事務을 擔當하는 徵官으로서 信望과 教養에 있어서 兩班에 못지 아니하였으나 雜科試에만 應試할 資格이 있었고 限品叙用의 制限이 있어 兩班과 같은 높은 官職을 갖이지 못하였다. 다만 勳勞가 있는 者는 地方官으로 出補하거나 年久한 者를 兩班의 實職 또는 彙職에 불이는 정도에 끝쳤던 것이다. 가령 經國大典吏典 限品叙用(前揭書 pp. 157—158)에는 다음과 같이 顯職에 나아갈수 없도록 制限規定이 있다. 「文武官二品以上 良妻子孫 限正三品 疾妻子孫 限正五品 六品以上 良妻子孫 限正四品……」

(57) 庶孽禁錮法에 의하여 仕官의 禁錮로 科學應試의 權限이 剥奪되었던 것이며 이례한 嫡庶差別의 緣由는 璞系의 不擁立으로 비쳐진 三子의 亂을 經驗한 太宗이 璞系를 正統으로 限定하고 王位繼承의 危險을 除去하려고 한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一般國民에 까지 擴大되고 法制화되기에 까지 이룬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이와같은 苛酷한 制限을 撤廢하려는 움직임으로서 中葉以後 調用 또는 通漕(淸官에 任命)이 있기도 하였으나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充員되었고 朝鮮初期에는 兩班의 下流와 比等한 地位에 있고 取才를 通過하면 守令, 驛, 渡函 등에도 叙用되었던 것이다⁽⁵⁸⁾. 그러나 그 地位가 低下되어 中期以後에는 仕官의 길이 막히었다. 이들은 宮中使役者와 같이 서울의 西部(上垈)에 集團 居住하였다.

한편 外衙前(驛吏)은 地方官府의胥吏로서 그 職能에 따라 種類가 많았으며 이들은 本來 麗朝地方의 豪族으로서 戶長의 後身으로 보는 것이妥當할 것 같다⁽⁵⁹⁾. 即 戶長은 高麗建國以後 地方土着勢力を 懷柔抑制하고 이들을 集權的支配體制에 編入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鄉職이었던바 漸次 그들의 地位와 身分에 政策의으로 抑制가 加해져 無고 中葉以後 苦役이甚해 졌을 뿐만 아니라 方笠을 平時에 着用케하고 差別的 習俗이 생기게 되어 오다가 朝鮮朝에 이르러 通仕의 制限까지 받아 吏族으로서 固定됨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身分上의 制限에도 不拘하고 地方官府의 實務者이었기 때문에 實權을 犲斷하고 奸偽를 慻行하였을 뿐더러 鄉民에 君臨하여 收奪과 蕊財를 일삼았다. 守令도 私腹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의 奸偽를 默認하는 경우가 많았다. 鄉吏중에서도 驛吏는 奴婢從母法⁽⁶⁰⁾의 適用을 받은 特殊한 存在였고 驛率 驛保는 一般軍卒이나 保人에 比하면 낮은것이다. 衙前의 下人에는 使令 羅將등이 있어 大概 公私賤에서 充當되었다.

軍校는 中央의 宮中使役者인 披隸와 各軍營의 營門所屬 또는 地方의 將校라는 職役이 이에 屬한다. 地方의 將校는 中期以後에 地方의 營將이 비단 軍事만이 아니라 盜賊討捕의 任을 兼하게 되면서 이 將校도 비단 軍官으로서 단이 아니라 차차 捕校로서 警察의 職務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3) 良人은 農工에 從事하는 生產階級으로서 百姓, 常人 등으로 불리여진 一般庶民을 指稱한 것이다. 良人은 納稅와 貢賦를 擔當할 뿐더러 軍役(良役)의 主體가 되는 階層이다. 特히 軍役에는 月籍上으로도 立番出役하는 軍丁⁽⁶¹⁾과 그 費用을 支辨하는 保人⁽⁶²⁾으로 大別되었다. 그러나 中葉以後에는 軍布로 立役을 대신하는 것이 一般化하였기 때문에 軍丁과 保人の 差異는 平時에는 實質的으로 없고 다같이 農事에 從事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軍役은 元來 良人の 負擔이었기 때문에 良役이라는 이름까지 있게 되었으나 初期에 이미 干 또는 尺이라는 身良役賤이 있었고 뒤에는 七般賤役⁽⁶³⁾이라는 苦役까지 負擔하게 되었으니

(58) 經國大典 使典 京衙前 取才前揭書 pp. 142~154 錄事, 書吏, 取才, 參考.

(59) 「高麗太祖」(長民者 稱戶長 統兵者 稱將校 此鄉吏之始也——其戶長之後 多爲顯族(芝峰, 類說, 卷三制度).

(60) 經國大典 公賤 前揭書 p. 490.

(61) 軍丁에는 正兵 步兵 騎兵등이 있었다.

(62) 保人에는 保人 步保 馬保 駒保 其他의 保가 있었다.

(63) 披隸 羅將 里守 潛卒 水軍 烽軍 驛保등 七個苦役을 가르키는 것이다. 披隸는 中央文官廳의 使令이다. 羅將은 中外 武官廳의 使令이며 日守는 地方文官廳의 使令 即 守衛이고 潛卒은 潛軍이라고 하며 稅米布護送役이며 水軍은 海軍이고 烽軍은 烽火軍으로서 가장 賤役視하였으며 驛保는 驛卒을 指한다.

社會的 地位는 賤人과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年中 一定期間 勞役의 義務를 負擔하는 賦役이 있었고 地方特產物에 대한 現物稅인 貢勿의 負擔이 있었다. 貢物은 宮司와 京外官衙의 各種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같은 租稅 賦役 貢物은 租, 庸 調의 財政制度에 의한 常人の 國家에 대한 負擔이었으나 그들의 年收入에 比하여 負擔의 比重이 커기 때문에 財富의 蓄積을 不可能케 하였고 이와같은 農民의 地位는 歐州 中世의 農奴의 그것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렇듯 社會生產의 基幹이 되는 常人이 經濟的 및 經濟外的 強制로 經濟的 地位가 隸屬狀態에 놓여 있어 그들의 自發的 發展이 阻止 되었을뿐만 아니라 學問과 科學의 機會가 附與되지 않고 無教育狀態에 放置되어 社會的 地位도 그 向上의 길이 막혀져 있었던 關係로 社會의 發展을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이다.

(4) 賤人은 最下級의 奴隸的 身分 階層으로서 公共機關이나 土庶에 속하는 個人에게 隸屬되어 勞動力を 提供하였을 뿐더러 財產과 同一視되어 相續 賣買 贈受 貢出의 對象이 되었으며⁽⁶⁴⁾ 公賤과 私賤 그리고 白丁 巫覲, 才人 媚妓等으로 大別된다⁽⁶⁵⁾.

公賤은 私賤보다 地位가 높았으며 이들이 所屬하는 官衙나 奴主(上典)에게 人格적으로 隸屬되는 逃避의 自由조차 없었으며 勞動力を 一生(原則적으로 16歲 以上 60歲以下)提供할 뿐만 아니라 그 服從은 世襲이었다⁽⁶⁶⁾. 그리고 이들의 所屬關係를 分明히 하기 위하여 從母法을 모면하였다.

奴婢가 奴主의 需要에서 過剩狀態에 있는 경우에는 奴婢身分을 그대로 지니면서 別居自活하여 獨立後를 形成하는 奴婢가 있었으나 이것을 外居奴婢라고 하였다. 이들은 官奴婢의 경우에는 奴婢貢으로서 身布(一匹半~一匹)을 司贍寺에 貢納하였으며 私奴婢의 경우에는 身貢의 本를 奴主에게 貢納하였다⁽⁶⁷⁾. 이들은 비록 奴婢의 身分이었으나 奴主土地에 使役되는 것이 아니라 奴主의 土地를 借耕(小作)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身役, 身布의 提供者로서 主從關係를 맺고 또 小作人(借耕者)이었던 말큼 中世 歐州의 農奴와 恰似한 것으로 생각된다. 大體로 奴婢의 人口는 中葉以後 漸次 增加되어 큰 比率을 차지한 것으로 밀어지며 特히 外居奴婢의 數가 激增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⁶⁸⁾.

(64) 繢大典 刑典 私賤 法制處編(法制資料第 19 輯) 1965. pp. 302ff. 奴隸의 價格이 「田地十負 準奴婢一口」라고 規定되어 있었고 正 薩溪隨錄에 의하면 「今本國之俗 則問人之富, 必以奴婢 田地爲言」續篇下라 하여 奴婢가 財產의 一部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65) 이들의 成分을 보면 公賤은 有罪沒入俘虜 또는 屬公等으로 官府에 屬한 奴婢를 주로 하는 것이며 私賤은 買得기타로 私人에게 所有되는 奴婢로서 私奴婢(私人에게 屬함) 院奴婢(書院所屬의 奴婢) 校奴婢(鄉校所屬의 奴婢)등이 있었다. (四分博 李朝人口에 關한 研究 朝鮮社會經濟史研究) 그리고 公私賤等에 白丁, 巫覲, 才人 媚妓등이 있고 佛教의 衰退와 함께 僧行尼도 賤視되었다.

(66) 綢國大典 刑典 公賤 前揭書 pp. 487ff.

(67) 綢國大典 戶典 稔賦, 前揭書 pp. 202ff. 繢大典 刑典 私賤前揭書 p. 305.

(68) 四分博 李朝人口 に 關する 身分階級의 視察(朝鮮經濟 9 研究 第 3) 韓國史 近世前期篇 震檀學會

以上의 公私賤¹⁴에도 白丁은 가장 賤視되어 戶籍에도 編入되지 못했다. 麗末로 부터 家畜屠殺 獵肉商을 主業으로 한 特殊階層으로서 特殊部落을 形成하고 集居生活을 營爲하였다. 이들은 北方民族의 捕虜 혹은 漂流와 投化人으로 傳해지고 있다. 才人은 麗代 以來로 歌舞雜伎를 業으로 하는 倡優로서 廣大라고도 하며⁽⁶⁹⁾ 巫覲은 男子를 「박수」 女子를 「무당」이라 하여 才人과 巫女가 相婚하는 일이 많았다.

以上에서 본 丂班, 中人, 良人, 賤人의 丂身分階層은 朝鮮社會의 構成要素이며 그 身分制는 中國보다도 더 嚴格했고 따라서 그 弊端도 적지 아니하였다⁽⁷⁰⁾. 그러나 朝鮮王朝의 支配體制의 한 重要支柱로서 形成維持되었으며 이 支配體制가 解弛됨에 따라 多少의 變遷이 있기는 하였으나 因襲의 身分觀念은 朝鮮王朝의 存續과 더불어 固執되어 왔고 現在에도 完全히 克服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朝鮮王朝의 家族制度에 關하여 檢討하건데 朝鮮王朝는 家族를 社會의 基本單位로 삼고 儒教에 立脚한 家父長制를 構築하였으며 文化的 社會的 制度로 個人이 아니라 이 家族을 中心 또는 基底로 하여 構成 運營되었다. 儒教는 政教의 最高原理로서 社會의 指導精神이 되고 祖上崇拜가 丂族信仰의 中心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冠婚喪祭의 禮教와 儀式이 文化的 社會的 制度로서 制定勸獎되어 王候士族은勿論 一般庶民에 이르기까지 普及되어 國民의 習俗으로 固定하게 이르렀다. 이와같은 形式主義文化는 여러 가지 弊端을 일으켰으나 特히 王室의 襲服制에 關한 所謂 禮訟問題는 직접 政治的 係爭 問題화되어 黨爭을 誘發하기도 하였다.

家父長制下에서 家父의 權威는 絶對的이었고 그 權利도 強大하였다⁽⁷¹⁾. 且 孝道와 貞烈이 最高의 道德的 指標가 되었고 이것을 勸獎하기 위하여 社會的 國家의으로 各種 表彰 賞與制度가 있었다⁽⁷²⁾.

그리고 宗族을 規制하는 宗法制度가 規定되어 宗門集團이 점차 組織化되었으며 門中에는 宗會가 있고 宗中財產이 있고 宗族의 共同利益을 目的으로 한 宗契가 있었다. 宗族의 成員相互間에는 同族自扶의 精神的 義務가 있었으며 특히 兩班은 官僚以外에는 原則적으로 生業에 從事하는 일。 없었기 때문에 在官하지 못하는 者는 一門中の 高位高官으로 收入이 豐富

前揭書 p. 330.

(69) 假面爲戲者, 謂之廣大(高麗史).

(70) 文獻備考下, 職官考 東國文化社, 1964. 前揭書 p. 666. 「趙憲甲戌東還封事曰, 田竊見, 明朝作人之路甚廣, 但其有才則不論門地… 我國取人之路, 茲狹, 鄉民欲數其子者甚鮮… 至於我朝, 謂國大臣, 稱爲私其所孫之計, 而不念萬世失人之憂」

(71) 家長은 對外的으로 家族을 代表하고 對內的으로는 祭祀의 主宰, 家庭의 管理, 家族扶養, 分家, 立養, 子女의 婚姻, 教育, 懲戒, 賣買, 典雇等 統制權과 戶主權 尊長權 親權, 宗子權등을 簪帶하고 있었다.

(72) 經國大典 禮典 奨勵 前揭書 pp. 285—292

孝行을 위하여 表彰, 職物의 賞賜, 旌門의 建立, 復戶等이 規定되었고 孝行을 奨勵하는 結果로 官吏에 대하여는 父母 褒祖上祭祀에 賦暇하는 定制가 있었고 老親奉養을 위하여는 刑의 猶豫 侍奉, 軍役 其他 義務免役等이 있었다. (經國大典 兵典 免役 給假 前揭書 pp. 456—457).

한 者 に 依 託 寄 食 하는 일 이 많았다. 그리고 大 家族 制 的 標 誌 으로서 族 譜⁽⁷³⁾ 가 重 観 되고 大 家族 은 地 缘 的 으로 同 族 部落 을 形 成 하여 經 濟 的 自 衛 的 인 相 扶 相 助 的 共 同 體 를 形 成 하였다. 이와 같은 同 族 部落 은 우리나라 農 村 의 自 然 部落 構 成 에 있어 普 遍 的 現 象 으로서 이 事 實 로 미루우 보더라도 大 家族 制 度 가 農 村 社 會 構 造 形 態 에 重 観 的 位 置 를 차 지 하고 있 음 을 알 수 있는 것 이다.

이와 같은 家族 制 度 는 婚 姻 과 女 子 의 地 位 葬 葬 과 五 服 制 度 祭 祀 와 立 後 相 繼 등 여 러 特 殊 한 社 會 制 度 와 密 接 한 關 係 가 있 었다. 婚 姻 은 早 婚 과 嚴 格 한 族 外 婚 이 鼓 行 되 었 고 女 子 의 地 位 는 男 子 의 隸 屬 物 에 不 過 한 것 으로 些 少 한 흠 이나 不 美 가 있 어 도 雜 婚 의 條 件 이 되 고⁽⁷⁴⁾ 女 子 의 再 婚 은 禁 止 되 고 再 婚 女 子 의 子 孫 은 官 職 에 登 用 하지 아니 하는 等 差 別 이 甚 하였다. 그 뿐 만 아니라 一 夫 多 妻 를 公 認 하 면 서 妻 와 妾 을 严 格 하 区 别 하고 妾 의 所 生 을 庶 孳 이라 하여 社 會 上 으로 嫡 庶 의 差 別 를 하였다. 이와 같은 男 本 位 의 社 會 體 制 는 結 局 儒 教 倫 理 上 立 脚 한 것 이 지만 男 尊 女 卑 의 觀 念 을 만 드 리 내 계 한 것 이다. 이 외에 五 服 制 度, 立 後, 相 繼 등 家 父 長 制 的 家族 制 度 를 維 持 強 化 하는 面 에서 制 度 化 되 었 다⁽⁷⁵⁾.

위 斗 같아 朝 鮮 王 朝 는 儒 教 上 立 脚 하여 忠 孝 를 表 裏 一 體 로 하는 严 格 한 家 父 長 制 를 構 築 함 으로서 集 權 的 封 建 支 配 體 制 를 維 持 할 수 있 었 던 것 이다.

第二節 朝 鮸 王 朝 의 政 治 文 化

朝 鮸 王 朝 的 成 立 은 禪 讓 (禪 位)의 形 式 으로 大 體 로 激 變 없 이 政 治 權 力 을 引 受 하여 王 室 을 交 替 하고 前 王 朝 的 遺 制 위 에서 經 國 體 制 를 마련 한 것 으로 본다. 高 麗 朝 와 朝 鮸 朝 的 歷 史 的 性 格 規 定 에 關 乎 史 家 들 의 見 解 가 區 區 하 나⁽¹⁾ 이와 같은 兩 王 朝 를 本 質 的 으로 同 一 視 하여 同 一 한 中 世 國 家 로 보 려는 立 場 的 根 據 로서는 兩 朝 의 政 治 的 社 會 的 構 造 와 官 人 國 家 的 性 格 에 있어 本 質 的 인 差 差 が 없 으며 또한 麗 末 에는 이미 朱 子 學 的 影 響 下 에서 儒 教 的 各 分 論^(c) 盛 行 하 었 기 때문에 臣 下 로서 王 位 를 築 夺 하는 過 激 한 改 革 은 事 實 上 不 可 能 한 狀 況 에 놓 이 있 었 던 事 實 등에 依 據 한 것 이다. 그럼에도 不 拘 하 고 朝 鮸 朝 는 社 會 的 歷 史 的 規 制 를 받 아 民 族 史 展 開 過 程 에서 固 有 한 歷 史 的 特 性 을 지 니 고 있 음 은 再 論 의 餘 地 가 없 는 바 이 러

(3) 族 譜 는 밖 으로는 同 姓 不 婚 과 階 級 内 婚 制 를 基 礎 로 하여 族 姓 과 門 閥 을 밝 히 고 이로서 黨 派 的 别 까 지 도 가 리 었 으며 또한 祭 祀, 相 繼, 收 養, 立 後 등 的 必 要 에서 오는 行 列 的 别 嫡 庶 的 分 을 明 白 히 하 였다.

(4) 七 去 之 惡 이라 하여 不 事 舅 姑, 無 子, 淫 佚, 姮, 惡 疾, 多 言, 窃 盜 等 7 個 的 離 婚 條 件 이 있 으으며 三 不 出 이라 하여 與 共 三 年 婚 先 貧 稉, 後 富 貴 有 所 娶 無 所 歸 的 離 婚 不 許 的 條 件 도 있 으나 이 것은 恒 常 無 視 되 었 다.

(5) 麗 朝 以 來 的 五 服 制 度 에 의 하면 族 内 的 尊 卑 親 疏 에 따라 服 婿 的 期 間 을 ① 3 年 (27 個 月) ② 期 年 (12 個 月) ③ 大 功 (9 個 月) ④ 小 功 (5 個 月) ⑤ 總 麻 (3 個 月) 로 五 分 하여 그 範 囲 를 规 定 한 것 이다.

(1) 震 檀 學 會 韓 國 史 에서는 高 麗 朝 를 中 世 를 朝 鮸 朝 를 近 世 를 区 分 하 고 있고 李 鍾 恒 著 韓 國 政 治 史 는 兩 王 朝 를 同 一 視 하 고 있 다. (同 書 第 五 章 參 考), 新 東 亞, 1968, 7 月 號, 韓 國 史 的 時 代 区 分 pp. 346ff.

한 特性中에서도 政治文化의 側面에서 當代의 文化의 内容과 政治秩序를 뒷 받침하고 있던 價值理念 그리고 一般民衆의 意識構造等을 中心으로 여기서 살펴 보고자 한다.

(一) 儒教文化

儒教(朱子學)은 朝鮮王朝가 새로운 建國理念으로서 標榜한 政治的 指導理念인 同時에 官人支配를 뒷 받침 하는 政治哲學이었으며 나아가서는 李成桂의 政權篡奪을 易姓革命이라는 倫理的 名分論으로 正當화시켜준 이데올로기 이었다. 또한 그것은 家族 村落 및 民族等의 第一次社會 集團內의 人間關係에 있어 順從의 體系를 禮論的 規範에 의하여 正當化하고 이어한 封建的 身分秩序를 全般的으로 規制하는 社會的 價值準據가 되었던 것이다.

무릇 三國時代 以來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千餘年間 國家民族의 宗敎로서 繁榮을 이루고 民衆思想을 支配하던 佛教가 朝鮮朝의 建國을 契機로 儒敎와 完全히 그 地位를 바꾸게 된 裏面에는 當時의 政治 社會的 理由가 있었던 것이었다. 특히 儒佛兩敎가 共히 固有의 鄉土的思想이 아니고 外國으로부터 傳來된 教義에 비추어 이와같은 宗敎的 興亡盛衰로 因한 排佛崇儒의 決定的 轉機를 이루게 한 要因은 그러한 理由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佛教는 高麗朝의 國敎로서 5百年間 國民을 爲한 遠禍召福의 唯一한 民間信仰으로서 一般化되고 王家를 爲한 護國信仰으로서 王朝의 永安과 國家의 安命에 對한 祈願과 信奉을 하는 가운데 政府權力과 密着하였고 僧侶는 國家의 殊遇를 받게 되었다. 이와같이 麗朝의 佛教가 漸次 政治權力 또는 社會的 身分關係와 密着함으로서 世俗化되고 狂信的 爲政者들의 佛事熱中으로 寺田의 擴大와 僧侶의 特權化를 가져오자 社會的 物議를 이르렀으며⁽²⁾ 마치 麗末에 朱子學이 導入되어 儒家가 新興勢力으로 擡頭하고 한편 寺院의 財政의 膨脹으로 因한 社會的 弊端이 激甚해지자 社會改革運動으로서 佛教排斥運動이 展開되었던 것이다.

麗末에 있어서 朱子學이 急進의으로 發展하여 新興儒者勢力이 擡頭하게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國內外의 政治的 社會的 그리고 文化的 與件에 起因한 것이었다. 即 두엇보다도 中國大陸에서 元의 武人支配體制代身 明의 文人 支配體制가 勃興하자 여지껏 佛教의 支配下에서 맥을 추지 못하였던 儒生들이 回生할 수 있는 雾靄氣가 造成되었으며 그 餘波는 우리나라에 까지 미쳤던 것다⁽³⁾.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麗朝에서 武人政權과 結託하여 갖가지 弊害를 비쳐냈던 佛教의 墮落과 거기에 따른 社會的 紀綱의 紊亂을 惹起하자 이를 바로잡고 儒敎的 秩序로서 社會風習을 淨化시키려는 새로운 價值의 摸索이 그들 儒者들 中心으로 漸次 무루 익어 갔던 것이다.

(2) 高麗史 列傳 第六 崔承老傳 圖書刊行會本 第三 pp. 65—67.

(3) 明은 恭愍王 19年(1370年) 高麗의 使臣 成準得이 돌아가는 便에 繪書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에는 高麗의 政治가 王道를 崇尚하고 儒敎를 尊重할 것을 切實히 勸誘하고 있다. 「歷代六君 不問華夷 惟行仁義禮…可以化民成俗…王者舉王道以應之則 無不治矣…」(高麗史四二恭愍王 世家五國書本 第一 p. 634). 李相伯韓國文化史 研究論攷 韓國文化叢書 第2輯 1948 乙酉文化社 pp. 12—15

그리고 麗末에 急速히 受容되었던 朱子學이 儒者의 新興勢力を 養成하면서 過敏한 斥佛運動⁽⁴⁾ 불어 일으킨 것은 그 自體가 가진 闢異排他思想⁽⁴⁾에도 基因하는 것이 있으며 한편 朱子學은 從來의 唐宋風의 儒學이 詩文中心의 文詞風學問인데 比하여 社會倫理와 政治道義를 中心으로 하는 現實的 經倫의 學問으로서의 特性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와같은 朱子學의 特性은 元制에 따른 科學制度의 實施로⁽⁵⁾ 政治的 充用制度가 人事行政上 重要한 比重을 차지함에 따라 더욱 儒者中心의 새로운 政治勢力形成의 可能性을 提供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仁國元明과의 國際關係를 契機로하여 朱子學의 導入은 國內儒者들 間에서 新舊의 政治勢力의 分裂을 招來하고 斥佛意識을 助長하였다. 即 事北(元)을 主張하는 李仁任一派의 舊派勢力에 對하여 事南(明)을 主張하는 新興儒者中心의 새로운 親明政治勢力의 結束을 招來하고 辛甿이 誅殺當⁽⁶⁾하는 等 斥佛運動이 展開되었으며 이 運動은 마치 李成桂一派로 하여금 麗末의 政治實權을 掌握하여 王朝交替의 革命까지 가져오게 한 한要因이 되었으며 革命後에도 仁新的 政治改革 運動의 一環으로 具體化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같은 政治改革運動이 國家財政과 新進勢力의 經濟的 基盤을 確保하기 為한 田制改革과 密接히 連結되어 있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는 것이었다. 斥佛을 主張하는 儒者勢力이 中心이 되어 武人 李成桂를 推戴하는 形式으로 朝鮮王朝의 太祖로 登極시킨 後에도 儒教의 教義에 의하여 新王朝의 새로운 政治秩序를 構築하라는 運動이 持續되었으며 그리고 朝鮮王朝 成立以後에 初期의 歷代諸王들은 積極的に 崇儒政策을 展開하였다. 即 初期 諸王의 崇儒政策은 太祖 本成桂를 비롯하여 太宗에 이르러 更強化되고 世宗朝에 와서 비로소 新興王朝의 새로운 秩序로서 固着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初期에 있어서의 諸王들의 崇儒政策은 儒教의 秩序로서 新興王朝의 文物典章으로 삼으려는 儒家 엘리트들의 意圖가 뒷받침 되었음을勿論하고 新王朝의 새로운 政治權力의 成立을 儒教의 名分論으로서 合理화시키고 그 正統性을 培養하고자 하는데 政治的 意義가 있었던 것이었다.

武人인 太祖 李成桂는 推戴形式으로 王位에 올랐기 때문에 自身을 權力核心으로 하는 支配體制의 社會的妥當性을 扶植할 必要性이 切實했으며 이를 위한 民心의 安定과 思想의 統一을 畏하는 制度整備와 教育文化의 定向이 무엇보다도 時急했던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太祖의 崇儒政策은 民心의 歸依를 위한 行政上의 現實的 必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또 그것은 仁祖自身의 崇儒思想에서 起因했다기 보다는 그의 麾下에 모여 있던 儒者 重臣들의 热烈

- (4) 元來 中國宗朝에서 完成된 朱子學은 孔孟以後로 斷絕된 儒教의 正統性을 確立하고 老, 佛과 같은 諸異說을排斥하기 위한 强한 排他的 이데올로기로서 形成되었던 것이다. (李相伯韓國文化史研究論 改前揭書 p. 37)
- (5) 忠肅王當時의 詩賦中心의 應學試가 漸次 사라지고 恭愍王 18年(1369)에 元制에 따라 經典을 中心으로 하는 科學制가 實施되므로서 儒學의 經典은 政治的 엘리트 充用의 源泉이 되고 政治的 社會化過程에서 重要한 役割을 한 것이다. 尹文學士遺稿 p. 59 p. 73.
- (6)僧 辛甿의 政權掌握으로 朱子學派가 政界로의 出路가 막히자 燥烈한 斥佛意識이 昂揚되었고 마침 그가 誅殺當權을 契機로 斥佛運動이 展開되었다. (李相伯 前揭書 pp. 5-8), (尹文學士遺稿 朝

한 崇儒意思를 反映한 것이기도 한것이었다. 例컨데 太祖는 元年에 司憲府에서 올린 十個條上疏⁽⁷⁾를 받아 드려 抑佛政策을 實施하고 있으며 이로서 高麗朝 中葉 佛教全盛期에는 一般民의 過半에 達하던 佛徒의 教가 太祖朝에 와서는 一般民의 10分之 3程度로 減少되고 있다⁽⁸⁾. 如何間에 太祖朝에 있어서는 抑佛과 아울러 儒學獎勵策이 實施되었다. 中央에 成均館과 地方에 鄉校를 設立하여 儒學者를 養成하고 이들의 政治的 充員을 꾀하였으며 科舉制度 勵明朝에 따라 四書五經을 中心으로 하는 三場의 制⁽⁹⁾를 確立함으로서 朱子學中心의 學問를 을 奨勵하고 儒者들이 政治的「엘리트」로서 充員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太祖의 朱子學 奖勵策은 한편 明의 文物制度에 準據하여 朝鮮初期의 制度整備를 하게 하는 形式主義의 外來文化受容의 風潮⁽¹⁰⁾ 가져왔다.

다음 太宗의 崇儒政策을 살펴보건데 太宗은 自身이 好學의 氣質을 가진 崇儒者이 었기 때문에 그의 崇儒政策은 太祖보다도 自發的이고 積極的이었다. 그는 即位初에 宮中에서의 佛經誦唱를 嚴禁하고 寺刹田土와 奴婢를 整理하여 各司와 鄉校에 分屬시키고 司諫院의 時務上疏에 依하여 五大寺, 十大寺의 田地를 百結로 限定시키는 等一大改革을 斷行하였고⁽¹¹⁾ 儒生들의 各級學校敎育을 支援強化하였을 뿐 더러 社會의 各種 儀式制度를 奖勵하였다.

다음 世宗은 一貫의 好學英主로서 崇儒政策을 繼承強化하여 朝鮮朝의 文物制度를 儒教文化에 의하여 統一統着시켰다. 따라서 麗末 以後로 나타난 斥佛運動은 世宗朝에 이르러 거의 그 매듭을 짓게 되고 儒教의 文物典章이 新興王朝의 새로운 秩序로서 確立되기에 이른 것이다. 世宗은 우선 隻牒制를 嚴守케 하여 僧侶數를 制限시키고 佛教儀式을 嚴禁하여 朱子家禮에 의한 儒教의 儀式으로 代置시켰으며 그리고 先王 以來로 遂行해 오던 寺刹田土의 抑制를 더욱 徹底히 하고 中外寺社의 奴婢와 田土를 官에 附屬시켰다. 한편 世宗은 集賢殿을 設置하고 經筵廳을 두어 自身과 臣下들의 儒學研磨에 힘썼으며 朱子家禮를 가장 正統的인 것으로 普及시켜 社會規範의 標準으로 삼았다.⁽¹²⁾

다음 여기서 우기는 朝鮮王朝의 成立이 어찌한 名分論에 의하여合理화되었는가 하는 大義名分의 問題와 그것을 國際的 確認으로서 正當化시키는 問題等에 關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朝鮮王朝 建國에 있어合理的 名分을 提供한 理論的根據가 된 것은 易姓革命論이었다. 易姓革命論은 天命思想과 春秋精神이 妙하게 結合하고 있는 儒教의 基本的인 革命倫理

鮮印刷株式會社 昭和 8年 p. 54)

(7) 太祖 實錄 元年條

「…上不負皇天眷佑之命，下不孤臣民推戴之意 以開億萬年無彊之休 幸甚」

(8) 同書 四年 二月條

大司憲 朴經 上疏「國家度僧 初無是額 僧之於民 居十之三…」

(9) 三場의 制는 高麗朝에서 이미 元制에 따라 採擇되었던 것인바 恭愍王 18年부터 行한 鄕, 會, 殿試의 制度가 바로 그것이며 이러한 元制는 明에게 그대로 襲用되었던 것이다. (尹文學士遺稿前揭書 p. 59)

(10) 太宗 實錄 三三 六月條 (尹文學士遺稿前揭書 p. 95)

(11) 尹文學士 遺稿 朝鮮印刷株式會社 昭和 8年 pp. 100—113

이다⁽¹²⁾.

朝鮮朝의 建國을 合理화시키기 위하여 麗末諸王의 無道와 여기에 따른 天德의 衰盡을 力說하고 다음으로 新興王朝의 權力成立을 民心歸服에 依한 天命의 發動으로 合理화시키고 있는 그 이다⁽¹³⁾. 그리고 抑佛崇儒思想을 土台로 麗末의 暴惡無道를 感佛에서 오는 佛敎의 弊端과 關聯시키고 그 無道不治를 儒敎的 春秋精神으로 徹底하게 告發하고 囉正하려는 儒敎的大義名分論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한편 朝鮮朝의 建國에 對한 大義名分을 易姓 革命論에 의하여 理論的으로 밝히는 한편 그 와같이 새로이 成立된 政治權力의 正統性을 定立하기 為하여 그 正當性을 國際的으로 確認시키는 制度化作業이 重要한 課題이었다. 이리하여 朝鮮王朝의 正統性의 根據를 바로 大陸의 正統의인 天子인 明帝王의 册封을 받는데에서 求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恭讓王(1393) 4年 7月 17일에 登極한 李太祖는 그해 8月 29일에 前密直司 趙琳을 明都에 보내어 明帝의 承認을 받았고 12月에는 藝文館學士 韓尚質을 보내어 國號를 請한 結果 朝鮮이란 稱號를 明으로 부터 받았던 것이다⁽¹⁴⁾. 이와같이 國王의 册封과 國號의 制定을 通하여 明으로 부터 그 正當性을 賦與받은 朝鮮王朝는 그 建國初부터 自主性을喪失한一面을 보였고 그 結果로 大陸에 대하여 恩惠와 禮로 얹혀진 事大秩序를 가져오게 하였고 事大之禮를 갖추고 敦貢을 하는 代價로서 政治的 支持와 正統性을 獲得하는 主宗關係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서 中原文化와 三代(夏殷周)秩序를 尊重하는 慕華思想을 더욱 強化시키게 이르렀다.

(二) 朝鮮朝儒敎의 政治思想

儒敎는 元來 現實的 基盤에서 出發하였던 만큼 이러한 儒敎의 現實性은 그 教義를 社會倫理 및 政治思想으로 發展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儒敎는 그 中心概念을 仁이란 倫理哲學에 두고 있으며 그 窮極的 目標를 順從體系에 따른 秩序에 依하여 調和된 安定된 社會에 두고 있다. 一般的으로 儒敎政治思想의 一般的屬性을 倫理性 名分論 階級性 尚古主義等으로 要約할 수 있었다⁽¹⁵⁾.

儒敎가 本來 政治의 混亂과 人倫의 恃德을 克服하여 政治的道義과 社會의 安定을 回復하려는 實質的 要求에서 出發했던 만큼 儒敎의 倫理性은 그 基本的인 屬性이라 하겠다. 特히 治者와 被治者에 對한 倫理는 勿論하고 個人相互間의 社會의倫理를 尊重하는 儒敎的 道德

(12) 易姓 革命論은 中國古代의 가장 理想的政治形態로 사모하고 있는 三代(夏殷周)의 政治의 現實에 서 定立된 理論으로서 君主의 德이 治民의 本來의 任務를 다하지 못할때 民心은 여기에서 離脫되고 이러한 狀況에서 새로운 德있는 人物은 困苦한 百姓을 救濟하기 위하여 不德한 前王을 放伐하고 새로운 治者로 君臨할수 있다는 것이다.

(13) 이러한 理論의 合理화의 最大的 功勞者は 鄭道傳(三峰)이었다. 그는 經國文鑑에서 恭愍王以下の 四王을 殘忍無道한 暴君으로 酷評하여 中國의 桀紂에 比喻시키고 있다.(尹文學士遺稿前揭書 p.121)

(14) 太祖 實錄 元年條
「…於洪武二十五年 閏十二月初九日 欽奉聖旨 東夷之號 催朝鮮之稱美…」

(15) 玄相允著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949 pp. 4-5. (同書에서 羅列된 人倫道德, 清廉節義, 君子論等은 倫理性으로, 慕華思想, 當爭 尚名主義等은 名分論으로, 階級思想 家族主義 文弱性, 產業能力低下等은 階級性으로 그리고 復古思想은 尚古主義等으로 類別할 수 있겠다.)

律은 王主의 善政과 社會的 秩序를 가지오려는 現實的 目的과 直結되고 있다. 여기서 王主의 德性涵養과 社會民風의 淳化가 強調되어 왔고 그 結果 儒教의 政治理論은 人性問題와 社會的 紀綱 그리고 治者の 德性等이 中心內容을 이루어온 것이다.

다음 名分論⁽¹⁵⁾：儒教의 倫理秩序를 體系化한 禮論에서 源源한다. 이 禮論은 모든 社會秩序와 行爲의 包括的인 基準이며 따라서 禮論에 依하여 容認되거나 合理화될 수 없는 것은 모두 그 正當性을 社會的으로 認定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社會的으로 正當性을 賦與하는 基準 또는 形式을 固守하려는 것이 바로 名分論인 것이다. 따라서 名分論은 禮論에 依한 社會秩序의 確立이란 肯定的인 側面이 있는가 하면 지나친 形式的 制約으로 人間의 行爲를 消極적으로 固着化시키는 否定的 側面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음 儒教에 内包된 階級思想은 儒教가 倫理와 名分을 重要視하고 現實的 社會秩序를 尊重하는 必然的 結果로서 나타나는 屬性이며 그것은 第一次 社會集團의 安定과 調和를 上下의 縱의順從秩序에서 求하려는 封建的 身分思想에서 源由한다. 本來 儒教는 教義上 恒常 倫理面에서 道義의 義務를 強調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治者は 民衆에게 君臨하지만 그 内面에는 언제나 治者の 民衆에 대한 倫理的 義務가 強調되었고 이로서 治者와 被治者間의 統治關係가 慈惠의이나마 어느 程度 協調的 調和關係로 發展할수 있는 餘地는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身分思想과 現實的 社會秩序가 盲目的으로 默守되는 동안에 協調的 秩序로 昇華發展되지 못하고 分裂的 階級思想으로 轉落 되어 버린 것이다. 다음의 儒教의 尚古主義는 元來 春秋時代의 混亂을 克服하기 為한 理想的 指標로서 引用한 夏, 殷, 周 三代秩序를 崇仰하고 憧憬함에서 源源한다. 春秋時代의 不安한 現實을 일단 不正한 것으로 想定한 孔子는 그것을 克服 救濟하기 위한 바른 政治의 標準의 秩序로서 언제나 三代 先王의 秩序를 讚揚引用하였다기 때문이다. 이러한 尚古主義는 政治의 目標를 將來의 發展의 새로운 모델에서追求하려들지 않고 過去의 낡은 秩序를 美化하고 그것을 踏襲하려는 弊端과 아울러 그려한 尚古的 傳統이나 秩序에서 벗어난 것을 無條件 잘못된 것으로 排斥하려는 排他 因襲的인 思想을 内包하고 있는 것이다。⁽¹⁶⁾

以上 우리는 儒教의 一般的 屬性에 關하여 論하였으나 다음 朝鮮朝 儒學 朱子學의 特性에 關하여 論하고자 한다. 性理學을 中心으로 하는 朱子學은 宋朝의 朱子가 完成한 것으로서 儒學의 發展의 한 形態이었다. 그리고 性理學은 漢의 訓詁學이나 清의 考證學과 比較하여 다음과 같은 特性이 있었다. 一般的으로 朱子學은 當時까지 衰微하고 動搖되었던 儒學의 原理를 再構成하여 儒教의 正統性을 確立하려는 強한 名分의 立場을 固執하여 그와같은 儒教의 正統性을 固守하기 위하여 儒教의 原理와 그 理論을 달리하는 모든 異說을 排斥하는 閩異論的立場을 固執한다. 即 朱子學은 儒教의 再建과 斯道의 振興을 위한 強한 使命感에서 形成되었기 때문에 自己에게서 儒學의 正統性을 求하려는 立場이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16) 玄相允朝鮮儒學史 前揭書 pp. 4—12参考

따라서 朱子學은 正파 邪自와 彼斯文과 異說을 嚴密히 區別하고 거기서 正自 스文은 굳게 立키고 邪 彼 異說은 물리쳐야 하는 排他性을 發展시키게 된다. 그리고 朱子學의 이와 같은 ~~其他的~~ 性格은 政治와 文化에도 그대로 擴大되어 가령 黨爭을 助長하고 異說을 抑制하며 自己를 辯護하고 他를 攻擊하는 偏狹한 獨斷을 하고 나아가서는 漢族과 中原의 正統性과 異族을 蔑視하는 等의 傾向을 露呈하는 것이다.

이斗같이 朱子學이 正統性을 獨斷的으로 固執하고 關異論에 執着하기 때문에 그 教義를 汎人類的一般論으로 發展시키지 못하고 겨우 漢族을 中心으로 하는 民族的 固陋性을 免치 못하니 한것이며 나아가서는 政治的 現實과 密着하여 偏頗的 이데올로기로서 發展하지 않을수 없는 契機를 지니게 된 것이다.⁽¹⁷⁾

이斗같은 特性을 지닌 朱子學을 受容한 朝鮮朝의 儒教가 이데올로기性을 지니고 있었음은 再論⁽¹⁸⁾ 餘地가 없었다. 事實上 朝鮮朝의 儒教는 純粹한 文化價值로서 國民思想속에서 自然的으로 成長되지 못하고 朝鮮王朝社會의 支配的政治勢力에 依하여 政治的目的에서 利用되고 順行되었던 것이다. 朝鮮朝 建國에 參與한 新興엘리트勢力이 大部分 儒教者들 이었다는 事實上偶然的 現象이 아니었다. 建國初부터 政治와 密着하기 始作한 儒教는 建國後에는 王朝官、支配體制의 獨占的 指導理念으로서 固着하게 이르렀다. 그리고 注目할 것은 朝鮮朝 政治權力의 明朝에 의한 國際的 承認이 儒教文化를 對外的으로 固着시키는 結果를 가져 왔다는 事實이다.

即 中原의 正統性을 標榜하고 있는 明이 儒教의 名分論(易姓 革命論)으로 合理化시킨 朝鮮朝의 政治權力を 承認했다는 것은 儒教秩序에 對한 國際的 承認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王朝權力成立에 直接的인 權威의 根據가 된 儒教이기에 朝鮮朝의 政治權力은 儒教의 權威를 벗어날수 없었으며 이런 觀點에서 儒教의 教義는 政治現實에 正當性을 獨占的으로 賦與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性을 強하게 띠게 되었던 것이다.⁽¹⁸⁾

여기서 儒教의 權威에 대한 盲目的 服從과 그이데올로기性에서 오는 獨斷的 弊端이 露呈하게 되고 이것은 對外的으로 事大秩序와 慕華思想을 爽트게 하였던 것이다.

以上과 같이 政治와 凝結하여 이데올로기의 教義로 빠진 朝鮮朝의 儒教는 對外的으로 恩惠와 理를 中心으로 하는 明과의 宗主 朝貢의 事大秩序를 定立시키고 對內的으로는 禮論과 尚古主義에 의한 社會安定과 民風의 淳化를 圖謀하게 하였다. 그러나 禮의 秩序를 崇尚하고 堯舜과 三代의 文化에 對한 지나친 追慕에서 慕華思想을 더욱 깊게 하였으며 儒教에 對한 偏狹한 盲從은 鎮國主義와 斥邪와 같은 思想的 閉鎖를 가져왔고 儒教와 政治와의 凝結은 經學과 政治의 充員을 連結시키므로써 黨派鬭爭과 士禍와 같은 同族相剋의 悲劇을 나았으며

(17) 玄相允 朝鮮儒學史 前揭書 第十五章 斥邪衛正論參照

(18) 尹文學士 遺稿 前揭書 p. 117ff.

五倫五常에의 기나친 執着은 思想의 創造的 發展을 阻害하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三) 慕華思想과 事大秩序

對明 事大秩序는 文化的으로 中原의 漢文化를 對象으로 하는 慕華思想과 直接關聯되는 國際關係로서 이는 모두 儒教의 政治文化가 낳은 朝鮮朝 特有의 歷史的 產物이었던 것이다. 慕華思想은勿論 韓民族 固有의 思想類型이 아니고 朝鮮朝가 儒教文化를 全幅의으로 受容하여 그것을 基盤으로 新王朝의 秩序를 構築하였기 때문에 派生的으로 朝鮮社會에 씨를 뿌리게 된 意識形態이었던 것이다⁽¹⁹⁾.

이와같이 儒教의 文化價值는 朝鮮王朝의 統治體制가 依存하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었기에 新興王朝秩序에서 儒教만이 唯一한 文化價值로서 排他的 獨占性을 享受하였을 뿐더러如何한 秩序와 質值도 儒教의 教理에 依하여 合理化되지 않은 限 實效가 없었다. 따라서 儒教는 政治權力에 依存하고 社會的規範이追求하여야 할 包括的인 文化的 準據의 틀(frame of reference)로서 發展하게 되었다. 그리고 儒教文化가 理想的規準으로 삼았던 것이前述한 바와같이 中國 夏 殷 周三代의 秩序이었기에 政治의 至上目標는 그와같은 三代의 理想의 秩序를 朝鮮朝社會에 具現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慕華思想이 支配階級의 意識속에 쏙트고 發展한 것이며 그것은 單純한 文化意識이 아니요 王朝秩序에 密着된 權威意識으로 發展하였으며 이러한 意識의 根底에는 朝鮮王朝의 權力 그 自體보다도 그것에 依하여 維持되는 漢文化 秩序가 极히 重要하다는 論理가 숨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慕華思想은 文化的인 同化意識에서 找아 볼수 있고 또 그 同化는 優越한 文化的受容을 뜻하는 同時에 自己文化의 劣等性을 自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意味에서 朝鮮朝의 慕華思想은 華夷思想 또는 尊攘思想과 關聯이 있는 것이다⁽²⁰⁾. 그리고 이 尊攘思想은 朝鮮朝의 歷史的 發展過程에서 크게 作用하였으며 가령 丙子胡亂 以後에 나타난 強烈한 排清思想이나 丙寅洋撫以後 西勢東漸에 대한 衛正斥邪運動 그리고 乙巳保護 條約을 前後하여 나타난 一聯의 義兵運動등은 모두 이와같은 尊華攘夷思想에서 發源한 것이었다.

또한 慕華思想은 朝鮮朝初期에 支配하였던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事大字小」⁽²¹⁾의 意識과

(19) 慕華思想은 本來 歷史的으로 高麗中期以後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으며 尹培均「朱子學の傳來とその影響について」尹文學士 遺稿集(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昭和 8 年 p. 117) 그것은 또 箕子車來說을 基礎로 한 箕子崇拜思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東國通鑑 肅宗 7 年(高麗)各十月條「我國教化禮儀自箕子始…」) 그리고 中國은 高麗를 近族中에서 가장 뛰어난 禮儀의 나라로 稱讚하고 드디어 「小中華」라는 讚解까지 보내게 되었다. (吳慶元 小華外交 京城 朝鮮研究會 大正三年 p. 208)

(20) 華夷思想은 中原의 漢文化를 正統的인 優秀한 것으로 承認하고 其他 近方의 文化를 劣等한 것으로 畏敬하는 文化的인 差等思想에서 源流한다. 그리고 그것은 尊周思想 또는 尊華攘夷(尊攘)思想과도 關聯이 있다.

(21) 「事大字小」의 關係는 이미 中國上古을 그린 春秋傳에서 나타나고 있다. 事大는 小國이 列強中에서 存立하기 위한 不可避한 形式 即 自存의 窮形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字小」란 작고 연약한 者를 사랑하고 애처럼 여김을 意味한다.

「以事大國 所以存也」(左傳襄公二十七年) 한편 事大字小는 所謂「天下」(國際社會)안에서 明이

密接한 관계에 있었으나 其後 事明意識이 나타남을契機로 더욱促進強化되었다. 即 初期에 있어 가장合理的인 國際秩序로서 事大字小關係가 共認되 다시피 하였으나 壬辰亂等의 明의來援으로對한 깊은 感荷로 因하여 더욱 굳은 事明意識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같은 事明意識은 明이 滅亡한 後에도 前王不忘의 義理로서 排清運動을 招來한바 있었다.

이로하여 事大字小의 觀念은 歷史의 推移와 함께 禮의 觀念으로서 規範화되었고 따라서 禮의 秩序에 依하여 規制되는 東洋的 儒教文化에 있어서의 獨特한 國際秩序의 한 形式을 意味하게 되었다. 이러한 事大字小의 國際關係를 韓半島와 大陸間의 사이에서 正式으로 設定하였던 것은 朝鮮朝의 成立을 契機로 하여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新王朝의 成立을 對外的으로 承認을 받어 그 權力基盤을 더욱 鞏固하고 또 그 承認을 通하여 大義名分을 對外的으로 宣揚시키고자 하는 當時의 權力엘리트들의 現實的인 動機가 숨어 있었음은勿論하고 正과邪華와 夷를 嚴別하려는 強한 春秋精神과 朱子學의 倫理的 名分論이 根底에 作用하고 있었을은 앞에서도 論及한 바와 같다.

事大字小의 國際關係는 禮敎의 秩序가 通用하는 「天下」안에서 明이라는 中原의 나라와 朝鮮이라는 近邦사이에 上, 下序次의 名分에 依하여 規制되는 關係이므로 어디까지나 法이나 힘이 아니고 名分과 義理에 依하여 規制되고 相互義務가前提로 되어있는 關係인 것이다.

即 朝鮮朝의 明에 對한 事大는 明으로부터 오는 字小라는 恩惠에 대한 義理의 表現이며 名分에 依하여 維持되는 禮의 秩序이었기에 上國인 明이 禮로서 字小를 다하지 않고 힘으로 支配를 強要하게 되었다면 朝鮮事大의 關係는 무너질 可能性을 内包하고 있는 것이며 同時に 明으로부터의 字小의 恩惠가 크면 클수록 事大의 意識은 더욱 強化될 수 있었던 것이다⁽²²⁾. 이렇듯 朝鮮朝의 對明 事大秩序는 武力에 依한一方의 從屬도 아니고 中原의 王德에 대한 自發的宗屬 또는 服屬을 意味하며 그것은 또 上國이 中原文化의 正統性을 確保하지 못하거나 禮의 秩序를 버거나 힘의 強制로 轉化될 때에는 언제나 해어질 수 있는 名分의 秩序이기도 했던 것이다.

第二章 朝鮮王朝의 統治體制

第一節 統治構造와 그 機能

(一) 中央官制의 再編成

李氏朝鮮王朝의 中央官制는 建國初에 수차의 变동이 있었으나 成宗十六年(1485)에 改定된 乙巳大典에 의하여 일단 完成된다. 이 乙巳大典이 바로 후세에 傳承된 經國大典으로 알리어

나는 中原의 나라와 朝鮮이라는 近邦사이에 上下序次의 名分에 依하여 規制되는 國際關係이기 위한 것이다. (李用熙著 國際政治學上 博英社参考)

(22) 鎮末에 明과의 鐵領衙問題로 強壓에 不服하고 討明의 征軍까지 일으켰던 史實은 前者の例요壬辰亂에 明軍의來援의 恩惠를 끌가지 못잊어 했던 史實은 後자의例이다.

지고 있는 것이다⁽¹⁾.

이제 經國大典에 의하여 官制의 大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王朝의 官僚機構는 크게 文官(東班) 武官(西班)으로 나누고 東西各班은 다시 内(京 또는 中央) 外(地方)의 職으로 나누었으며 全官吏는 正一品에서 從九品에 이르는 18品階로 나누어져 있고 官銜들은 그長의 品階에 따라 高下의 階級이 定해져 있었다.

李朝의 中央官制는 法制上으로 最高政策에 關與하는 機關으로서 議政府가 있고 그 監督下에 六曹가 있어 行政을 分掌하고 있다. 그리고 重要한 中央官制인 軍事組織으로서 三軍府重房 兵曹 및 五衙都總府等이 있는데 이들의 編制와 權限은 여러번의 變革을 겪었다. 이와 같은 一般行政과 中央官制以外로 特殊中央官制로서 二種이 있으니 그 하나는 議政府와 各曹의 指揮監督을 받지 않고 國王에 直屬하는 承政院 司憲府 司諫院 弘文館(藝文館, 春秋館)義禁府等이며 또 하나는 議政府와 各曹의 指揮監督을 받는 漢城府 開城府 水原府 및 江華府等⁽²⁾이 그것이다.

前記한 二種과 特殊 中央官制 以外로 議政府와 各曹에 隸屬하지 않고 國王에게 直屬하는 또 하나의 特殊 京官職으로서 王族 또는 功臣等 國王에 至近한 關聯者들로構成된 官府가 있으며 宗親府 忠勤府 儀賓府 敦寧府, 內命婦 內侍府等이 그것이다. 宗親府는 宗室諸君의 官府이고 忠勤府는 親功臣을 위한 官府이며 儀賓府는 公主와 翁主에게 장가든 者들을 위한 官府이고 (以上二品衙門) 또한 敦寧府(太宗 14年設置)는 보다 遠疎한 王親 및 外戚으로서 一定한 範圍에 屢한 者들을 위한 官府로서 이것은 初期에 王子亂을 겪은 뒤 功臣과 王親 儀賓 그리고 外戚等의 政治的 關與를 制限할 目的으로 設定된 것이다.

한편 國王에 待側하여 日常에 私的인 影響을 주는 것에 內命婦와 內侍府가 있다.

即 大殿乳母 王妃母, 王女 王世子女 宗親의 妻 文武官의 妻로서 品階가 있는 이를 外命

(1) 建國初에 太祖는 高麗朝의 官制를 그대로 담습하였으나 麗末 政體의 紊亂을 改革하기 위하여 鄭道傳의 經濟文鑑(三峯集卷之五, 六 經濟文鑑別集 三峯集卷之十一, 十二)과 朝鮮經國大典(三峯集卷之七, 八)等이 편찬된 바 있었고 이것이 母體가 되어 太祖末年(1397)에는 經濟六典이 刊行되었다. 第二代 定宗 2年(1400)에 都評議使司를 議政府로 中樞院을 三軍府로 改廢하여 政事와 軍務를 分離시키는 一部改革이 있었으나 큰 變動은 없었다. 第三代 太宗朝에 이르러 비로소 國基가 穏固히 됨에 따라 官制의 一大改革이 企圖된 바 있다. 即, 우선 太宗一年(1401)에는 다시 門下府를 廢止하고 其一部는 議政府에 移管하고 다른 一部를 分掌케 하기 위하여 司諫院을 設置하였으며 다음 太宗 5年(1405)에 이르러 中央行政機構를 六典(吏, 戶, 禮, 兵, 刑, 工)로 分掌編成하는改革이 있자 이로써 議政府를 頂點으로하고 六曹를 基軸으로 하는 朝鮮王朝 中央官制의 輪廓이 確定된 것이다. 其後 또 若干의 改正이 있었다. 即 世祖朝에 이르러 經國大典刑典(1461) 同戶典(1462)의 頒行과 아울러 世祖 12年(1466)에 軍制改正이 있었고 뒤이어 成宗朝에 이르러 辛卯(1471), 甲午(1474) 乙巳(1485)等의 諸大典의 刊行으로서 官制의 完成을 보게 되는 것이다. 朝法典考,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 11年 2月 15日 發行 pp. 14-69, 法律行政論集 第六輯 高麗行政問題研究所 1964. 5. 李氏朝鮮行政研究의 文獻과 資料 洪以燦 pp. 29-39.

(2) 以上 四者的 監督은 本是 外官職이어야 하였으나 王都 舊都 또는 要塞地를 管轄하는 地方官廳이라 特히 内官職으로 하지 않고 京官職에 所屬시켜 議政府와 各曹의 指揮 監督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

婦라 하는 동시 宮中에서 奉職하는 女官들을 또한 品階에 따라 各種의 名稱으로 불리 이를 内命婦라 하였으며 正一品에서 順次로 從四品까지의 嫫(正一品) 貴人(從一品) 昭儀(正二品) 淑儀(從二品) 昭容(正三品) 淑容(從三品) 昭媛(正四品) 淑媛(從四品)은 실상은 모두 王의 副室(妾)이며 正五品 尚君, 尚儀, 以下從九品 奉鸞徵, 奉徵, 奏羽, 奏鸞宮에 이르는 者는 宮女로 각각 그 名稱이 表示하는바의 職務 그 가운데에서 王의 寵愛를 받고 王子를出生하는 경우에는 宮中에 勢力を 扶植하고 때로는 王位繼承에 關聯되어 宮廷에 紛糾를 일으키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内待府는 宦官의 府로서 大殿王妃殿 世子宮 嫫宮等에서 그 監膳, 使命 守門을 掃除 등을 맡은 것으로 그 人員數는 240名이며 그中に 59名이 從二品의 尚膳을 비롯한 官階를 가진 것이다. 内待府는 그 官制上 特殊한 位置때문에 자주 宮中의 勢力와 結託하며 宮廷의 空氣를 크게 左右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이들 王族 功臣 외威 및 至近者들은 一種의 名譽職官員이므로 國政과는 無關한 官府이었으나 대로는 政權에 關與하여 國政을 專橫하다 시피한 일이 있었다⁽³⁾.

以上 列舉한 中央의 여러 京官職의 成立과 그리고 그 構造와 機能上의 變遷및 展開過程은 王朝初創에 있어서의 主權의 性格乃至 그 移動에 關聯된 것이며 나아가서는 統治體制內에서 國王과 官人 또는 文人과 武人間의 權力關係의 推移를 뒷 받침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차례로 檢討하고자 한다.

(1) 太祖初의 官制

朝鮮王朝 開國初에는 高麗의 制度를 답습하고 점차로 改革을 加하여 太宗 5年(1405)에야 비로소 朝鮮의 官制가 그 輪廓을 잡게 되었다. 즉 太祖가 即位한 해(1392)에 發布된 中央官制에 의하면 中央의 最高의 政務는 都評議使司, 門下府, 中樞院, 三司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며 資務의 行政機關으로서 六曹가 있었다. 특히 軍機를 맡은 中樞府와는 별도로 元來 三軍都摠制府와 重房(重房會議에서는 軍事實務를 아는 堂上官들이 任命되어 軍機를 議論하였음)이 있었으나 太祖二年에 重房을 滅하고 三軍都摠府를 義興三軍府로 고쳐 軍事指揮系統을 確立한 것이다.⁽⁴⁾

(3) 朝鮮王朝는 血緣關係者를 土臺로 한 傳統的 統治體制인 만큼 王族(宗親, 王親) 및 王大妃, 王妃 王子 嫫의 同姓親과 그 异姓親 王女의 配偶者와 그 近親 그리고 功臣등을 優遇하여 이들을 王權의 一次의 인基盤로 삼았다. 經國大典卷之一吏典朝鮮總督府 中樞院版 昭和 9年 pp. 27-29. 韓國近世前期篇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2. pp. 148-151 參考.

(4) 高麗恭讓王 3年(1319)에 軍制를 改革하여 5軍을 滅하고 三軍都摠制府를 設置했을때當時 李成桂는 都摠制使가 되어中外의 諸軍事를 統率한 것이나 王位에 即位함과 同時に 새롭히 官制를 改訂하여 都摠府를 滅하고 義興親軍衛를 이르켜 軍事를 掌理하였으며 中樞院으로 하여금 軍機軍械宿衛警備差攝等의 事務를 管掌케 한 것이다. 그러나 兵馬의 權을 掌握하고 即位한 李太祖는 兵馬의 權은 國王에게 專屬한다고 固執하고 太祖 2年(1393) 諸將의 私兵을 滅하여 府兵을 두고 義興親軍衛를 改正하여 義興三軍府로 하여 軍機 軍政을 掌理하였기 때문에 中樞院은 有名

太祖初期의 官制는 門下府를 行政官廳의 首班으로 삼고 만반의 서정 통활은 모두 門下府에서 맡아 했으며 上奏 傳旨 및 官吏의 任免으로부터 百官의 諫諍과 地方官의 細細한 行政事務에 이르기 까지 여기서 이를 분장하였다. 따라서 六曹는 다른 官廳과 같이 門下府의 命을 받아 그 旣管事務를 執行하는데 不過하였고 政務에 關與할 수가 없었다.

한편 三司는 財政과 出納 및 會計監督을 分掌하였다. 그리고 政務의 會議機關인 都評議使司의 沿革과 幾能上의 變動은 政治權力의 歷史的 推移를 示唆하는 것이었다. 무릇 都評議使司는 後의 議政府의 前身으로서 그것이 高麗의 從前의 都兵馬使로 부터 改稱된 것은 高麗忠烈王五年(1271)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都評議使司는 本質적으로는 高麗官制의 延長이라는 하지만 同時 李朝에로의 革命에 따라 整備 改正된 것이라 하겠다.

李朝建國初期에 있어서 都評議使司는 명실상부한 國政의 議政機關이었으며 모든 政務는 都評議使司에서 決議하고 王命으로 行하는 것이므로 國王은 거의 實權이 없는 存在에 不過하였으며⁽⁵⁾ 다만 兵權만이 實質上 王에게 專屬되어 있었다. 따라서 王의 權力은 微弱하여 그 獨斷專行이 许容되지 않았으며 모든 國政은 都評議使司와 協議하고 門下府를 通하여 行해진 것이다.

그리고 太祖 即位當時의 都評議使司의 主體는 門下府와 三司와 中樞院 三者の二品以上の重臣들로서 構成된 것이며 그 構成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이 政治 軍事의 兩者の統一體를 이룬 同時에 付屬衙門의 上級者가 그 構成員으로 參與하여 重要한 役割을 하였다.

判事二員……侍中을 兼함 門下府의 左右侍中 } 政治
同判事十一員…門下府, 三司 正二品以上兼賛

無實의 機關에 不過하였다. 그밖에 重要한 官制로서는 司憲府 咨行御史 藝文春秋館 尚瑞司(符印司, 徐拜), 官僚任免(銓註)等 分掌) 經筵官 世子官屬 閔城府 成均館 閣間(朝會, 儀禮 分掌) 義興親軍, 十衛 都府外 等이 있었다. (韓國史 前揭書 pp. 152, 153, 156. 朝鮮史 講座 分類史 朝鮮史學會 編生武龜述 中央及 地方制度 沿革史 pp. 111-126).

- (5) 李成桂는 1392년 7월 17일 即位하고 同月 28일 教書를 내려 施政方針을 宣言하였다. 但該宣言은當時의 文臣謀士 鄭道傳에 依하여 起草된 것으로 太祖實錄卷一의 43에 記錄된 宣言書속에 「儀章法則 一依 前朝故事」란 것은 鄭道傳, 趙淡等이 理想으로 삼았던 三代及周의 制度를 基礎로 하고 唐制에 变通하여 制定하고 慎讓王 때 實施된 儀章法則를 意味하는 것으로 該制度에 있어서는 國王은 虛器에 不過하였다. (青丘學叢第5號 青丘學會 昭和6年 麻生武龜 李朝の 建國と政權の 推移 pp. 119-120) 무릇 이와 같은 一連의 革命工作과 成憲過程은 本來 儒學者の 計劃으로서 高麗朝의 佛教全盛裡에 그 教義에 依하여 形成된 社會組織을 儒教化하여 그理想으로 하는 三代及周의 制度를 實施하고자 한 것이며 이를 實施하는데 있어서 우선 武力이 必要하였기 때문에當時 軍兵을 統率한 李成桂를 응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即 이 革命은 이들 儒學者の 重臣에 依하여 遂行된 것으로서 太祖는 그 추대에 依하여 王位에 即位한데 不過하다. 그리고 李朝의 建國은 都評議使司의 決議로서 이를워 지고 太祖는 그 추대에 依하여 王位에 올랐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法規條例는 모두 都評議使司의 合議를 거쳐 成立되어 王命으로서 이를 執行하려는 이른바 儒教의 重臣과 國王의 合成意力이 建國精神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하여 이當時 決議된 法規條例(例)은 例(例)은 國經六典(國經六典)은 建國의 基礎가 되고 永世不動의 成憲이 된 것이며 其後 여러 차례의 法典의 修補이 있었지만 이 太祖의 成憲은 李祖 500年을 通하여 不動의 祖宗의 成憲原則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李朝는 훌륭한 法治國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李朝法典考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11年 pp. 4ff).

使一員	判中樞院事兼合	軍事
副使十五員	中樞院使以下 中樞院學士以上兼合	
檢詳二員	檢詳條例司를 設置	附屬衙門
經歷一員 都事一員)經歷事를 設置	

여기서 都評議使司에 附屬된 行政機關으로서 經歷司와 檢詳條例司가 있었으며 經歷司는 金穀의 出納과 事件의 記錄과 調查 및 公文處理를 分掌하는 閘門으로서 經歷 및 都事 각 一員을 두어 他官에서 兼職케하고 또한 六房을 두어 錄事各一員과 典吏六員을 두었다. 그리고 檢詳條例司는 法制業務를 分掌하는 閘門으로서 檢詳二員을 두어 他官에서 兼職케 하고 錄事三員을 두었던 것이다⁽⁶⁾.

李朝建國初에 都評議使司에 줄지어 앉아 政務를 論議한 者는 儒學者들이었으며 그中에서 도 많은 사람들이 法制的思想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中代表的 人物로서 鄭道傳과 趙浚을 들을 수 있겠다. 鄭道傳은 朝鮮經國典을 만들어 國王에게 바치고(太祖 3) 法典편찬의 必要를 主張하는 同時 趙浚과 더불어 檢詳條例司의 職位에 있으면서 法典을 심회하고 또 經濟六典을 편찬하여 위에는 國王으로 부터 밑의 賦民에 이르기 까지 遵守할 法典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儒教的 文治派에 依하여 法治主義가 強調되는 가운데 都評議使司의 權限은 強張된 것이며 이와 反對로 王權은 더욱 축소되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같은 王權에 대한 위협에 直面하여 그것을 강고히 하려는 反撥의鬪爭이 展開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世子冊立을 둘러싼 一連의 政亂이며 나아가서는 官制改革의 展開이었다.

(2) 官制改革：前記한 바와같이 都評議使司의 構成이 主로 門下府와 中樞院 그리고 三司의 職員으로 組織된 것이다 마치 中樞院의 事務가 義興三軍府로 옮겨짐을 契機로 政務의 行政의 實權이 共히 門下府로 集中되게 되었으니 이러한 權力의 一部에의 集中을 꺼려하고 分權화의 必要性이 論議되게 이른 것이다. 마치 定宗 2年(1400)에 根本的인 第一次官制改革을 施行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義興三軍府가 軍機軍政의 實權을 가짐에 따라 中樞院의 軍事權은 자연 유명 무질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三軍府에 統合하고 아울러 中樞府의 王命出納의 行政機能은 承政院-^{신설}하여 이에 맡기고 官制外의 三軍府에 中樞院 祿官制에 依하여 官職을 正式으로 編制나마로서 軍機에 關한 機能을 官制內의 三軍府로 一元化하게 하였다. 무릇 三軍이라 함은 中軍 左軍 右軍을 말하는 것으로서 三軍의 밑에 所謂十衛가 分屬하였다. 그리고 이 三軍府의 上層部는 從前의 官制와 다름없이 文官의 重臣들이었다. 둘째로 都評議使司를 議政府로 改定하고 同時に 三軍府의 職을 가진 者는 오로지 三軍에만 從事하여 議政府에 차리를

(6) 李朝法典考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 11 年 p. 14 朝鮮學報 第 9 輯 朝鮮學會 朝鮮議政府考 末松保和 天理大出版部 昭和 31 年 pp. 6-8.

갖지 못하게 히므로서 政府와 軍府의 分離을 피하였다.

以上과 같은 第一次官制改革에는 다음과 같은 事實이 内在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都評議使司가 改稱하여 議政府가 새로 成立한 것은 當時의 中樞院의 無力化와 密接한 關係가 있었다. 事實 中樞院의 大量은 高位官員은 都評議使司에 參與했지만 軍機에 關한 實權은 이미 義興三軍府로 옮겨져 無力化하였기 때문에 이를 廢止하고 그 祿官을 機能에 따라 三軍府와 承政院으로 二分하여 再編한 것이며 여기서 從來 官制外이 三軍府가 中樞院에 가름하여 官制內에 編入된 것은 곧 軍部의 確立을 意味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곧 既存의 私兵을 廢止하여 國軍으로 改編한 重要한 事實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三軍府는 官制內의 職制가 된 同時에 三軍府에 職을 가진者は 議政府에 參與하지 못하고 都摠制以下の 官員은 議政府의 職을 兼任하지 못하게 限制하므로서⁽⁷⁾ 三軍府의 獨立과 特히 政府와 軍府의 分離를 피한 것이다. 또 都評議使司란 官職名은 本來 門下府와 三司와 中樞府와의 三者上層부의 合議機關에 알맞은 名稱이었던바 이제 中樞院이 三軍府로 移管되어 그것이 合議에 參與하지 못하게 될 以上 都評議使司란 職名은 이미 不適合한 것이 되었으며 故로 이를 議政府라고 改名하게 이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 議政府를 構成하는 主體인 門下府의 宰臣은 本來 庶政을 統括하는 (百揆庶政) 것으로 規定되어 있는바 議政府와 門下府는 機能上 종복을 免치 못하였다. 따라서 中樞府가 廢止된지 一年 三個月만인 太宗元年 7月에 第二次의 官制改革이 斷行되었다. 이 改革은 첫 째로 門下府를 廢하여 그 職員을, 議政府에 移管하고 (同年 7月) 둘째로 門下府의 諫諍의 機能은 司諫院을 新設하여 이를 分掌케 하였다⁽⁸⁾. 셋째로 三司를 司平府로 改稱하고 네째로 藝文春秋館을 二分하여 그 中制撰의 機能은 藝文館 國史記錄의 機能은 春秋館으로 하여금 擔當케 하였으며 다섯째로 中樞府의 廢止에서 不便을 느끼 義興三軍府를 承樞府로 改稱하여 여기서 王命出納과 軍機의 두 機能을 掌握하는 前日의 體制로 되돌아가고 또 그 都承旨와 承旨를 代言으로 하여 王에 直屬시켰다. 그러나 이때에 廢止된 三軍府는 二年후인 太宗 3年에 三軍都摠府로 復活되었다. 太宗元年에 단행된 第二次官制改革은 대체로 전기 한바와 같

(7) 「職掌三軍者 專仕三軍 不得坐議政府」「都摠制以下 不得兼議政府」定宗實錄卷四。

(8) 門下府가 管掌하는 職能은 太祖元年の 官制에 依하면 ①宰臣은 「百揆庶務」②郎舍는 「獻納·諫諍·駁正·差除·受發敎旨·通進啓牘等事」(太祖實錄元年七月)이었다. 그러나 太宗元年の 改革으로 門下府가 廢止되자 門下府의 郎舍를 司諫院으로 改稱하여 獨立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議政府의 職務로서는 「百揆庶務」만이 남은 셈이다. 이 議政府의 새로운 職能에 關하여 確實한 規定은 나타나지 않으나 「議政府總百官」이란 規定이 있었고 (太宗實錄 卷五 305面 三年六月庚戌의 條) 具體的礼 것으로서 重要的 것은 太宗四年十月에決定된立法의 權이었다. 이 史實에 關하여 太宗實錄 卷八 495面에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議政府計, 凡立新法, 必報本府, 擬議受判施行, 從之, 其書曰, 凡所以立法者, 必傳之萬歲而無弊, 然後可以爲法也, 各司員吏各執所見, 喜作新法, 不惟當該官吏難於遵守, 弊復多前, 今後各司凡可立新法之事, 必報政府, 政府以可行事件, 擬議受判施行, 勿令更出依貼。(朝鮮學報第九輯 昭和31年 朝鮮學會 天理大學出版部 朝鮮議政府考 末松保和 p. 12 參考)

거니와 (그外로도 苛干의 官名改稱이 있었음) 其後 太宗二年에는 三軍總制府를 관장하는 職員의 交迭錄을 兵曹에 이관하였고 太宗五年(1405)에 이르러 第三次로 官制의 大規模改革이었다.

무릇 太宗元年에 第二次官制改革의 動機는 權力集中의 錐解와 財政難을 타개 하려는데 있었구나. 本改革에서는 實質上 門下府를 議政府로 改稱한 것이 되었고 門下府의 機能中 諫諍의 機能은 司諫院을 新設하여 擔當케 하였고 또 議政府의 職能은 太宗四年(1404)에 立法權까지를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軍務와 政務를 區別하고 軍務는 國王에게 專屬시켜 王室의 警護 地方의 安寧 및 邊防의 任務를 담당케 하여 內政에의 간섭을 못하게 한것이며 그리고 宗親으로 하여금 政務에 관여시키지 않은 方針을 정한 것이다.

太宗 5年(1405)에 實施된 第三次 官制改革은 朝鮮官制의 윤곽을 確定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로 司平府를 廢하고 그 事務를 戶曹에 이관하고 둘째로 承樞府를 廢하고 그 事務를 兵曹에 移管하고 셋째로 衙瑞司에서 그 東西班의 銮注(官僚任免)의 機能을 떼어吏曹와 兵曹。 移管함으로서 兩曹로 하여금 文武官의 人事行政의 責任을 맡게 하고 넷째로 議政府의 庶務는 機能別로 六曹(吏, 戶, 禮, 兵, 刑, 工의 六曹)에 分割 编入시키고 前例가 있는 事務는 모두 六曹에서 決定되어 議政府에 올리지 않고 다섯째로 이와같이 六曹의 權限이 擴張됨에 따라 從來는 단지 執行機關에 不過했던 六曹가 行政長官의 地位를 갖게 되었고 따라서 從來官制에서는 각曹에 正三品의 典書二人을 最高의 職員으로 한 것이나, 여기서 새롭히 각曹의 長으로서 秩正二品의 判書一員을 두는 동시에 從來의 典書와(正三) 議郎(正四)(各二人)은 廢止하고 대신 左右參議(正三各一員)를 두고 또한 正郎, 佐郎(各一員)을 增員하였다. 이와같은 俊員의 昇格과 더부리 이들을 朝廷의 政務에 直接 參與케 하는 한편 六曹에 각각 三個의 「司」를 두어 所管事務를 定하여 分掌케 하였다. 여섯째로 屬衙門의 制度를 세워 처음으로 六曹의 所屬官廳을 確定하여 大部分의 官衙를 각각 六曹에 分屬케 함으로서 行政事務는 六曹에서 處理케 하였다⁽⁹⁾.

以上太宗五年的 第三次官制改革은 다음과 같은 意義를 内包한 것이었다. 即 이 改革에 依하여 朝鮮의 中央官制가 開國後 14년만에 비로소 麾制를 脱皮하고 結果的으로 六曹의 成長과 拨充을 가져 왔으며 그것은 一面 李朝의 政治體制의 分化와 정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實質的으로는 國王와 六曹와의 直結이란 점에서 王權의 확장 또는 集權體制의 確立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他面 議政府가 所謂 庶務를 六曹에 이관하고 거의 行政事務에 關與할 수 있게 되었다는 事實은 곧 議政府를 구성하는 當時의 文治派 重臣宰相들의 權限의 緩少 또

(9) 朝鮮學報 第九輯 前揭書 p. 13.

韓國史 震檀學會 前揭書 pp. 145-147.

는 王權에 대한 詮釋을 시사하는 것이었다⁽¹⁰⁾.

(3) 議政府의 變遷 : 太宗 5년의 官制改革이 前記한 바와같은 政治的 意義를 内包하고 있는 以上 그것이 予조 일식에 正式化 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經國大典에서 中央官制가 確定 되기까지는 많은 變遷을 겪게 되는 것이었다.

우선 前記한 六曹의 權限확충개혁은 그후 太宗 8年(1408)과 同 13年 및 太宗 14년의 改革을 通하여 비로소 一段階지위지는 것이다. 즉 太宗 8年正月에 河峴의 建議에 의하여 議政府의 庶務를 六曹에 이관하고 그 行政權을 박탈하며 太宗 13年에는 文官이 武官을 겸하는 法을 정하여 文臣을 억압하고 太宗 14年 4月에 이르러 國家의 重大事가 아니면 議政府를 거치지 않고 六曹로부터 直接 國王에게 상소하게 함으로서 議政府는 거의 空位가 되고 文武의 政務는 六曹에서 處理된 후 國王이 專決하게 이룬 것이다.

그러나 議政府의 權限의 復活의 傾向은 文治를 信奉하는 世宗代에 이르러 爽트고 特히 世宗 18年(1436)의 敎書에서 具體化되었으며 뒤이어 幼主 端宗이 即位하자(1453) 이 傾向은 더욱 顯著해졌다. 이로써 議政府를 構成하는 重臣들의 權力은 回復내지 伸長된 셈이며 더욱 이 幼主의 即位는 重臣들의 責任을 무겁게 하였다. 여기서 漸次 政治權力은 議政府의 領議政, 皇甫仁과 右議政 金宗瑞의 手中에 들어가게 되며 마침내 宗室의 首陽大君의 野心과 對立하게 이룬 것이다.

結局 首陽大君은 「쿠테타」成功에 의하여 王位에 即位(1455)하여 世祖가 異자 專制의 支配權을 確立하였기 때문에 다시 國王이 議政府를 無視하고 六曹를 直接支配하는 體制로 되돌아 가게 되었고 한편 王命의 出納을 관장하는 承政院의 役割이 增大되는 새로운 現象도 나타났다. 그리고 之와 關聯하여 院相(承政院에 常勤하여 議事한 宰相)制가 새로 나타났음을 注目할만한 事實이었다. 元來 院相은 承政院의 正規의 職員은 아니었으나 王과 六曹와의 사이에서 從前의 議政府와 같은 役割을 分擔하는 機關이 政治的으로 必要했기 때문에 臨時의 또는 非正式的으로 생긴 制度이었다. 마치 世祖 14年(1468)에 申叔舟等을 院相으로 하여 庶務를 議決케 했고 뒤이어 睿宗이 即位(1469)한 후에도 申叔舟, 韓明澮等 重臣들을 院相으로 하여 庶務를 議決케 하는 慣例가 留下되자 院相制는 바로 正式化되어 法制上 官制化되게 이르렀을 뿐더러 그 權限은 前代의 議政府 諸員의 權限과 比等한 것으로 發展했던 것이다.

마치 睿宗이 일찌기 돌아 가지고 어린 成宗이 即位(1470)하자 院相制는 固定되게 이르렀다 特히 그 制度는 力主를 補佐하는 常例的 機關으로 간주되게 이룬 것이다. 成宗 7年(1476)에

(10)當時의 重臣宰相으로서는 領議政府事 趙浚 議政府 左右政丞 河峴, 李英茂 議政府 賛成事 權近 議政府事 李叔蕃 吏曹判書 李稷 兵曹判書 南在 戶曹判書 李室 刑曹判書 柳亮 禮曹判書 李文和 工曹判書 崔鉉 同副代言 孟思誠 等으로서 其中 文治派에 屬하는 趙浚 權近 李稷 南在 等은 거의 王權黨에 屬한하여 다만 儒學의 勤輿과 其普及에 注力하고 後日의 再起를 期한 것이다. (青丘學叢 第五號 青丘學會 昭和 6年 李朝 建國과 政權의 推移(麻生) pp. 126-127).

王이 成年에 達하여 院相制도 廢止된 것이나 그代身 議政府의 權限을 復活하려는 運動이 즐기자게 展開된다. 마치 復活論이 대두한 그로부터 40年後인 中宗 11年(1516)에 이르러 드디어 議政府 署事의 復活은 實現된 것이었다.

무릇 議政府의 署事는 이른바 議政府가 實質的으로 王과 六曹와의 中間에 介在 또는 介在하여 最高政策決定에 參여하는 統治方式에 關한 것으로서 그것은 朝鮮王朝의 政治形態에 있어 根本的인 問題인 것이다. 그러나 이 問題가 아직 解決을 보지 못한채 文宗과 端宗을 거쳐 世祖朝에 이르러(1451~1468) 具體化되어 法制的으로 經國大典으로서 편수 發布된 것이다.⁽¹¹⁾ 後에 署事復活이 實現된 때에도 大典에는 하등의 改變도 가하지 않았다. 즉 議政府制는 實質的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에 定着되지 못하였지만 形式的으로만 固定된 性이 되었다. 事實은 經國大典에서의 議政府의 職能은 形式的이고 抽象的으로 規定되었기 때문에 議政府가 가장 抑壓되었던 時代에서도 그것이 通用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李氏朝鮮의 法制 經國大典은 議政府의 形式的 機能의 規定에 그쳤을 뿐 實際的機能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을 비단 議政府에만 限한 것이 아니고 어느 程度까지 朝鮮王朝의 다른 諸官制乃至 諸機構에 도 해당하는 事實이었다. 經國大典이 實施된(成宗 2年 1471) 以後 數次에 걸친 개수보정이 있었지만 原典으로서 李朝를 通하여 그 生命을 지속할 수 있었던 理由도 그 形式性에 있었다는 할 수 있겠다.

그동안의 主要한 機關의 變遷을 圖示하면 다음表와 같다.

(二) 經國大典의 中央統治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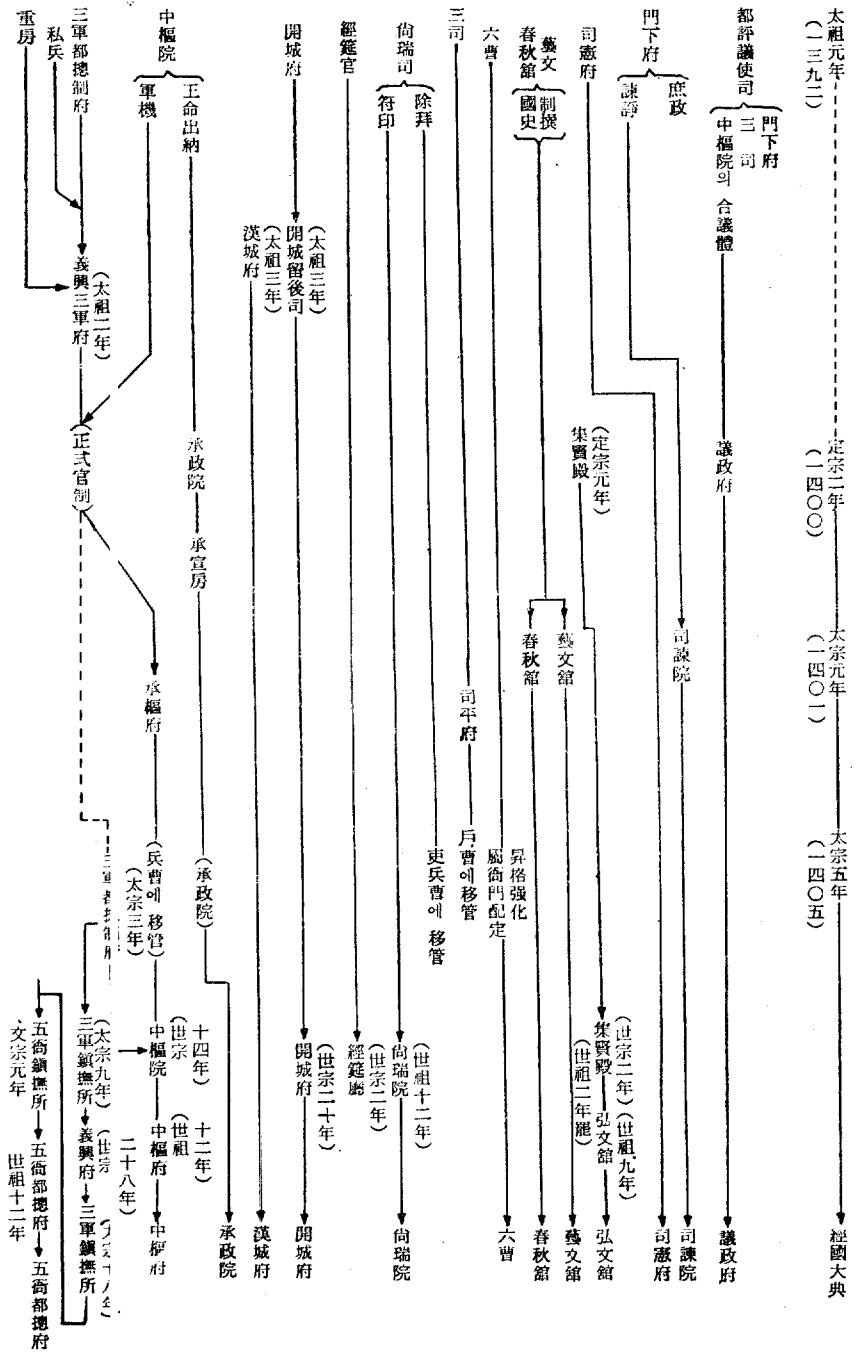
經國大典에 規定된 主要한 中央政治機構는 다음과 같다.

(1) 議政府

議政府는 百官을 統率하고 庶政을 公平하게 하며 陰陽을 順理롭게 하고 國土를 整理하는

(11) 法學論纂一京城帝國大學 法文學會 第一部 論集 第五冊 昭和7年 刀江書院 經濟六典について (花村美樹) p. 22.

經國大典의 편찬에 있어 特히 世祖가 이를 積極적으로 推進한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가 있었다. 即 死六臣이 上王의 復位를 圖謀하여 誅戮되자 世祖는 集賢殿을 없애고 文治派 重臣을 彙聚함으로서 王權의 基礎를 確固히 하자 하였다. 그러나 北方에서는 留後所와 連絡하여 李氏를 打倒하려는 李施愛의 亂이 일어나고 南方 忠州에서는 留鄉所에 據點을 두고 郡守에게 反抗하였기 때문에 地方團體인 留鄉所도 全廢하였다. 世祖는 이와같은 情狀을 감안하여 李朝의 基業을 強固히 할 必要를 통감하고 武로서 爭取하고 文으로서 나스리는 方策을 考案하여 太祖以來의 法規條例 受數를 統一하여 一大法典을 편찬할目的으로 六典修撰所를 設置 重臣들로 하여금 그 편찬에 종사케 하였다. 그리고 世祖는 親히 監修의 任務를 맡았으며 同 4年(1458)에는 六典詳定官을 後殿에 集合시켜 각者が 담당할 典을 일일이 親閱하여 筆削을 加하고 다시 同 13年 6月에는 領議政以下 諸宗親相宰를 모아 聞議하고 각者の 所見을 가지고 逐條駁議論定 하였으며 그 12月에는 戸典 刑典의 審查를 끝내고 經國大典이라 呼稱하여 이를 同 14年에 施行하였다. 經國大典은 其後數次의 改撰補足을 겪어 비로서 法制로서 確立되었던바 世祖는 이를 祖宗의 成憲으로서 永世遵守할 法典으로 삼고 위는 王室로부터 賦民에 이르기까지 이를 遵守하여 輕率이 變更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李朝 500年的 王朝은 維持될 수 있었던 것이다. 此後 모든 政務는 諸法典에 依據하여 施行되고 政權推移의 狀況도 또한 一變하여 成憲에 準據하게 되었다.



職責을 맡는 最高機關으로서 領議政(正一) 左右議政(正一)各 一員의 三大臣(政丞三公)과 左右贊府(從一) 左右參贊(正二) 各一員으로 構成하며 그밀에 屬僚로서 舍人(正四)二員 檢詳(正五) 一員 司錄(正八)二員等을 두고 있으며 特히 堂下官은 모두 文官을 任用하고 舍人에 缺員이 있을때는 檢詳을 在職期間을 따지지 아니하고 昇進시킨다⁽¹²⁾.

議政府의 機能과 變遷에 關해서 앞에서도 論及한 바와같이 中宗 十一年(1516)에 있어서 그 署事가 復活로서 一段落이 지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其後 오랫동안 署事를 實施하였지만 最高政務機關으로서의 實質的인 役割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위에 署事가 復活되었을때는 다시 朝鮮이 非常時的 環境에 놓이게 되어 갈 무렵이므로 官制外의 새로운 非常態勢의 權力機構가 構成되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즉 中宗代에 倭寇와 女眞의 侵入等나라 변두리에서 긴장상태가 일어 났기 때문에 이러한 邊事에 밝은 이른바 「知邊事」宰臣으로 하여금 그일을 전담케 하던中中宗 12年(1517)경부터 「備邊事」(備局 또는 籌司)라는 이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시 明宗 10年(1555)에는 드디어 恒久的機關으로 正式 官制化되어 中外 軍國의 機務를 總領하였다⁽¹³⁾. 李朝 中期以後에는 軍國의 機務一切을 總領하고 兵權과 政權을 掌握하여 邊防 軍事는勿論 内治 外交 財政에 이르기 까지 關與하지 않은일이 없었고 一國의 重要政策決定에 參與하는 最高權力機構가 되었다. 따라서 名稱은 備邊司라 하지만 事實上은 議政府와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二. 構成을 보면 都提調(正一品)에는 前任과 現任의 議政이 兼하고 提調에는 定員없이 吏, 戶, 禮, 兵, 曹, 刑書, 等이 兼하고 軍務를 擔當하는 高位 武官을 兼職케 하는등 大體로 議政府와 六曹의 重要部分을 統合하고 뒤에 그 構成範圍가 더욱 擴大되었다. 이 備邊司의 制度는 때로는 議政府에로의 復歸가 主張되기는 하였지만 그대로 李朝末까지 存續되었으며 議政府로 法制上 李朝末까지 嚴存하였지만 그 實權은 備邊司에 옮겨졌던 것이다. (備邊司의 機能과 變遷에 關해서는 다음 章 參照)

(2) 六 曹

玆國大典에 의하면 正二品衙門으로서 六曹를 吏, 戶, 禮, 兵, 刑, 工의 順序로 六區分하고 있다. 이것은 朝鮮王朝가 周의 六卿의 說에 의거하여 中央政府를 六部로 區分하여 政治를 하려는 主義에 따랐기 때문이라 하겠다⁽¹⁴⁾. 이와같이 官職을 天地春夏秋冬의 六官으로 分

12) 總百官, 平庶政, 理陰陽, 經邦國, 堂下官並用文官, 舍人有缺以檢詳不計仕數陞差.

經國大典 朝鮮總督府 中樞院版 昭和9年 10月 pp. 39-44.

朝鮮官職考敘 正德元年 辛卯之夏 崇古堂梓行 pp. 13-14. 여기서 堂下官이란 文官은 正三品 通訓大夫 以下 從九品 將仕郎까지 武官은 正三品 果毅將軍 以下 修義副尉까지 從九品官을 稱함.

13) 掌摠領中外軍國機務 (續大典卷之 1. 吏典, 京官職) 廟堂이라하면 議政府와 備邊司를 並稱하게 이르다. 備邊司의 設置年代와 起源에 關하여는 「本朝 明宗十年創置」(增補文獻備考 卷 216 職官考 3)이 定說이지만 中宗末年에 設置되었다는 說도 있다. 青丘學叢 第 23 號 昭和 11 年 2 月 發行 青丘學會 備邊司의 設置에 就한 pp. 23-81 參考.

14) 經國大典 序에 「自古制作之隆 莫如成周 周官以六卿配之天地四時, 六卿之職 闕一不可也」…「其

類하고 또한 政務를 吏, 戶, 禮, 兵, 刑, 工의 六部로 分類하는 六分法은 中央官制의 六曹 編制는 勿論 承政院과 地方官衙의 部署編制에 까지 六房制로서 널리 應用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六分法의 起源에關하여 最近의 研究를 參考하면 다음과 같다. 本來 天官은 長官을 大象宰라 하여 一般行政을 總轄하고 內外의 出納와 宮廷事務를 관장하였으며 地官은 長官을 大司徒라 하여 國民의 教育 및 農工商業을 다스리고 地方行政을 管理하였으며 春官은 大宗伯이라 하여 祭祀와 朝聘 및 會合等의 禮儀를 다스리고 夏官은 大司馬라 하여 軍事 및 國土事務를 擔當하였으며 秋官은 大司寇이라 하여 法令, 訴訟 및 國際事務를 取扱하고 각官은 大司空이라 하여 土木, 工作 및 그 資源을 管理하였다. 이러한 周禮의 六官制는 周, 奏, 漢時代에 걸쳐서 儒學者가 古代의 官制와 政治上의 理念을 綜合한 한 理想案으로서 構想한 것이지만 儒敎의 思想統制的 威力에 依하여 中國後世의 官制에 미친 影響은 매우 커으며 南北朝로부터 隋唐時代에 걸쳐 行政機關을 吏, 戶, 禮, 兵, 刑, 工의 六部로 設置하는 官制가 成立하였다.

高麗 및 李朝에 있던 六曹의 官制는 實로 이러한 背景을 가진 것으로서 吏曹를 天官, 戶曹를 地官이라고 하였듯이 각曹의 別名으로 天地四時의 각官을 稱한 것이다.

六曹에는 각각 刑書(正二) 參判(從二) 參議(正三品) 兵曹에는 正三品의 參知一員을 더둔다.)各一員이 있어 이를 三堂上이라 하며 屬僚로는 正郎(正五) 佐郎(正六) 各三員(兵曹와 刑曹에는 각一員을 더둔다.)이 있어 이를 郎官이라 하며 또 그밖에 戶曹와 刑曹에는 從六品以下の 算學 律學의 技術官(文武科아닌 雜科의 出身으로서 雜職이라함) 各9員을 두었다. 그리고 각曹의 機能과 그 管下의 司는 다음과 같으며⁽¹⁵⁾ 각司는 堂下官들로 構成되어 각各事務를 分掌하였으며 각郎官이 主管하였다.

① 吏曹는 文選(官吏의 採用, 任用 및 奉給等에 關한 일) 勳封(封君, 封爵, 等에 關한 일) 및 考課의 人事行政을 掌理함

(I) 文選司(慈親, 文官, 雜職, 贈職의 任, 免俸祿의 紿與, 奴隸, 田宅의 下賜, 事務分

曰六典即周之六卿…」經國大典 中樞院版 前揭書 pp. 4-5. 即 周官의 六卿이란 天官 地官 春官 夏官 秋官 冬官 등 달하며 六典이라 할도 周禮 即 周의 官制의 六卿에 따른 것임. 即 周禮에 依하면一切의 政務은 그 官僚를 天, 地, 春, 夏, 秋, 冬의 六部에 配屬하고 이것을 官職本位로 볼 때에는 六官이라 이르고 法制本位로 볼 때에는 六典이라고 이른 것이다. 따라서 經濟六典이라 할 때에는 六官이라 이르고 法制本位로 볼 때에는 六典이라고 이른 것이다. 대典會通序에서도 「我朝之經濟六典, 經國大典, 遠倣周官制度之書 近尊大明會典六部……」

大典會通全 朝鮮古書刊行會 大正二年 p. 1 이와 같이 經國大典 以下의 諸法典은 周禮 理想의 國家로 보고 어 = 法典이고 六部分類法에 依據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周禮에는 六卿의 職의 各典의 名目를 治典 教典 禮典 政典 刑典 事典(周禮卷第二)라 하였고 鄭道傳의 經國典도 周官六典의 次序에 따라 1. 名目를 治典 賦典 禮典 政典 犯典 工典이라 하였다. 그리고 高麗 公陽王元年以後에는 六部를 吏曹 兵曹 戶曹 刑曹 禮曹 工曹(高麗史卷第 76)의 順序였으며 經濟六典의 編別도 經國大典의 不同과同一하였다. 것이라는 說이 있다. (法學論纂 京城帝國大學 法文學會 第一部 論集 第5冊 經濟六典について 花村美樹 pp. 20-22 參照 (崔南善著 朝鮮常識 制度編 서울東明社 1948. pp. 19-20 參照.

(15) 經國大典 中樞院版 前揭書 pp. 44 ff. 參考.

擔, 官員特別考試 改名 및 貪贓罪와 綱常犯者の 名簿管理等)

〔I〕 考勳司……(宗室의 主宰, 功臣의 封爵, 贈職 称號의 追贈, 祭官, 老人에게 官職, 授與 外命婦, 內命婦의 封爵 辭令, 鄉吏에게 辭令 紿與等)

〔II〕 考功司(文官의 功過, 勤慢, 休暇, 衙前의 勤務, 鄉吏子孫의 監督等)

② 戸曹는 戸口, 貢賦(貢物과 賦稅) 田糧(田地와 糧穀) 및 食貨(食料와 財貨)等의 財政을 管理함

〔I〕 版籍司(戶口, 土田, 租稅, 賦役, 貢獻, 農桑의 勵業 豐凶의 考驗 貧民에게 糧穀無償給 貸付回收等)

〔II〕 會計司(中央과 地方의 國庫貯蓄 歲入歲出會計, 公用物의 缺損, 監查 解由一前任者의 責任解除—等)

〔III〕 經費司(京都內 各官司의 支出, 調達 및 倭館에서 食糧支給等)

③ 禮曹는 禮樂, 祭祀, 宴享(國賓을 위하여 베푸는 宴會) 朝聘(朝見과 나라끼리 使臣交換) 學校 科學等의 敎化를 掌理함

〔I〕 稽制司(儀式, 制度, 朝會, 經筵 史官 學校 科學 官印 表文 箋文 王命文 天文 曆시 계 國忌 王의 死後의 稱號 喪葬等)

〔II〕 典享司(宴會, 祭祀, 祭物, 酒肴, 醫藥等)

〔III〕 典容司(使臣, 倭人, 野人の迎接 外方의 朝貢, 그들에 대한 宴會, 下賜品等)

④ 兵曹는 武選(武官의 選拔 任命 및 備給) 軍務, 儀衛(儀式에 參列시키는 護衛) 郵驛, 兵甲, 器仗, 門戶 管鑰等의 軍事를 掌理함.

〔I〕 武選司(武官, 軍士, 雜職의 任命 辭令, 備祿給與, 官員이나 將兵의 公務上의 過失을 附託하는 名簿管理 賦暇 및 武科科學)

〔II〕 乘輿司(王의 行次의 儀仗 王의 수레와 가마 补充隊 主要官衙에 下隸配置 功臣에의 從率配置)

〔III〕 武備司(軍籍, 馬籍, 兵器, 戰艦 軍士의 點呼 查閱, 武藝訓練, 宿衛, 城堡巡察, 要塞地守備, 防衛, 征討, 軍人의 派遣 交代 紿補, 賦暇 兵役免除 退官 高令者에 對한 免賦火炮, 烽火, 改火, 防火, 符信, 夜警標札等)

⑤ 刑曹는 法律, 詳讞(刑罰의 詳審決定) 詞訟, 奴隸等의 法律을 掌理함

〔I〕 詳覆司(死罪覆審)

〔II〕 考律司(法令의 調査 및 查察)

〔III〕 掌禁司(刑罰, 治獄, 禁令)

〔IV〕 掌隸司(奴隸의 帳簿 및 捕虜)

⑥ 工曹는 山澤, 工匠, 營繕, 陶冶等의 工營을 掌理함

- (I) 营造司(宮室 城池, 官司의 廳舍, 家屋 土木 工事 皮革 담요)
 - (II) 政治司(制作, 金銀珠玉, 銅鐵의 加工, 鑄造, 陶器, 기와 衡器)
 - (III) 山澤司(山林, 川澤, 나루터, 橋梁, 苑囿, 種苗 植木 炭, 木石材, 舷筆墨, 무쇠 漆器).
- (3) 六曹屬衙門

太宗五年에 沒定된 六曹屬衙門은 實務를 擔當하는 行政 또는 補助機關으로서 正三品衙門에는 「正」 正四品衙門에는 「守」 從五品衙門에는 「令」 을 각각 長으로 하고 대개는 그 上位에 堂上官으로서 都提調(正一) 提調(二品以上) 副提調(通政大夫인三品以上) 을 추대하였다. 가령 司饔院은 正三品衙門임으로 正一員(堂下官)을 長으로 하고 堂上官인 都提調, 提調 및 副提調등을 추대하고 있다. 經國大典에 나타난 主要 屬衙門을 들으면 다음과 같다.

① 吏曹屬衙門 ~忠翊府 一原從功臣의 官府이다.

內侍府一(前述)

尙瑞院~國王의 옥새와 王室의 官印, 符驗(夜間 城門出入時 携帶하는 標信 또는 中國가는 使臣이 携帶하는 信託證票等)馬牌(驛馬를 使用하게 하는 證票) 巡牌(巡將의 夜間 巡察證) 節鉞(觀察使, 留守, 大將等이 任地로 赴任할때 下賜하는 證票)等에 關한 事務를 관장하는 正三品衙門으로서 正一員(都承旨兼任) 判官(從五)一員 直長(從七)一員 副直長(正八)二員으로 構成된다.

宗簿寺~王室族譜의 編纂과 宗室의 非違를 紛察하는 任務를 관장하는 正三品衙門이다.

司饔院~王의 食事 와 闕내의 食事제 공등에 關한 事務를 관장하는 正三品衙門이다.

內需司~宮內用의 米穀, 布帛 및 雜品, 奴婢等에 關한 事務를 관장하는 正五品衙門이다.

掖庭署~雜職: 1 하나로서 王命의 傳達과 王이 使用하는 筆硯의 供給 宮闈내의 자물쇠와 열쇠: 1 管守 宮闈안뜰의 鋪設等에 關한 任務를 관장하는 正六品衙門이다.

忠勳府~前述 本文参照

② 戶曹屬衙門 ~內資寺一宮내의 米穀 국수 술 장 기름 풀 蔬菜 果實의 供給과 宮내의 宴會와 織造等에 關한 事務를 관장하는 正三品衙門이다.

內贍寺~各宮 各殿에 대한 供上物과 二品官以上에 대한 下賜酒 및 倭人 野人の 貢物과 織造等에 關한 事務를 관장한다.

司導寺~宮內倉庫의 米穀과 宮내用의 醬味의 物品供給에 關한 事務를 관장한다.

司贍寺~紙貨: 1 製造 및 外居奴婢의 貢物等에 關한 事務를 관장한다.

軍資監~軍需物品의 蓄積 貯藏에 關한 事務를 관장한다.

濟用監~進上: 1 する 織物 人蔘과 下賜하는 衣服 및 紗, 羅, 綾, 垫과 布貸와 그리고 級色으로 染色하는 것과 織物等의 關한 事務를 관장한다.

司監～魚物 肉類, 소금, 떨나무, 헷불等의 事務를 관장한다. (以上은 正三品衙門이다.)
豐儲倉～米穀, 豆類, 爪, 紙物等의 物品에 關한 事務를 관장하는 正四品衙門이다.

廣具倉～文武百官의 祿俸의 管理를 관장한다.

典膳司～從四品衙門으로서 中央과 地方의 舟艦을 관장한다.

平衙署～市場店舖를 監督하고 量衡을 公平히 하고 物價의 高低를 調節하는 等의 任務를 관
장한다.

司膳署～宮中의 술과 단술을 供給하는 事務를 관장한다.

義役庫～기름, 꿀, 黃蠟, 素物, 胡椒等의 物品을 관장하는 從五品 衙門이다.

長貢庫～草席, 油芭(종이나 布木에 기름을 먹인것) 紙物等의 物品을 관장한다.

司膳署～園圃와 蔬菜의 管理를 관장한다.

養賢庫～從六品衙門으로서 成均館, 儒生의 米穀 豆類의 物品을 供給하는 事務를 관장한다

五 部～管內의 里洞住民의 犯法事件 및 橋梁, 道路, 頒火(四季節에 불씨를 새로 만들어
서 宮殿과 各官司와 臣下들에게 나누어 주는것) 禁火 洞里出入門의 警戒 守直 家
垈의 測量 屍體의 檢按等의 事務를 관장한다. 中, 東, 南, 西, 北部에 設置한다.

(3) 禮曹屬衙門～弘文館(前述) 藝文館(前述)

成均館～儒學의 教育에 關한 事務를 관장하며 모두 文官을 任用한다.

同知事(從二) 以上은 他官司의 官員으로 兼任하고 知事(正二)가 主宰한다.

春秋館(前述)

承政院～事大交隣의 文書에 關한 事務를 관장하는 正三品衙門이다.

通禮院～禮節과 儀式에 關한 事務를 관장하는 正三品衙門이다.

奉禮寺～祭祀와 謂號의 議定에 關한 事務를 관장하는 正三品衙門이다.

校讎館～經典의 印刷, 頒布와 祭祀에 使用하는 香과 祝文, 印章, 篆刻(專門書體의 漢字를
새김)等의 事務를 管掌하는 正三品衙門이다.

內醫院～國王의 藥을 調製하는 任務를 관장한다.

禮賓院～賓客을 接待하는 宴會와 宗室重臣에 대한 음식제공等에 關한 事務를 관장하는 正
三品衙門이다.

掌樂院～音樂教育과 校閱의 事務를 관장한다.

觀象監～天文, 地理, 歷數, 占算, 測候, 刻漏(量時計)等에 關한 事務를 관장한다.

典醫監～醫藥의 宮內用의 供給과 下賜에 關한 事務를 관장한다.

司譯院～모든나라의 言語를 通譯하는 일을 관장한다. (以上 正三品衙門)

世子侍講院(從三品衙門)～王世子에게 經書와 史籍을 講義하여 올리며 道義를 바르게 啓導
하는 일을 관장한다.

宗學~宗室! 教育의 任務를 관장하는 正四品衙門이다.

昭格署~三清星辰(玉清, 上清, 太清의 三府星辰)에 對한 設擅 祭祀에 關한 事務를 관장하는 從五品衙門이다.

宗廟署~寢廟! 守衛를 관장한다.

社稷署~社稷: 壓의 清掃를 관장한다.

水庫~어를 貯藏하는 事務를 관장한다.

典牲署~祭祀! 祭物로 使用할 家蓄을 飼養하는 任務를 관장한다.

惠民署~醫藥! 庶民을 救療하는 任務를 관장한다.

圖書署~圖書! 關한 事務를 관장한다.

活人署~都城 内의 病人을 救療하는 任務를 관장한다.

歸厚署~棺, 部(刂)의 製造, 和賣(서로 合意에 依하여 賣買하는것)와 禮葬에 必要한 모든 것을 供給하는 事務를 관장한다.

四 學~管內 ! 儒生을 教育하는 任務를 관장한다. 中東南西에 각各 設置하고 成均館의 典籍 以下의 官員으로 兼任케 한다.

文昭殿 參奉(從九)

延恩殿 參奉(從九)

畿內諸陸殿 參奉(從九)

④ 刑曹屬衙門~掌隸院(前述)

典獄署(司獄:行政參照)

⑤ 兵曹屬衙門~五衛(軍事制參照)

訓練院

司僕院~車馬! 養馬에 關한 事務를 관장한다.

軍器寺~兵器 製造에 關한 事務를 관장한다.

典設司~帳幕을 供給하는 일을 관장한다.

世子翊衛司

義禁府(前註)

⑥ 工曹屬衙門~內衣院~國王의 衣服과 宮內의 財貨, 金銀, 實物等의 物品을 供給하는 事務를 관장한다.

繕工監~木匠, 石匠, 治匠等 工造 및 工作을 관장한다.

修城禁火司~宮城, 都城의 修築과 宮闕官衙의 廬舍

典涓司~宮闕을 清潔하게 하는 事務를 관장한다.

掌苑署~正二品衙門, 苑囿, 花草, 果實의 管理를 관장한다.

造紙署～表箋，咨文(中國朝廷과 往復하는 文書)等을 쓸때 使用할 종이 및 여러가지의 紙物을 製造하는 事務를 관장한다.

瓦 署～기와와 벽돌을 製造하는 事務를 관장한다.

(4) 承政院

經國大典에 의하면 承政院의 職能은 「掌出納王命」이다. 即 王命의 下達과 復命에 관한 秘書事務를 관장하며 國三의 側近에서 內外의 大小의 文書와 奏達이 모두 여기를 經由하게 되여 있다. 그 構成은 正三品 堂上으로 大承旨(都承旨, 左承旨, 右承旨, 左副承旨, 右副承旨, 同副承旨各一員)를 두어 각己 六房의 事務를 分擔케 하였다. 即 都承旨가 吏房 左承旨가 戶房 右承旨가 刑房 左副承旨가 兵房 右副承旨가 刑房 同副承旨가 工房을 擔當했다. 그리고 堂下官은 正七品의 注書二員과 事變假注書一員(正七)을 包含하여 書吏와 使令등 모두 文官을 任用하게 되 있다.

承政院은 王命의 出納을 관장하는 것을 任務로 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王命出納을 위하여 國王과 百官民庶와의 中間媒介役割을 하는데만 끝이지 아니하고 承旨는 入侍, 登筵하여 國政에 關한 스스로의 意見을 上達하여 政治的 影響力を 미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承史(承旨, 注書)가 직접 王命을 받아 이를 奉行하며 때로는 王에 陪行하는 일도 있다. 特히 六承旨는 모두 經筵參贊官과 春秋館修撰官을 兼하고 都承旨는 그위에 藝文館直提學과 尚瑞院正을 兼하는 等 國政을 위하여 要職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承史는 日記를 記錄하고 朝報를 記載頒布하는 任務도 가지고 있어 이러한 事項은 行政的 事務의 일도 있고 단순히 儀禮的 形式的의 일도 있는 것이다⁽¹⁶⁾.

(5) 司憲府는 從二品衙門으로서 現行의 政治를 論評하고 모든 官員을 監察하며 風俗을 바로잡고 억울한 일을 밝히며 외람한 行爲와 허위의 言動을 금하는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그 構成은 太宗元年에 이르러 從來의 高麗制를 改定하여 大司憲(從二) (臺長 또는 都憲) 執義(從三) 各一員 掌令(正四) 持平(正五) 各二員 監察(正六)二十四員으로 하였고⁽¹⁷⁾ 監察은 世祖以後 減員하여 文三, 武五, 蔭五의 十三員으로 하였다.

司憲府는 다음 (5)의 司諫院과 더부려 臺諫, 言官, 諫官, 南司등이라고도 하여 言論 監

(16) 承政院 改一 銀臺條例와 大典條例를 통하여 본 그 任務와 職制－全海宗 震檀學報 第二十五, 六, 七合併號 pp. 189-195 參照。

承政院은 銀臺 代言司 政院 喉院等의 別稱이 있으며 承政院의 機能을 具體적으로 記錄한 「承政院 日記」는 朝鮮王朝의 政治의 이면을 理解하고 研究하는데 貴重한 基本資料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17) 司憲府의 職責은 「掌論執時政, 紹察百官, 正風俗, 伸冤抑禁濫僞等事」 經國大典 中樞院版 前揭書 1 p. 49-50.

司憲府臺 憲府 臺官 相臺 柏臺 鳥臺 霜臺等으로 부르기도 함.

崔南善著, 朝鮮常識 制度篇 서울東明社 1948. pp. 28-30 參考.

察의 官衙로서 發言權이 매우 컸으며 國家政策과 人事에 깊이 關與하였고 宗親과 文武百官을 紛譁함은 물론 國王에 대해서도 언제나 極諫하는 것을 本領으로 삼었던 것이다. 그리고 司憲府는 官員의 紀綱을 監察하는 司法機能을 담당하였던 만큼 그 威風이 森嚴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監終는 비록 下位에 있지마는 第一線의 檢察을 담당하여 朝廷의 禮會 國庫의 出納 祭祀 科舉등 모든 일에 臨檢하여 犯則을 查察하였다.

(6) 司諫院은 正三品衙門으로서 國王에게 諫言하고 政事의 賈못을 論駁하는 職務를 관장하였으며 그 權成員으로는 大可諫(正三) 可諫(從三) 獻納(正五) 各一員과 正言(正六)二員을 두었다⁽¹⁸⁾.

前述한 바와 같이 可憲府와 司諫院은 共히 言論의 官으로서 國家의 重要政策에 과하여 기필코 王意를 움직이려 하는 경우에는 臺諫兩司가 합議한 意思로서 所謂「兩司合啓」를 하기도 하며 때로는 弘文館을 合하여 三司의 合啓까지 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合司伏閣」이라 하여 兩司 또는 三司의 官員이 일제히 闕門에 進伏하여 기어이 國王의 聽從을 強請하기 까지 하였다.

臺諫의 言論는 大體로 權威를 가진것이어서 所謂「從諫如流」란 것이 君主의 主要한 德目이 되며 한편 臺諫이 오래 所言이 없는 경우에는 職務에 疎忽하다 하여 견책파면'되는 일이 憲宗, 哲宗 때 자주 있었다.⁽¹⁹⁾

(7)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및 經筵—弘文館은 宮內의 經書와 史籍을 管理하고 文書를 處理하며 王의 諸問에 對備하는 任務를 管掌한다. 모두 文官을 任用하며 提學(從二)以上은 他官司의 官員으로 兼任한다. 弘文館의 官員은 모두 經筵의 官職을 兼한다. 그리고 副提學(正三)으로부터 副修撰(從六)까지의 官員은 또 知製敎(國王의 敎書를 製述하는 職責)의 官職을 兼任하였으며 直提學(正三)以下에 缺員이 있을 때에는 在職期限을 考慮하지 않고 順次대로 升進任用한다.

弘文館은 正三品衙門으로서 玉堂(또는 玉署瀛閣)의 別稱이 있으며 領事一品(議政兼任) 大提學(正二品), 提學(從一), 副提學(正三), 直提學(正三), 典翰(從三), 應敎(正四), 副應敎(從四)各一員 校理(正五), 副校理(從五), 修撰(正六), 副修撰(從六), 各二員 博士(正七), 著作(正八)各一員 正字(正九)二員等으로 構成되어 있다.

藝文館은 國策의 辭令의 製撰 即 文翰의 起草를 管掌하고 國王名義의 文字를 代作하는 官署이다.

모두 文官을 任用하되 提學以上은 他官司의 官員으로 兼任하되 하며 大提學(正二)은 藝文館을 主宰한다. 僉敎(正七)以下 官員의 初任時에는 議政府가 吏曹 弘文館 春秋館 및 本館斗

(18) 司諫院의 職責은 「掌諫諍, 論駁 並用文官」 經國大典 中樞院版 前揭書 pp. 52-53.

(19) 崔南善著 朝鮮常識 制度篇 서울東明社 1948. pp. 28-31.

함께 遷鑑, 左傳 및 諸史記中에서 講을 시켜 합격한 者를 任用하고 一年에 都目二員은 轉官 사김다.

藝文館은 正三品衙門으로서 翰林이라고 別稱하며 領事一員(領議政兼任) 大提學 提學 直提學(正三都承旨兼任) 應敎(正四弘文館의 直提學으로 부터 校理까지의 官員中에서 選擇하여 兼任케 함)等 各一員과 奉敎(正七) 待敎(正八)各二員 및 檢閱(正九)四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다음 春秋館은 正三品衙門으로서 當時의 政治狀況을 記錄하는 任務를 관장한다.

모두 他官司의 文官員을 兼任하되 修撰官(正三, 六承旨 副提學兼任)以下是 承政院과 弘文館의 副提學以下의 官員과 더부리 議政府의 舍人 檢詳인 官員 藝文館의 奉敎以下의 官員 및 侍講院의 堂下官二員과 司憲府의 執義以下의 官員 司諫院 承文院 宗籍寺 六曹의 堂下官 各一員으로 兼任한다. 그 職制를 보면 領事一員(領議政兼任) 監事(正一, 左右議政兼任)二員 知事(正二) 同知事(從二)各二員 修撰官(正三, 六承旨, 副提學)七員 그리고 前記한 他官司의 兼任官員의 各品에 따라 兼任하는 編修官(正三一從四) 記注官(正五一從五) 記事官(正六~正九) 等이 있다, 그리고 經筵은 國王에게 經書를 讀讀하고 論評하며 研究하는 任務를 관장한다. 역시 他官司의 文官員을 兼任하여 (但 領事 및 參贊官은 文官이 아니라도 또한 兼任함) 領事三員(議政兼任) 知事(正二)三員 同知事(從二) 三員 參贊官七員(承旨와 副提學이 兼任) 그리고 侍讀官(正四, 弘文館의 直提學, 副應敎 兼任 侍讀官(正五, 弘文館의 校理 副校理 兼任) 檢討官(正六 弘文館의 修撰 副修撰兼任) 나아가서는 弘文館의 博士 著作 正字가 각각 例兼하는 刊經(正七) 說經(正八) 및 典經(正九)等으로 構成된다⁽²⁰⁾.

前記한 四個의 諸官署는 모두 當代의 優秀한 文士들로 構成되었으며 時代에 따라 改廢離合이 있었던바 가령 世宗二年에 高麗制를 모방하여 宮中에 設置된 集賢殿은 古今의 經籍을 備置하고 人材를 擇하여 典故의 討論과 學術의 顧問에 應하게 하드니 世祖初에 六臣事件이 여기를 基盤으로 하여 일어났던 까닭에 世祖二年에 이를 廢하였다가 其後 同九年에 弘文館이 設置되어 集賢殿의 系統을 繼承하더니 다시 이를 中心으로 藝文館 春秋館 및 經筵等이併置되어 그 構成官員들은 서로 兼任이 많았다.

이와 같이 弘文館은 經筵과 春秋館을 構成하는 주요한 要素일 뿐더러 그 職務中에도 國王의 顧問에 應하는 條項이 있어 그 側近에서 朝政의 得失을 論陳하는 地位에 있었기 때문에 司憲府와 司諫院과 아울러서 言官의 三司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玉堂의 任務가 이와 같이 重要함으로 그 要員의 充員은 매우 慎重을 期하였다. 即 그 選任節次를 보면 文科의 榜目이 나게되면 우선 弘文館의 七品以下官이 모여 그 中에서 玉堂의 適任者를 抄出하여서 副提學以下 應敎, 校理, 修撰, 等의 上司가 第一次 圈點(姓名을 列書한 것에 一點式을 붙이는 選舉法)을 볼인다. (이를 弘文錄 또는 本館錄이라함) 이것을 다시 議政 贊成 參贊 吏曹 三堂士들

(20) 通國大典 前揭書 pp. 52-62.

이 모여서 第二次의 圈點을 붙이면 (이를 都堂錄이라함)이 結果를 上前에 奏聞하여 得點의 次例로 敎理 修翼 等에 任命하는 것이었다⁽²¹⁾.

한편 文翰을 맡은 弘文館과 藝文館의 어른인 提學과 大提學(兩館 大提學은 例兼이 原則임)은 文學人 乃至 文科出身 官員의 最高 榮譽로 삼았던 것이며 더욱 提學의 長인 大提學은 主文 또는 典文衡 이라고도 하여 一代 文翰界의 王座에 該當하고 本人이 辭退하기 까지는 거의 終身職으로 되어서 비록 官位가 領議政에 이를 지라도 이를 兼任하였다. 그리고 後任은 前任者가 대침하여 慎重하고 嚴格한 審議와 節次를 거쳐 決定하였다⁽²²⁾.

또한 藝文館의 下位官員인 奉敎(正七二員) 待敎(正八, 二員) 및 檢閱(正九四員)等을 普通翰林이라고 하되 이들의 그 實際의 職務는 春秋館 記事官으로서 이른바 文官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地位가 알았는데 比하면 매우 榮譽롭고 重要한 職責을 담당함으로 그들의 選任에 있어서는 가장 公正과 慎重을 期하도록 하여 그 選拔에 當하는 者는 焚香하여 天地에 誓告케 하는 儀式을 갖추기 까지 한 때가 있었다⁽²³⁾.

(8) 司法機關(司憲府, 義禁府, 刑曹, 漢城府, 掌隸院, 觀察使, 守令) : 李朝時代에 있어서는 高麗의 司法制度를 原則적으로 답습하여 根本的改革은 하지 않았으며 司法과 行政과의 사이에 分明한 盤別이 없었기 때문에 官制上의 權限이多少 중복을 면치 못하였지만 司法의 權限을 지닌 櫟闕은 이를 「法司」라 하며 들어보면 中央에서는 司憲府 義禁府 刑曹 漢城府 掌隸院 等이 있었으며 地方에서는 觀察使와 守令을 들을 수 있겠다. 其中 觀察使와 守令은 地方官職임으로 나음에 論하기로 하고 또 司憲府는前述한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나머지 中央官制인 義禁府 刑曹 漱城府 및 掌隸院 等에 關하여 論하고자 한다.

① 義禁府는 王命을 받들어 罪人을 심문하는 일을 관장하는 從一品 衙門으로서 堂上官四人은 다른 官員으로 兼任시키고 堂下官은 十員을 두며 判事(從一) 知事(正二) 同知事(從二) 經歷(從四) 및 都事(從五)等의 官職으로 構成된다⁽²⁴⁾.

(21) 崔南善著 朝鮮常識 制度篇 서울東明社 1948. p. 37.

(22) 大提學의 選任은 官界 及 文學界的 重大 事件이여서 明宗 以前에는 舊大提學이 그 後任을 代薦하는 慣例인데 이것을 中心議案으로 하여 文官會議(嘉善以上)가 召集되어 官中의 賀廳(會議所)에서 領議政 以下가 列席하여 그 代薦者 및 公議에 돌아가는 者를 合한 候補者三人에 대하여 燭商審議하고 마지막 圈點으로써 從多數 取決을 하였다. 그리고 宣祖以後에는 議政, 賛成, 參贊과 六曹長官 등이 모여서 圈選하였다. 특히 大提學 會圈에 前大提學이 쳐는 圈點은 衡圈이라하여 가장 注目되는一點이 되었다.

(崔南善著 朝鮮常識 制度篇 前揭書 p. 33).

(23) 天地에 誓告하여 가로내 「秉筆之任, 國家最重 諒非其人, 必有其殃」이니 이라하였으며 다음 三政丞과 賛成, 參贊 및 兩館提學과 吏曹堂上이 會坐하여 被薦者로 하여금 綱目 左傳 宋鑑 等書를 試講케 하여 席次를 定하여 充員하였다. 英祖十七年에는 黨論의 弊가 있다하여 이를 废하고 새로 曾經翰林三人이 모여서 文科榜 目中에서 候補를 抄出하여 그기 圈點을 쳐서 二人以上的 得點者를 挑擇하게 되었으며 所謂(翰林合圈)이 翰林이 備員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政府에서 이를 行하였다 (都堂會圈) 이와같이 하여 適任者로若干人을 選定하고 다시 其中の 數人만이 得點 席次대로 補任하였다. 翰林은 이만큼 榮光스럽든 것이었다. (崔南善 前揭書 p. 35.)

(24) 經國大典 前揭書 p. 44-48.

義禁府는 다음과 같은 犯罪에 對하여 國王이 親히 審判하거나 또는 委任한 官員으로 하여
금 審判케 한 것이다. 그 犯罪 内容은 다음과 같다.

王族의 犯罪 및 現官과 薦官으로서 官規를 문란케 한者.

國事犯, 謀逆罪 及 叛逆罪等에 關한 事件.

邪黨에 關하여 禁을 犯한 者.

常人의 王室及 王族에 對한 犯罪 事件.

司憲府가 彫劾한 犯罪 事件.

綱常에 關한 犯罪事件. (子孫의 父祖에 對한 罪, 奴婢의 奴主에 對한 罪等)⁽²⁵⁾

即 義禁府는 王旨를 받들어서만 開廷하여 前記한 바와같은 特殊犯罪를 處理하는 特別裁判
機關이었으며 成宗 12年(1481)부터는 時 原任朝官의 犯罪는 모두 이곳에서 下獄審問하는
것이 既定式이 되었다. 그리고 義禁府는 本來 高麗의 遺制(巡軍萬戶府, 司平巡衛府)를 擔當한
것으로 太宗二年(1402)에 巡衛府로 太宗三年에 義勇巡禁司로 太宗十四年(1414)에 義禁府로
차례로 그 名稱이 개정되어 온것이며 그 機能에 있어서는 本來 警察을 主機能으로 한 것이
있으나 端宗元年(1453)에 그 警察機能을 五衛에 넘기고 점차로前述한 바와같은 機能을 맡
게 된 것이다⁽²⁶⁾. 그리고 ② 刑曹는 앞서 그 職務와 職制에 關하여 말한 바 있거니와 이는
司法行政의 監督機關인 同時に 覆審裁判機關으로서 義禁府와 더불어 代表的인 司法機關이라
고 하였다.

③ 漢城府는 京都內의 戶籍(每3年 登錄하는 戶籍을 管理 保管) 市場斗 商店, 家屋, 田土
四山(周圍四方의 山) 道路 橋梁 개천과 下水溝 國財의 橫領 負債 爭鬭와 傷害 畫間巡察 檢屍
車輛等故로 因하여 亡失한 牛馬烙契(烙印으로 表示하는것)等의 事務를 관장하여 아울러 후
에는 全國의 土地家屋에 關한 訴訟과 墓地訴訟으로서 上訴된 事件等 司法機能의 一部를 處
理하던 判尹(正二)一員 左右尹(從二)各一員 庶尹(從四)一員 判官(從五)二員 參軍(正七)三員
등으로 構成되는 正二品衙門이다. 即 漢城府는 首都의 一般行政과 함께 警察事務를 관장하는
同時に 全國에 걸치는 一部 司法機能을 담당한다⁽²⁷⁾. 이리하여 義禁府 刑曹 및 漢城府를
「三法司」라고 稱하기도 하였다.

④ 掌隸院은 奴隸의 簿籍과 그 訴訟에 關한 事務를 관장하는 正三品衙門으로서 堂上官인
判決事(正三)一員과 司議(正五)三員 司評(正六)四員等으로 構成되었다. 本來 이 機關은 太
祖元年에 設置된 刑曹都官의 後身으로서 世祖十三年(1467)에 掌隸院으로 改稱되어 그뒤 英
祖四十年(1764)에 刑曹에 吸收되었다⁽²⁸⁾.

(25) 朝鮮 司法制度 沿革 朝鮮彙報大正六年一, 二, 三月號 所載 p. 6-7.

(26) 韓國史 近世 前期篇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pp. 256-257.

(27) 漢城府의 司法機能은 經國大典에 規定된 것이 아니고 後에 添加된 것이다. 韓國史 前揭書 p. 256

(28) 經國大典 前揭書 pp. 52-53.

(9) 司法行政

司法과 警察 以 監獄等의 事務는 各己 그 分掌官署가 設置되어 있었다. 即 監獄과 罪수에 關한 事務는 典獄署가⁽²⁹⁾ 있었고 警察事務를 為해서는 中央에는 捕盜廳과⁽³⁰⁾ 地方에는 鎮營 將이 兼하는 討捕使가 있었다. 李朝初期에는 警察機構가 專門化되지 않고 各司 各軍門別로 그 職權에 屬하는 違法者를 체포 구금한것이었다. 即 盗賊을 체포하는데도 각기 管轄區域을 지켜야 한다. 가령 中央의 捕盜大將이 觀察使管內의 盗賊을 체포하려면 國王의 命을 받아 해당 觀察使에게 通告한 然後가 아니면 이를 체포할 수가 없었다. 다만 直囚衛門이라하여 兵曹 刑曹 漢城府 司憲府 承政院 掌隸院 宗簿寺 觀察使 守令 그리고 後期에서는 備邊司 捕盜廳等의 諸官司는 罪人을 直接 拘禁할 수 있었으나 그의의 各司 및 各軍門은 刑曹로 通告한 뒤에 비로소 拘禁하도록 되어 있었다⁽³¹⁾. 그러나 實際로는 이러한 原則이 준수되지 못하고 各官司는 勿論하고 權勢있는 私門까지도 함부로 拘禁과 濫刑을 자행하여 社會的 폐단을 빚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犯罪人은 官吏만이 아니라 누구던지 포획할 수 있으며 逃亡犯人이나 족도를 잡은 者는 論賞하고 또 犯人을 알면서 官에게 알리지 않으면 處罰하였다. 風敎에 關한 犯罪와 浮浪人の 단속은 五家統의 制(後期에 設置)를 두어서 地方民에게 責任을 지웠고 風敎上의 犯罪中에서도 特히 綱常에 관한 犯罪(子가 父母를 죽이고 妻가 夫를 죽이고 奴가 主를 죽이고 官奴가 官長을 죽이는 等의 犯罪)는 重罪로서 極刑에 處했다. 이와 同時에 五家의 統長과 里長 鄉長 또는 坐首및 郡守를 連帶責任을 지워 處罰하고 또 그 邑號를 降等하는 수도 있었다. 이것은 犯罪를 隊防하려는 刑事政策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또한 다른 村落에 宿泊한 경우에는 本人의 住所 姓名 男女別 年齡 前住所 行先및 用務等을 記載하여 일일이 郡衙에 屆出하도록 하였으며 어떤 私人의 친척 知人이 그 知人의 집에 宿泊하더라도 必히 곧 이를 屆出하여야 하며 萬一 이를 계을리 한 경우에는 統長및 里長을 處罰하게 된 것이다.

(10) 中央의 軍事組織

朝鮮初의 軍事機構의 变遷에 關하여는前述한바와 같이 여러번 畏合이 있던 끝에 太宗三年에 高麗制인 三軍都摠制府가 復活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三軍都摠府는 三軍(中軍 左軍 右軍)에 各己 設置된 것으로 單一體가 아니었고 兵曹의 指揮下에 있었던 것으로서 太宗九年

麻生武龜: 朝鮮中央及地方制度 沿革史 朝鮮史 講座 分類史 朝鮮史學會 p. 124.

(29) 典獄署에는 提調一員(承旨가 兼任)과 主簿(從六)一員 奉事(從八)一員 參奉(從九)一員 等으로 構成되었.

(30) 捕盜廳은 之起源이 未詳하나 大體로 李朝中葉以後에 나타난治安 警察機關이 있다. 繢大典으로 부터 大典 會通까지를 通하여 左右捕廳에 각각 大將一員(從二 捕將) 從事官(從六)三員 部長四員 無料部長 二十六員 加設部長十二員으로 構成되었다. 捕盜部長은 捕盜軍官 또는 捕校라고도 別稱 하며 捕盜軍士(捕卒 左右 各 六十四員)와 郊外都掌軍士(三十七員)를 데리고 直接으로 秘密探查 와 捕捉에 從事한 것이다.

(31) 經歷大典 付揭書 刑典 囚禁 p. 470.

國王은 兵曹가 모두 儒臣들로서 軍事의 實務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또 兵權의 集權化를 避하기 為하여 三軍鎮撫所를 設置하여 兵曹에의 隸屬을 벌어났던 것이다. 그後 世宗元年(1419)에 『시』 軍務가 兵曹에 統合되었고 뒤이어 世宗 28年(1446)에는 三軍鎮撫所를 義興府로 改稱하고 亦是 軍務는 兵曹에 歸屬시켰다. 그러나 文宗元年(1451)에 이르러 三軍을 고쳐 五衛(義興, 龍驥, 虎賁, 忠佐, 忠武)를 만들고 五衛鎮撫所를 設置하여 이를 統制케 하니 李朝 軍制 編制의 基幹이 된 五衛의 制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其後 世祖十二年(1466)의 軍政改革으로 鎮撫所를 고쳐 五衛都摠府를 만들고 軍務를 專擔케 함으로서 兵曹로부터의 自律性을 갖도록 하였다.

① 五衛都摠府는 五衛의 軍務를 다스리는 正二品 衛門으로서 그 職員은 都摠管 副摠管 鎮撫 經歷 郡事等이며 大典會通에 依하면 그 官制는 都摠管五員(正二文武蔭兼) 副摠管五員(從二, 文武蔭兼) 經歷六員(從四武官) 都事六員(從五, 武官) 書吏十三人 使令二十人等으로 構成되며 其中 都摠管 副摠管의 十員은 他官으로서 兼任하되 一週년이면 更迭하였으며 堂下官에는 官吏로 之의 才能이 있고 事務에 熟練된 者를 取才試驗을 免除하고 兼用하였다. 그리고 처음에 五衛都摠府는 軍政最高機關으로 매우 重要한 機關이었으나 備邊司가 設置된 後에는 軍國의 權勢가 이리로 옮아가고 따라서 五衛의 制도 有名無實한 機關으로 化하였다 것이다⁽³²⁾.

다. 朝鮮王朝의 中央軍事組織으로서 經國大典(兵曹京官職)에 依하면 中樞府와 五衛都摠府 五衛 이외로 兼司僕 内禁衛 訓練院 그리고 世子 翎衛司 等이 있었다.

② 中樞府는 一定한 事務는 없고 文武의 堂上官으로서 任職이 없는 者를 優待하기 為하여 本府: 1官職에 任命한 正一品 衛門이었으며,

③ 兼司僕과 内禁衛는 國王을 世子翊衛司는 世子를 각各 陪從하여 護衛하는 親兵이었으며.

④ 訓練院⁽³³⁾은 兵士의 武才의 試驗 武藝의 練習 兵書의 講習等을 관장하는 軍事教育機關이었다. 이밖에 宮中에 관계되는 武職으로 初期에는 正式官制 밖에 있었던 「宣傳官廳」과 「守門將廳」이 있었다.

⑤ 宣傳官은 本來 高麗 忠烈王代부터의 制度로서 王命 傳達職을 宣傳消息이라고 呼稱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李朝에 들어와서는 宣傳官 八員을 두어 官中內에 輪直케 하더니 後에 宣

(32) 經國大典 前揭書 兵典 pp. 327 ff.

朝鮮史講座 分類史 朝鮮史學會 軍制吏 麻生武龜 pp. 155-160.

(33) 太祖元年에는 文武百官制에 이미 武藝의 訓練 兵書 戰陣의 教習을 分掌한 곳으로 訓練觀이 있었으나 世祖 12年的 官制改革으로 訓練院으로 改稱되었다. 訓練院의 官制에 있는 習讀官(從九)은 三十員으로 祿官(考課에 합격하여 軍遞兒의 祿을 받음) 權知(한 臨時職)와 더부터 兵要 武經 七書 通鑑 將鑑 博議 陣法 兵將說等을 習讀하고 或은 複쓰는 法과 달타는 法도 練習한다. 本院의 堂上官은 兵曹와 都摠府·堂上官 각一員과 함께 每朔으로 이들에게 兵書의 講讀을 考查하여 採點하되 年末에 考查成績을 通算하여 그 優等者(三員以下)를 王에게 上申任命한다. (經國大典 前揭書兵典 pp. 336-337.)

傳官廳을 두고 宣傳官을 七十餘員으로 增員하여 文, 蔭, 武를 通用하고 그 品階도 正三品으로부터 從九品까지 11 수의로 任用하게 하였다. 宣傳官廳의 職制에 關하여 大典會通에 의하면 旗鼓로 士卒의 進退를 號令하고 王의 거동때(出駕時)에 軍樂吹打를 王에게 알리고 侍衛와 傳令 그리고 王命의 標信인 刀符의 出納을 관장한다. 했으며 王 職員數에 對해서도 正任이 二十五員 文臣兼二員 武臣兼五十員이라 하였다⁽³⁴⁾. 宣傳官은 側近에서 重任을 맡아 보기 때문에 地方의 위신이 매우 높아서 본래는 新進 武臣으로 才能과 實力있는 者를 任用하던 것인데 뒤에는 武臣으로서 地閱을 자랑하는 清宦자리가 되었다.

⑥ 守門將은 本⁽³⁵⁾ 西班 四品으로 하여 금 輪番으로 關門을 守備케 한 것인데 뒤에 廳을 두고 從六品 二十三員 從九品二十三員으로 하였으며 그중의 일부는 中·庶로 任用되었다.

⑦ 五衛一衛는 駕衛의 集團을 意味하는 말로서 換言하면 軍管區에 해당하며 五衛의 形成過程을 살펴보면 李朝國初의 兵力은 麗末의 二軍六衛⁽³⁵⁾와 그밖에 警察力인 都府外(義禁府의 前身)와 그리고 親衛部隊를 거의 그대로 담습다가 李朝初에 義興親軍左, 右衛를 新設함으로서 高麗의 八衛는 十衛⁽³⁶⁾로 變한것이며 뒤이어 世宗朝에 五衛의 名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文宗朝에 이르러 兵制의 基本을 五衛에 두었으나 이로서 當時의 軍令機關인 三軍鎮撫所도 文宗元年에 五衛鎮撫所로 또 世祖十二年에는 五衛都摠府로 되면서 이때까지 존속하였던 三軍의 制度가 차취를 감추게 된다. 이 五衛는壬辰倭亂에서 그 無力이 露呈되고 倭亂中부터 이미 각 「軍營」이 設立되기 시작하여 각각 獨立된 軍國을 이루게 됨으로써 中期以後는 五衛의 規模를大幅縮少하여 대체로 宮城守護를 맡게 되어 (衛將의 入直處는 衛將所라 하여 宮中 東西南北의 四所에 分設됨) 全然 別個의 兵制로 들어가지마는 形式上으로는 朝鮮兵制의 基本으로 後期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經國大典에 規定된 五衛의 編成과 그 區屬은 다음과 같다. 京都를 中及 東西南北의 五部로 나누고 域内를 中及 左右前後의 五衛로 나누고 五衛의 内에 또 中及 左右前後의 五部를 나누어 각色의 軍旅가 거기에 配屬되었다.

(I) 義興衛(中衛)一甲士⁽³⁷⁾ 補充隊(無定數)는 이에 屬한다.

中部——京城中部, 開城府, 京畿道의 楊州, 廣州, 水原, 長湍鎮管의 軍士.

(34) 大典會通 朝鮮古書刊行會 大正二年 四(兵典) pp. 184-185.

符信은 王命의 標信인 刀符로서 動兵 關門 入闕 動駕等 여려 경우에 쓰이며 特히 動兵에는 發兵符를 要하며 左符는 宮中에 右符는 監營 兵水營 諸鎮營等에 두었다가 左右符를 合驗한 뒤에 應徵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35) 二軍六衛라 함은 鷹揚軍 龍虎軍, 左右衛 神虎衛 興威衛 金吾衛 千牛衛 監門衛를 말한다. 二軍을 六衛(또는 六營)의 위에 두었으며 이를 八衛라고도 總稱한다.

(36) 十衛란 義興親軍左衛 義興親軍右衛 鷹揚衛 金吾衛 左右衛 神虎衛 興威衛 備巡衛 千牛衛 監門衛等이다. 韓國史 pp. 216ff. 近世前期篇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37) 甲士는 兩班 子弟로서 武藝에 出衆한 者를 取才로서 選拔한 것이니 主로 京城宿衛(京甲士)의 任務를 맡으며 例外에 兩界赴防(平安道 咸鏡道의 兩界甲士)等의 中心이 된다. 甲士는 總數 14800員으로 그중의 龍虎甲士 440. 兩界甲士 각 3400을 除하면 中央의 五衛에 直屬되는 것은 7560員이다.

左部——江原道의 江陵, 原州, 淮陽鎮管의 軍士.

右部——忠清道의 公州 洪州鎮管의 軍士.

前部——忠清道의 忠州 清州鎮管의 軍士.

後部——黃海道의 黃州 海州鎮管의 軍士.

(Ⅱ) 龍驤衛(左衛)——別侍衛(1500員을 定員으로 하고 五番으로 나누어 每六年에 交代한다. 隊率(賤人出身으로서 3000員을 定員으로 함)은 이에 屬한다.

中部——京城의 東部, 慶尚道의 大丘鎮管軍士.

左部——慶尚道의 慶州鎮管軍士.

右部——慶尚道의 晉州鎮管軍士.

前部——慶尚道의 金海鎮管軍士.

後部——慶尚道의 尙州, 安東鎮管軍士.

(Ⅲ) 虎賛衛(右衛) 一族親衛(王의 親族으로 編成된) 親軍衛(咸鏡南北道에서 各二十人씩 選拔한 四十人으로 編成된) 彭排(賤人出身으로 充員하여 定員은 5000員)는 이에 屬한다.

中部——京城의 西部, 平安道의 安州鎮管軍士.

左部——平安道의 義州 龜城, 朔州鎮管 및 昌城, 昌州, 方山, 麟山鎮의 軍士.

右部——平安道의 成川鎮管軍士.

前部——平安道의 寧邊, 江界, 碧潼鎮官, 碧團, 滿浦, 高山里, 渭原, 理山, 寧遠鎮管軍士.

後部——平安道의 平壤鎮管軍士.

(Ⅳ) 忠佐衛(前衛)——忠義衛(功臣子孫으로 編成) 忠贊衛(原從功臣 및 그 子孫으로 編成) 破敵衛(2500員)는 이에 屬함.

中部——京城의 南部, 全羅道의 全州鎮管軍士.

左部——全羅道의 順天鎮管軍士.

右部——全羅道의 羅州鎮管軍士.

前部——全羅道의 長興, 清州鎮管軍士.

後部——全羅道의 南原鎮管軍士.

(Ⅴ) 忠武衛(後衛)——忠順衛⁽³⁸⁾ 正兵, (良人出身의 正規軍隊인 番上兵으로서 無定數)壯勇衛⁽³⁹⁾는 이에 屬한다.

(38) 忠順衛 異姓總麻 外六村以上親 王妃總麻 外 五寸以上親(先王 先後 親同) 東班六品以上 西班四品以上 曾經實職顯官 文武科出身 生員 進士 有蔭子孫增弟姪屬焉(經國大典 兵典 番次都目 前揭書 pp. 38-39).

(39) 賤人出身을 基幹으로 良人도 허가하여 體力과 武藝있는 者를 모은 部隊이다. (定員은 600 이다.)

中部——京城의 北部 永安道의 北青鎮管軍士.

左部——永安道의 甲山鎮管, 三水, 惠山鎮軍士.

右部——永安道의 穩城, 慶源, 慶興鎮管, 柔遠, 美錢, 訓戎鎮軍士.

後部——永安道의 永興, 安邊鎮管軍士⁽⁴⁰⁾.

以上에서 보다시피 五衛의 編成은 兵種別과 地方別의 二重으로 되어 있으며 兵種別을 본다면 身分에 따라 兵種을 달리하여 勞役과 處遇에 差等을 마련하고 있으며 大體로 五衛의 各兵種은 有蔭子弟等 特權層과 職業軍人으로 充當되어 있었다고 볼수있고 한편 地分別로 編成된 各軍파의 軍令傳達을 為하여 各道에서 軍官一員이 中央에 派遣되어 每日 軍令의 指示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每衛에 五部가 있어 合하여 二十五部가 되고 每部에 四統이 있어 合하여 一百統이 되니 統의 밑에 旅, 隊, 伍, 率等이 있어 即 衛(衛將=從二)一部(部將=從六)一統(統將)-旅(旅帥)一隊(隊正)一伍(伍長)一率의 上下 階層組織으로 되어 있어 五人을 伍라 하고 三伍를 隊라하고 五隊를 旅라하고 旅若干이 모여 統이 되었다. 兵種은 步騎의 둘로 나누어 部에 步騎各二統씩이 隸屬하여 一統이 出戰하고 一統이 留駐하였다. 各衛의 兵數乃至 步騎의 比例는 수사로 加減이 었다. 가령 騎兵이 많으면 騎統의 員數를 많이하고 步兵이 많으면 步統의 員數를 많이 하였으며 반드시 兵數가 一定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每衛에는 各遊軍五領이 있어 遊軍은 巡軍이라고 稱하였으며 大概 正軍七에 對하여 三의 比率이었다. 따라서 正軍七千名이면 遊軍3千名이었다. 經國大典에 依하면 五衛의 職員은 將十二員(從二他官으로 兼任) 上護軍九員(正三) 大護軍十四員(從三) 護軍十二員(正四) 副護軍五十員(從四) 以下 司直, 司果, 部將, 司正, 司猛, 司勇等 合計 三千二百餘의 崔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中央에서는 內禁衛등 親兵을 合하여도 實際 戰鬪兵力은 約2萬으로 推測되며 그것도 分番入直을 하는 까닭에 平時의 諸衛兵力은 2千乃至 3千에 불과하였던 것이다⁽⁴¹⁾.

⑧ 番上과 紿保——五衛의 各兵種은 대개가 外方의 農村을 그 人的資源의 供給源으로 하는 것으로 그 中에는 兩班에서 賤人에 이르기까지 外方人으로서 人材 選拔의 試驗인 所謂 試取에 應하여 그 兵種과 그 身分이 固定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正兵이나 水軍과 같이 義務兵種으로 服務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가운데서 長番이라하여 職業으로서 交代없는 勤務도 있으나 (例컨데 旣傳官, 內禁衛, 兼司僕, 族親衛, 忠義衛等) 그외에는 모두 番次都目的⁽⁴²⁾

(40) 經國大典 兵典前揭書 pp. 331-335.

(41) 韓國史 近世初期篇 前揭書 p. 228.

(42) 番次는 當番 即 入番의 順序를 말하며 都目은 每年 六月, 十二月 即 六 曜兩次에 官員의 成績을 考查하여 昇降 및 黜陟의 移動을 行하되 定期 移動을 都目 또는 都目政事라 한다. 이 制度는 高麗制를 承襲한 것으로 官員一年間의 成績 考查인 「都歷狀」에 依하여 任用을 한것이다. 官職에 따라 者目的 回數와 時期가 다른 경우도 있다. 經國大典 兵典 番次都目 前揭書 pp. 394ff.

制度에 依하여 交代되었고 所定 期間의 番上 이외에는 故鄉에 歸農하여 月一次의 習陣을 받는 ことが 原則이었다. 科田이나 軍田을 分給받는 職業軍人이나 閑良같은 地方의 有力者層 밑에는 兵役을 擔當하는 平民들이 있었으니 그 主要한 것이 侍衛軍과 騎船軍으로서 이들은 科田 또는 軍田分給의 對象이 되지 못하는 義務服役該當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침 閑民들이 - 定期間의 赴京宿衛의 兵役義務를 規定되도록 施行하지 못하여 그들중 志願者들만이 甲士 등으로 選拔吸收됨에 따라 甲士 및 別侍衛등 精兵이라 할 兵種이 생기기始作였던 것이며 한편 地方의 壯丁은 中央에 番上하는 侍衛軍(또는 侍衛牌) 및 水軍 各營, 鎮에 立番하는 騎船軍 등 각각 鄉土의 各營, 鎮에 主番하는 营鎮軍 및 守城軍等이 있어 모두 良人出身으로써 이들은 交代로 當番하여 軍士가 되고 當番이 아닌 때는 農民으로서 各各 鄉土의 各鎮에서 月一次의 習陣을 하는 것이 原則이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 番上의 費用을 負擔케 하기 爲한 例(奉足)가 붙어 있으나 이 保도 一種의 兵力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戰後에는 勿論 徵發의 對象이 되는 것이며 또 이들 諸色軍士와 그 保이외에 品官, 生員進士 校生등 地方의 有力者와 鄉吏 公私賤등 職役을 가진 者들은 平時에는 兵役의 義務가 없고 다만 有事時에 對備 하여 雜色軍이라는 編制속에 들어가 習陣에도 關與하지 않았다. 地方의 16歲以上 60歲以下의 男丁은 이리하여 武科 혹은 試取로써 職業의인 武人이 되는 者와 侍衛軍, 騎船軍, 营鎮軍, 守城軍等의 正軍과 保 그리고 雜色軍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⁴³⁾. 그리고 王朝初期의 兵制에서 가장一般的인 性質을 띠고 또 數的으로도 많은 것은 中央의 職業軍人인 府兵中에서는 甲士이고 地方 州, 郡의 番上兵中에서는 侍衛軍의 後身인 正兵이였다고 본다⁽⁴⁴⁾. 다만 侍衛軍은 農民이 大部分으로서 番上이失農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交通不便한當時의 事情으로는 그 維持가 困難했기 때문에 그 뒤의 五衛編制에서는 除外되었던 것이며 또 正兵의 番上制도 運用上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추측되나 大體로 雜軍을 除外한 正軍의 總數는 二十萬 그리고 奉足이四十萬 程度였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王 世 給保의 制度는 太宗四年(1404)에 再整備되어 土地所有의 多寡에 따라 甲士, 侍衛軍

(43) 韓國史 近世前期篇 前揭書 p. 228-232. 千寬宇「五衛」와 朝鮮初期의 國防體制 李相佑博士 回甲記念論集 pp. 559-607.

(44) 本來 府兵制度는 唐에서 源源한 것으로서 高麗, 李朝에 걸치는 衛의 制의 基礎가 된 것이다. 그 것은 要건에 兵農一致에 依한 徵兵制度이었다. 即 國內各地에 兵事를 處理하는 折衝府를 두고 管내의 丁男을 徵發하여 府兵에 막고 三時耕種, 一時講 武의 原則으로 訓練하며 이것으로서 宮闕守衛 京師 警備 國境防護 乃至 有事時의 征戰에 當케 하되 모든 編成人事制令을 中央集權의 運用下에 두어 地方政權과의 結合을 避け 한 것이다. 그러나 「府兵」은 때로는 隊長隊副以上の 職業軍人으로서 在京侍衛하는 者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령 三峯集 朝鮮經國典政典軍制에는 「國家 内則有府兵, 有州郡番上之兵, 外則有陸守之兵, 有騎船之兵」이라 하였는바 여기서 「府兵」이란 武科 또는 試取로 選拔되는 職業軍人을 意味하여 아울러 州郡番上之兵은 侍衛軍을 陸守之兵은 营鎮軍과 守城軍(範圍을 넓히면 雜色軍도 包含) 騎船之兵은 騎船軍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李朝初의 軍士의 主要·種別을 이루는 것이었다. (千寬宇 前揭書 p. 570 參考).

및 騎船軍等에게 각각 最高二戶를 奉足으로 주고 土地가 많은 者에게는 不給하였으며 軍士만이 아니라 鄉吏 기타 有役者에게도 奉足을 준것이다. 여기서 「戶」란 富戶의 경우는 一丁이⁴⁵⁾單獨으로도 戶를 構成하고 貧戶의 경우는 五丁을 一戶로 삼기도 하였으니 三丁을 一戶로 하는 것이 通例⁴⁶⁾다. 世祖十年에는 이것을 또다시 改編하여 戶 代身에 保를 單位로 삼았던 것이며 保人이 立番者를 爲하여 供出하는 것은 一人이 每月 縰布 一匹을 超過할 수 없다는 것이 原則이었으며 이 保布는 立番하는 軍士가 純洁 保人에게 徵收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番上 里 紿保의 制度도 그후에 점차 희미해지고 中宗代 前後 부터는 軍役의 義務가 있는 良人, 壯丁에게서 「價布」를 徵收하여 財政에 充當하는 所謂 放軍收布의 變則이 行하여 집으로서 經國大典의 規定은 空文化 했을뿐더러 그 徵收의 方法도 苛酷하여 良人이 그에 못견디어이 負魯의 義務가 없는 賤人으로 自進 轉落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며 이것이 이미 壬辰倭亂前의 實情이었던 것이다⁴⁷⁾.

(11) 權設職

經國大典에 規定된 恒久的 官制가 아닌 것으로 臨時的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종종 權設職을 두었다. 權設職에 該當한 官職으로서는 「都監」⁽⁴⁶⁾ 「巡察使」 「御史」 敬差官, 差使員等 그 種類가 많았다. 그中 「巡察使」制에 關해서는 다음과 같은 由來가 있는 것이었다. 李朝時代에 外寇, 内亂⁴⁸⁾는 武官의 總指揮官도 있지마는 대개는 武官의 上位에 文官의 總指揮官을 두었으며 이를 護攻이 臨時 兼職하면 「都體察使」一品, 正二品이 兼職하면 「都巡察使」從二品이 兼職하면 「巡察使」三品이면 「察理使」等으로 불었다. 巡察使는 대개 觀察使「從二」의 한兼職으로서 때로는 軍事觀察을 爲하여 臨時로 派遣되는 特使를 巡察使와 함으로써 觀察使의 兼職인 巡察使도 또한 軍職으로 생각하는 傾向도 있었지만 本來 唐官制에서는 民情 巡察의 意味에서 사용된 것이고 또 李朝의 巡察使도 後者の 意味로 사용된 것이明白하다. 如何間에 監司의 職을 觀察使 兼 巡察使라고도 한다. 그러나 經國大典以下 官制上에는 巡察使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또 官數(任命辭令狀)에도 이것을 記入하지 않은 채로 實際의 職務에만 … 兼 巡察使라고 일러 내려온 것이다⁽⁴⁷⁾. 그리고 國內各 地方에 特殊한 目的으로 派遣되는 御史(堂上侍從官을 特命으로 보내는 것)나 御使(堂下官)가 있었다. 李

(45) 經國大典 兵兵 紿保 前揭書 pp. 453-454. 韓國史 前揭書 pp. 232-234. 當時 軍役이 가장 큰 民患이 있음을 여러 文獻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6) 文獻備考 職官考十四 pp. 649-650. 東國文化社 1964.
「本朝有事則設都監有都提調 提調 都廳 郎廳 監造官隨事增減其規不一」

(47) 英祖 40 年 (764)에 領義政 洪鳳漢이 御前奏聞하기를 各道伯의 重함은 그가 巡察使를 兼한 까닭이온데 이론↑ 巡察使라는 職銜은 吏曹 兵曹 두군에서 주는 官敎이다. 書入하지 아니하오니 未安치 않습니↑ 하야 上에서도 그럴수가 있느냐 하시고 그때부터 官敎에 書入케 하였다 하며 또 그것을 吏曹 官敎에 넣게 된것은 또한 民政院으로 본 까닭이라고 본다. (崔南善著, 朝鮮常識 制度篇 p. 48)

朝初⁽⁴⁸⁾는 行臺(地方에 出駐한 御史臺) 監察(御史) 또는 分臺(御史)라 하는 것을 各道에 分遣하⁽⁴⁸⁾民 生의 疾苦利害와 監司及 守令의 得失과 뜻 土豪의 不法行勢를 正直하게 秘密偵察 케 하는일이 盛行한 同時에 所謂「潛行體察」의 形式을 取하는 일이 가끔 있었으며 이것이 後期⁽⁴⁸⁾ 「暗行御史(御史 또는 繡衣)」로서 制度化된 것이었다. 이밖에도 敬差官은 田政을 그리고 差使員은 牧場을 各邑 點檢하기 為하여 地方에 派送된 것이었다⁽⁴⁸⁾.

(48) 大獻備考 職官考 14. 前揭書 p. 649.